

派生金融商品の 會計處理 및 課稅方向

序 言

국내 금융시장은 대변혁기에 처해 있다. 과거 實物部門의 발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국내 금융은 이제 自生力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金融產業에 대하여 대폭적인 自律化가 진전되고 있고, 國際市場에서 올바른 역할을 자임하고자 OECD의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金融市場의 全面開放이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추진되는 이유는 국내 금융부문이 이제 폐쇄와 규제에서 벗어나 開放과 自律을 바탕으로 하여 市場規律에 의해 운영될 때 비로소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融市場의 效率과 競爭力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自律化와 開放化의 裏面에는 市場 統制力의 弱화, 市場 變動性의 增大 등 기대하지 않던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市場 參與者들이 自律化에 걸맞는 責任을 수임하고자 하는 자세의 확립과 함께 변화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市場構造의 構築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金融市場 參與者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危險(risk)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들은 이러한 수단으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을 통하여 金融危險들을 細分化하고 이렇게 세분화된 위험을 다시 새롭게 다른 형태로 結合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에는 가능하지 못하였던 危險管理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危險管理 등의 목적으로 출현한 派生金融商品들은 적은 資金과 저렴한 去來費用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 새로운 危險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기관들이 大規模 損失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들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派生金融商品市場은 金融市場의 危險과 情報配分 效率性을 제고하고자 출현한 시장으로서 基礎市場의 資源調達과 配分 機能을 보조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派生金融市場의 機能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된다.

선진 각국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연유하여 발생하는 大規模 損失事件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의 강구에 상당한 연구와 조사가 진전되고 있다. 최근까지 진전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본연의 긍정적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派生金融市場의 下部構造를 건실하게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市場 參與者들의 危險管理 內部統制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去來情報가 公示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적합한 會計·公示制度의 구축과 함께 관련 과세제도의 정비가 긴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派生金融商品의 出現要因의 하나가 현행 課稅制度를 벗어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課稅制度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경우 租稅 差益去來의 機會가 증대되고 기존 租稅制度뿐 아니라 金融體制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本 報告書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개설, 선물거래법의 제정 등으로 국내에도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下部構造의 整備次元에서 관련 會計·公示制度 및 課稅制度의 整備方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정책당국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派生金融商品市場의 下部構造를 구축하는 데 본 보고서가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本 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崔興植 先任研究委員과 金成龍 研究員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연구진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하여 주신 審査者들에게 감사드리고, 원고 정리를 하여준 廉世羅 研究助員에게 고마움의 뜻을 보내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執筆 筆者 自身들의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8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I. 序 論	9
II. 派生金融商品의 概要	13
1. 派生金融商品의 意義	13
2. 派生金融商品의 發達 背景 및 過程	14
3. 派生金融商品의 經濟的 役割	18
4.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르는 危險	20
5. 派生金融商品의 類型	23
가. 市場의 形態에 따른 區分	23
나. 基礎商品의 種類에 따른 區分	25
다. 去來 目的에 따른 區分	26
라. 契約의 形態에 따른 區分	27
III. 派生金融商品 會計 및 課稅制度 整備時 主要 考慮事項 ...	39
1. 派生金融商品 會計 및 課稅制度의 整備 必要性	39
2. 派生金融商品 會計制度 整備時 主要 考慮事項	46
가. 派生金融商品의 會計認識 與否	49
나. 派生金融商品의 價値評價 基準	51
다. 派生金融商品의 價値變化에 따른 損益의 認識方法	54
라. 헤지會計 處理方法	55
3.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의 整備時 主要 考慮事項	60
가. 損益의 認識時期	63
나. 損益의 性格	67

다. 損益의 源泉	68
IV. 主要國의 派生金融商品 會計·公示制度	70
1. 派生金融商品의 會計·公示에 대한 主要國의 對應	70
2. 美國의 會計·公示制度	75
가. 金融先物去來의 會計處理	76
나. 先物換去來의 會計處理問題	79
다. 옵션去來의 會計處理	82
라.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	84
3. 最近 美國의 派生金融商品 會計制度 改善方案	86
가. 適用對象 派生金融商品의 範圍	86
나. 派生金融商品의 認識과 評價	88
다. 保有資産, 負債 및 確定契約에 대한 헤지	88
라. 豫想去來에 대한 헤지	90
마. 其他 派生商品	92
바. 헤지와 연관된 外貨問題	92
사. 其他 決定事項	93
아. 提案된 會計基準案의 主要 特徵	94
V. 主要國의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	96
1.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各國의 課稅制度	97
가. 利子率 스왑	97
나. 金融先物	100
다. 株式옵션	102
2. 美國의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	107
가. 課稅制度의 變遷	107
나. 商品別 課稅制度	111

3. 英國의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	116
가. 一般租稅原則	117
나. 租稅規程의 發展	118
다. 課稅原則	119
4. 日本의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	121
가. 先物去來	121
나. 옵션去來	121
VI. 派生金融商品 關聯 國內 會計 · 公示 및 課稅 制度의 改善方向	123
1. 會計制度의 改善方向	123
가. 派生金融商品 관련 現行 國內 會計制度	123
나. 改善方向	126
2. 公示制度의 整備方向	130
가. 派生金融商品의 數量 情報의 公示	134
나.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른 企業의 危險 露出度 公示	135
다. 派生金融商品 會計 · 公示에 사용된 會計方法의 公示	136
3. 課稅制度의 改善方向	137
VII. 結 論	144
參考文獻	150
附錄 I : 金融機關 派生金融商品去來 會計處理基準	155
附錄 II : 派生金融商品의 會計處理 例示	166
附錄 III : 證券會社 會計處理 規程	201

表 目 次

〈表 II-1〉 主要 場内外 派生金融商品 契約殘額(額面價·年末基準)···	16
〈表 II-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 去來 現況	17
〈表 II-3〉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派生金融商品 分類	26
〈表 II-4〉 主要 派生金融商品	28
〈表 III-1〉 規制回避型 옵션去來 事例	45

圖 目 次

[圖 II-1] 先渡契約의 價値 變化	29
[圖 II-2] 先物契約의 價値 變化에 따른 證據金의 變化	31
[圖 II-3] 옵션契約의 價値 變化	36

I. 序 論

派生金融商品은 個別 市場參加者에게 危險의 回避, 새로운 信用의 創出 및 거래 비용의 절감 등의 手段을 제공하지만, 이들 거래는 簿外去來이며 그 자체에 危險¹⁾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는 機關이 있을 경우²⁾ 그 波及效果가 대단히 커서 金融秩序의 崩壞事態까지 우려될 수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에서 나타날 수 있는 副作用을 最小化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IOSCO(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등 國際機關에서도 이들에 대한 국제적 관리·감독의 협조를 위하여 國際的 管理監督規範의 設定作業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각국의 公的機關³⁾ 및 民間機關⁴⁾이 마련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去來에 대한 管理監督方案들을 검토하여 보면 規制監督機關의 役割도

- 1)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內在的 危險으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信用 리스크, 대상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市場 리스크,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 지연에서 오는 流動性 리스크 등이 혼재하여 있다.
- 2) 1993년 이후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대규모 손실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原油 關聯 先物去來에서 13억US\$의 손실을 본 독일의 Metallgesellschaft社, 金利率스왑去來에서 17억US\$의 손실로 파산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Orange County, 債券先物去來에서 2억 1천만US\$의 손실로 다른 증권회사에 흡수된 Kidder Peabody社, 株價指數先物去來에서 10억US\$의 손실로 파산하여 네덜란드 ING은행에 인수된 Barings社 등이 대표적으로 派生商品 去來에서 대규모 損失을 본 對象들이다. Figlewski(1994)와 박원일·정순섭(1995) 참조.
- 3) 미국의 General Accounting Office(1994), 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1994),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1993), 영국의 Bank of England(1995) 등 참조.
- 4) Group of Thirty(1993), Derivatives Policy Group(1995) 등 참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派生金融商品 去來 參與者들의 효율적인 內部統制體系의 構築과 명확한 會計·公示制度의 確立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의 경제적 의미와 현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去來 內譯을 財務諸表에 기술하고 공시하여야 市場參加者들이 올바른 판단하에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내재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국내에도 1995년 12월에 선물거래법이 제정되었고, 1996년 5월 3일부터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향후 국내에도 다양한 장내 또는 장외 파생금융상품들이 도입되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賣買·去來制度, 決濟制度, 監督制度 등 派生金融商品市場의 下部構造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會計·公示 및 課稅制度의 整備는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된다.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會計處理에서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派生金融商品의 去來內譯을 財務諸表에 認識⁵⁾할 것인가의 문제와 派生金融商品의 損益을 어떻게 認識하고 報告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後者의 문제는 다시 파생금융상품을 시가기준, 발생기준, 결제기준 등 여러 기준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去來損益을 순수매매거래, 헤지거래 등의 去來目的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去來目的에 따라 구분한다면 각각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로 세분된다.

派生金融商品의 會計處理와 관련하여 어떠한 基準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선진국들은 自國의 一般會計處理 基準에 준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회계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

5) 여기서 認識(recognition)이란 회계상의 거래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財務諸表 項目으로 공식적으로 記錄하거나 포함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어 先物損益을 美國에서는 時價基準으로, 日本에서는 決濟基準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獨逸에서는 보수적으로 先物去來損은 決濟基準으로, 그리고 先物去來益은 時價基準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課稅에 있어서도 상당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는 달리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去來時點과 損益實現時點이 달라 기존의 租稅制度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租稅移延, 租稅回避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이 출현한 동인 중의 하나가 세금 회피에 있으며, 派生金融商品 去來技法이 발달함에 따라 既存 租稅制度의 問題點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이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복잡한 과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과세에 대한 논의는 去來 損益의 인식 시기, 損益의 性格 및 損益의 源泉 등을 초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派生金融商品 損益을 課稅함에 있어서 손익인식시기를 결제 기준, 발생 기준 또는 시가 기준 중 어느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할 것인가, 去來損益을 자본 손익 또는 경상 손익 중 어느 성격의 손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損益의 源泉에 따라 課稅를 差別化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株價指數先物市場이 개설됨에 따라 선물거래를 비롯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會計制度가 일부 정비되고 있다. 企業會計基準을 개정하여 時價基準으로 선물거래의 손익을 인식하고, 위험회피 목적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先物損益을 現物損益과 기간 대응하는 헤지회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명료하지 않고, 옵션 등 기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派生金融商品의 課稅制度에 있어서 損益認識 時點을 決濟基準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괴리가 있다.

本 報告書에서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國內 會計·公示 및 課稅制度의 定立方向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제Ⅱ장

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의의, 종류, 경제적 역할 및 거래 위험 등 派生金融商品의 特性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會計·公示 및 課稅制度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기본 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主要國의 派生金融商品의 會計·公示 制度를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主要國의 派生金融商品의 課稅制度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Ⅵ장에서 우리나라 派生金融商品 會計·公示 및 課稅制度의 改善方向을 제시한다. 제Ⅶ장은 本 研究의 結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派生金融商品の概要

派生金融商品 去來는 일반적으로 價格・金利 變動 리스크의 回避 및 轉嫁와 관련되어 貸借對照表上의 資産이나 負債의 保有 또는 讓渡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래이다. 본장에서는 1970년대 이후 출현한 新金融商品, 특히 派生金融商品の 意義, 發達 背景, 經濟的 役割, 내재된 리스크 및 去來類型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派生金融商品の意義

派生金融商品(financial derivatives)은 다른 基礎 金融商品の 가치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본질적으로는 기초 금융상품이 지니는 內在的 危險에 대한 거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派生金融商品이란 그 價値가 통화, 채권, 주식, 일반 상품 등 基礎資産(underlying assets)의 가격이나 자산 가치 지수(index of asset values)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金融契約으로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물, 옵션 및 스왑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派生金融商品の 일종인 유럽형 주식 풋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만기일에 계약에 명시된 일정한 株式을 계약에서 정한 價格으로 팔 수 있는 權利를 갖게 된다. 옵션 매입자가 株式의 賣買를 요구할 경우 옵션을 賣渡한 사람은 계약에서 정한 가격으로 株式을 살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 株式을 사고 파는 權利와 義務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株式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株式옵션은 株式을 基礎金融商品으로 하여 이에 賣買의 권리를 부과한 派生金融商品이다.

이 옵션의 價値는 기초금융상품인 株式의 價格에 의해 결정된다. 예

를 들어 옵션의 만기일에 株式의 市場價格이 계약에서 정한 價格¹⁾보다 낮을 경우 옵션의 買入者는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行使價格과 株式價格의 차이만큼 利益을 얻게 된다. 반면 만기일에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다면 옵션의 買入者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損失을 입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株式의 所有者는 적절한 주식 풋옵션을 구입하여 株式의 價格이 하락하여 損失이 발생할 수 있는 危險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주식 풋옵션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대한 거래이다. 주식 풋옵션의 매입자는 株式價格의 變動 危險을 옵션의 매입자에게 전가하여 價格變動의 危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주식옵션의 매도자는 危險을 인수하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

2. 派生金融商品의 發達 背景 및 過程

派生金融商品은 金融變數의 價格變動危險을 管理하기 위해 개발되어, 1980년대 이후 去來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급변하는 金融環境下에서 i) 規制回避의 手段으로, ii) 規制緩和를 계기로 삼아 金融去來에 따르는 危險을 轉嫁하거나, 流動性を 增加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iii) 종래에 이용되지 않던 새로운 信用供給源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많은 新金融商品이 등장하였다. 派生金融商品의 發達背景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利·換率·株式 商品 등의 價格 變動性 增大이다. 1970년대 이후 국제 금융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각종 金融變數의 價格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71년에 미국의 달러 태환중지와 평가절하조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換率의 安定裝置 役割을 하여 왔던 「브레튼우즈」

1) 이를 行使價格이라 한다.

(Bretton Woods) 체제가 붕괴되고, 각국이 變動換率體制로 전환함에 따라 換率變動危險이 높아졌다. 또한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油價波動으로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가 高金利政策으로 선회함에 따라 利子率의 變動危險이 크게 增大되었다. 이에 따라 換率과 利子率의 變動危險을 회피·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派生金融商品들이 出現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도 멕시코 페소貨의 평가절하 사태, 엔貨의 급격한 평가 절상 및 하락, 달러 LIBOR²⁾의 급격한 등락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利子率·換率·株式·商品 價格의 큰 變動性은 金融 需要者들로 하여금 이러한 危險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하였고, 이는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需要 急增으로 이어졌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은 金融規制를 회피하거나 金融自律化에 따른 金融變數의 變動 危險을 管理하기 위하여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폭적인 金融自律化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金融價格變數의 變動危險이 더욱 커지자 이를 헤지하기 위한 派生金融商品의 去來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수수료 및 거래세의 절감, 개별 신상품의 도입 허용 등과 같은 新商品 使用에 관한 規制緩和과 범세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장부거래에 비해 規制·監督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簿外去來, 특히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電算·情報·通信 技術의 發達이다. 원격 통신 기술의 발달은 去來費用의 節減뿐만 아니라 各國 金融市場間의 統合을 가속화하여 범세계적으로 24시간 파생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電算情報技術의 發達は 고도의 계산과 정보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구조의 派生商品의 商品化를 촉진시켰다.

2) 1993년 말 3.375%에서 1994년 말 6.5%로 급상승하였다가 최근 5.1%로 다시 하락하였다.

넷째, 金融機關間의 深化된 競爭이다.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통상적인 금융 업무에 대한 收益率이 急減하게 되었고 金融機關들은 附加價値가 높은 派生金融商品 業務의 比重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개발자로서 얻을 수 있는 독점적 이윤의 획득과 고객 확보를 위한 新派生金融商品 開發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출현·발달된 派生金融商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去來規模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表 II-1> 참조). 세계적으로 파생

<表 II-1> 主要 場内外 派生金融商品 契約殘額(額面價·年末 基準)

(單位: 10億US달러)

	1986 (A)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B)	B/A
장내상품	681.3	729.9	1,304.8	1,766.6	2,290.2	3,518.8	4,632.5	7,760.8	8,837.8	14.3
금리선물	370.0	487.7	895.4	1,200.8	1,454.5	2,516.7	2,913.0	4,942.6	5,757.4	15.6
금리옵션 ¹⁾	146.5	122.6	279.2	387.9	599.5	1,072.6	1,385.4	2,362.4	2,622.8	17.9
통화선물	10.2	14.6	12.1	15.9	16.9	17.9	24.9	32.2	33.0	3.2
통화옵션 ¹⁾	39.2	59.5	48.0	50.2	56.5	62.8	70.9	75.4	54.5	1.4
주가지수 선 물	14.5	17.8	27.1	41.3	69.1	76.0	79.7	109.9	127.7	8.8
주가지수 옵션 ¹⁾	37.8	27.7	42.9	70.6	93.7	132.8	158.6	283.3	242.4	6.4 ⁶⁾
장외상품 ²⁾	500.0 ⁵⁾	865.7	1,329.8	1,951.7	3,450.3	4,449.4	5,345.7	8,484.6	-	16.9 ⁶⁾
금리스왑	400.0 ⁵⁾	682.9	1,010.2	1,502.6	2,311.5	3,065.1	3,850.8	6,177.3	-	15.4 ⁶⁾
통화스왑 ³⁾	100.0 ⁵⁾	182.8	319.6	449.1	577.5	807.2	860.4	899.6	-	9.0 ⁶⁾
기타스왑 관련상품 ⁴⁾	-	-	-	-	561.3	577.2	634.5	1,397.6	-	-

註: 1) calls+puts.

2) ISDA(International Swap Dealers Association)가 집계한 자료임. ISDA 회원 양자간의 거래는 일방의 거래만 포함함. 계약원금(nominal principal)에 근거한 수치임.

3) 교차 통화·금리스왑을 포함한 것으로 兩通貨의 보고에 의해 조정된 것임.

4) caps, collars, floors, swaptions 등 포함.

5) 추정치.

6) 1993년 잔액/1986년 잔액.

資料: BIS, Annual Report, 각 연도.

금융상품 거래는 1994년 말 현재 1986년 대비 약 15배로 증가하였다. 金利關聯 派生金融商品の 去來比重이 全體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비중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향후 상당한 종류의 場外 派生金融商品들이 去來所市場에 上場될 것으로 예상되나 投資技法의 發達, 情報通信技術의 發展, 市場의 統合化 進展 등으로 새로운 派生金融商品들이 끊임없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場外 派生金融商品 去來 比重은 場內 商品 去來 比重을 계속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金融自由化 및 國際化, 規制緩和 등이 추진됨에 따라 국제간 競爭이 激化되고 각종 金融商品の 價格變動이 더욱 深化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認識 및 이의 活用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 去來市場 規模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들어 去來規模의 增加速度가 빨라지고 있다(〈表 II-2〉 참조). 특히 1996년 5월에 株價指數先物市場이 國內

〈表 II-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 去來 現況

(單位: 억US달러,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장내 파생금융상품	82.0	96.7	100.5	122.3	402	301(9%)
· 금리선물	72.8	86.5	96.8	117.9	386	269
· 통화선물	1.5	3.4	3.4	0.1	1	6
· 주가지수선물	-	-	-	1.0	7	7
· 금리선물옵션	7.4	6.4	6.4	3.3	8	17
· 통화선물옵션	0.3	0.4	0.4	-	-	2
장외 파생금융상품	1,602.5	1,403.9	1,706.9	2,827.4	4,068	2,876(91%)
· 선물환	1,507.5	1,282.9	1,648.6	2,787.6	3,931	2,694
· 선도금리	10.3	8.1	3.2	2.5	46	25
· 통화옵션	6.7	0.5	0.4	1.1	11	65
· 금리옵션	-	0.1	2.3	1.4	2	1
· 통화스왑	62.5	54.2	22.2	15.4	41	44
· 금리스왑	13.9	58.1	30.2	19.4	37	47
합 계	1,684.9	1,500.6	1,807.4	2,948.7	4,470	3,177(100%)

註: ()안은 구성비임.

資料: 한국은행, 『파생외환상품 거래동향』, 각호.

에 開設되어 리스크 관리에 대한 認識提高와 함께 새로운 投資手段으로서 전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급속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株價指數先物을 필두로 하여 株價指數 옵션, 주식옵션, 금리선물, 통화선물 등 현재 外國의 先物去來所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선물 및 옵션 상품이 금세기 안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특유의 一般商品을 대상으로 하는 商品先物도 도입될 것이다.

또한 場外 派生金融商品市場의 役割이 증대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國內 市場參與者들의 危險回避뿐 아니라 危險管理에 대한 요구 증대로 기존의 保險商品에서 취급하던 리스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품들은 시장에서 檢證을 거치는 과정에서 一部 商品들은 도퇴되고 일부 상품은 活性化될 것이다.

3. 派生金融商品의 經濟的 役割

派生金融商品은 기본 구조와 개념이 단순하면서 매우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資產運用과 金融市場의 革新을 주도하고 있는 金融手段이다. 이들 금융상품은 價格變動 리스크의 管理, 去來費用의 節減, 流動性的의 擴大, 市場의 效率性 提高 그리고 資金調達 및 運用의 多樣化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金融市場의 構造變化를 촉진하고 있다.

첫째, 危險管理의 效率性을 提高시킨다. 파생금융상품은 헤지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금리·환율·주식 상품의 價格變動에 의하여 야기되는 危險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危險管理의 效率性을 제고시켜 준다. 價格變動危險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은 派生金融商品 去來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危險을 다른 사람에게 轉嫁시킬 수 있으며, 危險을 選好하여 이러한 위험을 인수한 사람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각자의 危險 選好도에 따라 收益과 危險 配分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危險 轉嫁는 비록 시장 전체의 위험을

축소시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지도 않으며, 단지 危險所有를 再配分할 따름이다.

둘째, 投資의 效率性を 增大시킨다. 파생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投資의 伸縮性を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파생상품을 통하여 기존의 투자 대상 금융상품의 危險/收益 配列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危險/收益 配列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선호에 적합한 투자 대안을 제공하여 준다. 이 외에도 파생금융상품은 실물 자산의 매수·매도가 불필요한 투자를 가능케 하여 投資 效率性を 提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派生金融商品 去來는 실물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각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危險을 소유할 수 있게 함에 따라 投資의 有用性を 증진시켜 준다. 결국 派生金融商品市場은 危險이 競爭的으로 거래되는 시장이라 볼 수 있으며 과거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금융시장에 참여하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危險을 管理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즉 측면에서 派生金融商品 市場의 출현은 市場의 完成性(completeness)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셋째, 資金調達의 伸縮性を 增大시킨다. 新派生金融商品은 기존에는 접근이 불가능하였던 시장에서의 資金 調達을 가능하게 하고 만기, 조달 통화, 이자지급방식 및 원금상환방식 등을 多樣化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및 상품시장간의 연계성을 제고시켜 資金의 可用性을 높이고 限界資本費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派生金融商品市場의 출현은 去來費用 등 市場摩擦費用을 減少시키고, 이에 따라 流動性を 增進시키는 등 市場運用의 效率化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派生金融商品 去來를 통하여 저렴한 費用으로, 그리고 收益 흐름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金融市場을 完成市場(complete market)으로 발전시켜, 파레토 最適狀況(Pareto optimum), 즉 어느 누구의 효용을 축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르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³⁾.

4.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르는 危險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經濟的 機能은 다양하나 이들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때문에 經濟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派生金融商品 去來는 金融制度의 安定性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派生金融商品은 去來 節次나 方式이 복잡하여 거래가 소수 전문 딜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다 簿外去來이므로 관련 리스크의 파악이 곤란한 형편이다. 그리고 金融市場間 連繫性이 강화되고 去來의 集中化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특정 참가자의 破産이 여타 시장 참가자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종래보다 증폭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派生金融商品 및 手段이 개발되고 이들의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現行 規制體制는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증권회사들은 1990년도 Market Reform Act에 의거하여 계열사를 설립함으로써 SEC의 자본금 조항 및 기타 요건에 구속됨이 없이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가능하며, 보험사들도 同 去來에 대한 연방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들 기관에 대한 규제가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派生金融商品 去來類型에 있어 거래소 거래보다는 특히 규제 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場外去來(장외거래에 있어 주로 금리 스왑거래가 대부분을 차지)에서 발생하는 市場 危險의 증대가 심각하나 아직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
- 3) 금융 혁신의 경제적 원인 및 기대 효과로 위험 배분의 효율성 제고, 위험 회피의 기회 확대, 거래 비용의 절감, 절세, 기업 경영 노력의 증진, 역선택 비용의 최소화, 기회주의적 관리 행위의 방지 등 다양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Allen and Gale(1994) 참조.

셋째,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擴大로 通貨政策의 有效性이 低下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범세계적인 통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國際的인 資金移動의 확대 및 金利 連動性의 증대를 통하여 국내 통화정책의 독립적인 수행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簿外去來의 급격한 확대로 금융기관의 財務諸表가 각 기관의 유동성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당국의 情報 蒐集 및 分析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증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이러한 副作用은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그 자체에 危險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派生金融商品의 內在的 리스크는 市場 리스크(market risk), 信用 리스크(credit risk), 流動性 리스크(liquidity risk), 經營管理 리스크(operational risk), 法的 리스크(legal risk), 決濟 리스크(settlement risk),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등 7가지의 기본적인 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市場 리스크는 파생금융상품의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 사이에 시장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여 派生金融商品의 價値가 下落할 危險을 뜻한다.

둘째, 信用 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의 契約不履行으로 손실을 입게 될 危險 또는 기대 이익을 상실할 危險이다. 전통적 금융상품은 계약 금액 전체가 信用 危險에 노출되나 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일부만이 信用 危險에 노출된다. 특히, 결제기관이 거래 상대방으로 개입하는 場內去來의 경우에는 信用危險이 현저히 감소한다. 하지만, 이러한 安全裝置가 없는 場外去來인 경우에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르는 信用危險이 크다.

셋째, 流動性 리스크는 파생금융상품이 경제적 가격 또는 이와 근접된 가격으로 신속히 매매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며, 거래 참여자가 시장의 去來 不振이나 장애로 인해 종전의 가격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특정 포지션을 헤지 또는 反對賣買를 통해 清算할 수 없는 危險을 말한다.

넷째, 經營管理 리스크는 적절하지 않은 內部統制制度나 業務處理節次, 직원의 실수, 시스템상의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예기치 못한 損失이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法的 리스크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기법이 급속히 발전하고 점차 복잡화되는 데 비해 관련 규정이 適期에 정비되지 못함에 따라 實去來慣行과 法的 制度間의 不調和로 야기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여섯째, 決濟 리스크는 支給決濟制度의 缺陷과 거래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결제일에 일시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危險을 말한다. 이는 계약에 정한 금액을 수취하기 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산을 인도함으로써 발생하는 損失 危險이며 이에 따라 거래 상대방은 연쇄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74년 독일의 Herstatt은행이 거액의 마르크貨를 수령한 후 동 대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기 직전에 倒産함으로써 유로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決濟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또한 決濟 리스크는 외국 거래 상대방과의 時差 때문에 발생되는데 이는 現物 引導와 決濟가 동시에 발생되지 않거나 지급 결제 방법상 자금을 즉시 수취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일곱째, 시스템 리스크는 개별 시장 참가자의 리스크나 특정 시장에서의 각종 리스크가 여타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리스크로서 派生金融商品 去來로 市場間의 連繫가 강화됨으로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이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단순한 市場 事故(금융기관의 도산이나 시장 및 지급결제제도의 붕괴)가 연쇄적으로 다른 金融機關의 倒産이나 市場 및 支給決濟制度의 崩壞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들 때문에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管理·監督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監督機關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한다면 이들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낮다. 그 이유는 상당한 派生金融商品

들이 기존의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현하였고, 거래 내용 또한 복잡·다기하여 정형화된 규제 방식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派生金融商品 去來에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去來 參與者들에게 인식시키고 자율적으로 内部 管理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며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會計 및 公示制度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派生金融商品の類型

派生金融商品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市場의 形態, 거래의 대상인 基礎資産의 種類, 去來의 目的, 契約의 形態 또는 危險 配分 形態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本 節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

가. 市場의 形態에 따른 區分

派生金融商品 去來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市場의 形態에 따라 場內去來와 場外去來로 구분할 수 있다. 場內去來란 조직화된 去來所에 상장된 계약 조건이 표준화된 派生金融商品에 대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며, 場外去來란 계약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기초 금융상품의 품질, 계약의 만기 및 지급 흐름의 형태를 조절한 양자간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場內去來와 場外去來의 差異點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 계약은 유통시장에서 통일된 규칙하에 거래할 수 있도록 標準化되어 있는 반면 장외거래 상품 계약은 個別 注文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場內去來는 기초상품의 품질, 거래의 방법, 계약 단위 및 만기일 등 계약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어 거래 참여자는 派生商品의 價格과 數量만을 고려하면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거래자나 상대적으로 금융 거래 기법에 능숙하지 않은 거래자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 去來

參與者의 범위가 넓고 去來의 流動性이 증진된다. 반면 場外去來는 거래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외거래에 참여하는 거래자는 자신의 去來 目的에 따라 契約條件을 조절할 수 있다.

둘째,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는 決済體制上 差異가 있다. 장내거래의 경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결제기관이 매도자와 매입자에 대하여 각각 거래의 상대방으로 개입하여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決済機關은 거래자들에게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證據金으로 징수하고, 각 거래자의 去來포지션의 價格을 일일정산하여 증거금에 반영함으로써 損失이 累積되는 것을 방지한다. 반면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契約의 不履行을 방지하여 손실을 막아 줄 制度的 裝置가 없다.

셋째, 場內去來의 경우 매도자나 매입자는 만기일 이전에 反對賣買를 통해 쉽게 契約를 清算할 수 있으나 場外去來의 경우에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만기일에 실물을 引受 渡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보다는 반대매매를 통해 계약을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 거래 조건에 맞도록 특별하게 조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대매매나 양도하는 것이 어려워 거래의 대부분이 실제로 現物을 引受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場內·場外去來의 참여는 派生金融商品의 會計·公示 및 課稅制度 등을 검토하는 데에도 서로 다른 함의를 지니게 된다. 먼저 場內去來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公開呼價方式에 의해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므로 객관적인 市場價格이 형성되고 상품의 수급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가격이 변화한다. 반면 場外去來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두 當事者의 合意에 의해 조건이 조정된 계약이므로 객관적인 가격이 성립될 수 없고 또한 계약에 대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商品 價値의 變化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어렵다.

둘째, 場內去來의 경우에는 時價 變化가 즉시 證據金에 반영되어 日日

精算되므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손익이 즉시 드러난다. 반면 場外去來의 경우에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派生商品 去來에 따르는 損益은 滿期日에 계약을 종료할 때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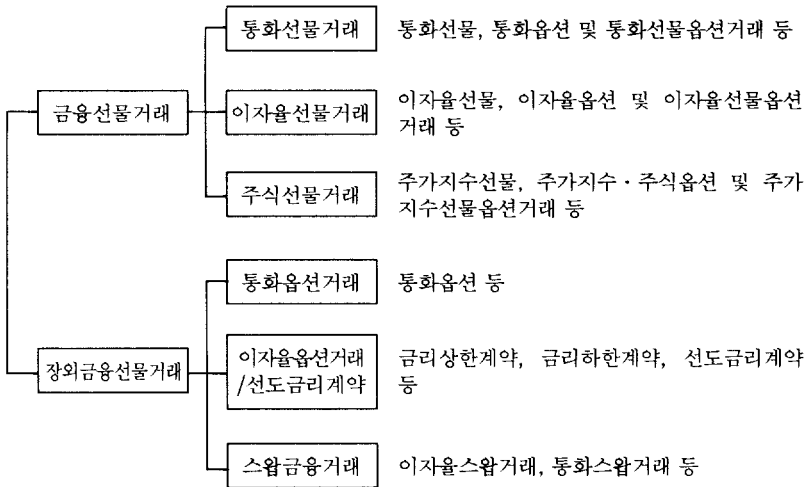
셋째, 場內去來의 경우에는 決濟機關의 契約履行 保證, 日日精算制度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信用危險이 장외거래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거래의 절차 및 청산 방법 등도 標準化되어 있어 거래에 따르는 諸般 危險 要素가 현저히 낮다. 반면, 場外去來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어떠한 制度的 裝置도 없어 거래에 따르는 위험이 매우 크다.

나. 基礎商品の 種類에 따른 區分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기초상품별로 파생금융상품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契約價値를 결정하는 基礎資産 및 指數의 성질에 따라 金利·外換·株式·一般商品 등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생상품 중 去來 規模가 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金利 關聯 商品, 通貨 關聯 商品, 株式 및 株價指數 關聯 商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규정」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金融先物去來와 場外金融先物去來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기초상품별로 거래를 구분하고 있다(〈表 II-3〉 참조).

이러한 구분 방법은 去來의 對象에 따라 會計·公示方法이 다르거나 損益의 源泉에 따라 課稅方法이 다른 경우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個人所得稅의 경우 株式의 讓渡差益은 과세하지 않으나 利子所得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派生商品 去來에 따른 손익이 실현되었을 경우 손익이 資本利得인지 利子所得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 금액 전체에 대해 教育稅가 부과

〈表 II -3〉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派生金融商品 分類



되나, 外換 去來에 따른 수익의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教育稅가 부과된다⁴⁾. 따라서, 金融機關의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른 이익이 外換 去來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去來 目的에 따른 區分

파생금융상품이 폭발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금융상품을 基礎商品과 派生商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상품을 去來 目的에 따라 危險轉嫁型, 流動性 增進型, 信用創造型 및 持分創造型으로 구분하고 있다⁵⁾.

4) 재정경제원 예규, 「세조 22607-115」 참조.

5) BIS(1986) 참조.

危險轉嫁型은 금융상품의 內在的 危險을 감소 내지는 전가하는 상품으로서 先物, 옵션, 스왑 및 變動金利附 債券 등으로 대표되는 價格危險轉嫁型 商品과 證券化 資産,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등으로 대표되는 信用危險轉嫁型 商品이 있다.

流動性增進型은 資産의 證券化를 통하여 시장에서 유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流動性을 증진시키는 상품이다. 유동성의 증가에 따라 去來費用의 減少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擔保附 證券,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등이 있다.

信用創造型은 새로운 信用供給源을 개발하거나 既存의 信用供給을 擴張시키는 혁신이다. 1980년대 Michael Milken에 의해 개발된 高危險債(junk bond)는 많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자금원의 역할을 하였고, 無利標附 債券(zero coupon bond)은 고금리 시대에 자본이득면에서 종래의 이표채보다 유리한 점을 이용해 새로운 신용공급원을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아울러 스왑은 換危險 및 利子率 危險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신용 창조를 가능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持分創造型은 資産에 持分の 性格을 가미하는 혁신으로 債務持分混合型 證券인 變動金利附 優先株, 轉換社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라. 契約의 形態에 따른 區分

모든 파생금융상품은 계약 형태 즉, 기초상품이 지니는 내재적 위험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先渡型 派生金融商品과 옵션型 派生金融商品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어떠한 파생금융상품이라도 모두 이 두 가지 형태의 거래를 조합하여 각각의 기초상품에 적용함으로써 만들어 낼 수 있다.

派生金融商品の 會計·公示 및 課稅制度의 整備은 파생금융상품에 내재된 危險을 적절히 드러내고 派生金融商品の 價値 變化와 이로 인한 損益을 어떻게 會計 目的 또는 課稅 目的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表 II -4〉 主要 派生金融商品

기 초 자 산		외 환	채권 및 금리상품	주식 및 주가지수
파 생 상 품	선도계약형	장내 통화선물 (¥, DM 등)	유로달러금리선물 채권선물	주가지수선물
		장외 선물환 통화스왑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스왑	주식스왑
품	옵션계약형	장내 통화선물옵션	채권옵션 채권선물옵션	주식옵션 주가지수옵션 주가지수선물옵션
		장외 장외통화옵션	Caps, Floors, Collars, Swaptions, 장외채권옵션	장외주식옵션

을 세우는 작업으로 各 派生金融商品의 價値 變化가 어떠한 형태를 갖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적인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각각의 상품에 대한 價格 決定, 價値 變化 및 收益의 形態, 去來에 따르는 危險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先渡型 派生金融商品

先渡型 派生金融商品이란 基礎商品의 價値 變化에 비례하여 그 資産의 價値가 變化하는 상품을 가리키는데, 先渡契約(forward contracts), 스왑(swaps), 그리고 장내에서 거래되는 先物契約(futures contracts) 등이 이에 속한다.

가) 先渡契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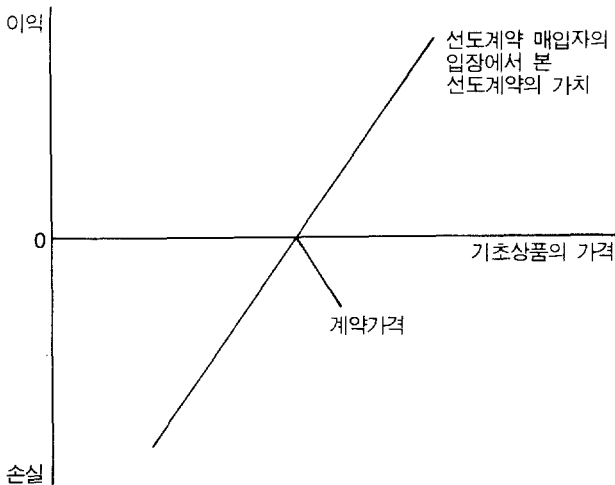
先渡契約은 미래의 일정한 時點(引導日 또는 滿期日이라 부른다)에 계약에서 정한 基礎商品을 계약에서 정한 價格(先渡價格이라 부른다)과 數量으로 引受渡하기로 약속하는 양자간 계약이다. 다양한 基礎商

품에 대해 선도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農產品과 工產品에 대한 선도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금융상품으로는 通貨(先物換 契約)와 利率(先渡利率契約 : FRAs)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先渡契約은 場外 派生金融商品으로서 거래 조건이 거래 당사자들의 去來 目的에 부합하도록 基礎商品의 數量, 品質 및 價格, 引導日과 引導條件, 決濟 方式 등 去來 條件이 조정되며, 대부분 引導日에 基礎商品을 引受渡함으로써 종료된다.

先渡契約의 價値는 [圖 II - 1]에서와 같이 基礎資産의 價値가 변화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움직인다. 선도계약으로 인한 損益은 인도일에 기초상품을 引受渡하여 거래를 종료하였을 때에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인도일 이전에는 계약 당사자가 契約不履行의 危險을 지게 되며, 쌍방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선도계약은 去來 規模가 크고, 잠재적인 信用危險이 매우 현저하므로 일반적으로 企業, 金融機關, 機關投資者 또는 政府機關 등이 선도거래에 참여한다.

[圖 II - 1] 先渡契約의 價値 變化



나) 先物契約

先物契約은 미래의 一定 時點(인도일)에 特定 基礎商品을 일정한 價格과 數量으로 거래의 일방은 매도하고 상대방은 매입할 의무를 지는 계약으로, 先渡契約과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거래이나 先渡去來가 場內去來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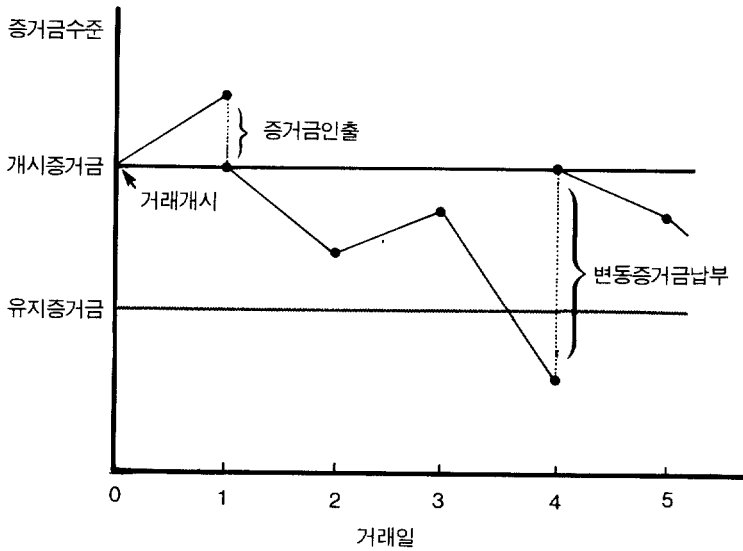
선물계약은 諸般 去來條件이 標準化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契約의 價格과 數量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현재 株式, 債券, 外換 및 指數나 變動利率 등 광범위한 기초상품에 대해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去來의 相對方을 알 수 있는 선도거래와는 달리, 선물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자와 매입자 사이에 決濟機關이 개입하여 매도자와 매입자 모두에 대해 去來의 相對方 役割을 수행함으로써 契約履行의 責任을 진다. 이를 위하여 決濟機關은 각 시장 참여자의 거래 포지션에 대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성격의 開始證據金을 징수하고 선물 포지션의 가치 변화에 따른 손익을 日日精算하여 證據金에 반영한다. 만약 시장 참여자가 이익을 보아 증거금 잔고가 개시 증거금 수준 이상이 되었다면 그 차액을 인출할 수 있으나⁶⁾, 손실을 입어 證據金 殘高가 일정 수준(이를 維持證據金이라 한다) 이하로 떨어졌다면 開始證據金 水準을 회복하도록 추가로 證據金(이를 變動證據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圖 II-2] 참조).

선물의 매입자는 인도일에 기초상품을 수령하고, 매도자는 인도하기로 약속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계약이 기초상품의 인수도를 통해 결제되기보다는 인도일 이전에 反對賣買를 통해 청산된다. 인도일까지 계

6)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에는 이 차액을 인출할 수 없으며 대신 이 누적 차액에 대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3%)를 지급하고 있다. 향후 개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자금은 투자자들이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圖 II -2] 先物契約의 價値 變化에 따른 證據金의 變化



약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기초상품의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指數나 變動利率에 대한 선물거래일 경우에는 기초상품의 인수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現金 決濟를 통하여 계약의 청산이 이루어진다.

선물계약의 경우 去來條件이 標準化되어 있고, 계약의 가치 변화에 따른 損益이 日日精算되며, 決濟機關이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契約履行을 보증하는 등 계약에 따르는 信用危險이 선도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에 따라 機關投資家 이외에도 中小企業, 投機者 등 소형투자자의 참여가 용이하다.

이와 같은 先物契約과 先渡契約의 差異點은 會計上에도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先渡去來의 경우 대부분 계약 만기일에 계약 내용대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去來 內容이 재무제표에 資産 및 負債로 계산된다. 한편 先物去來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대 매매에 의한 결제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실행일을 확정 할

수 없고, 반대매매시 차감 잔액으로 거래를 종결하므로 거래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去來內容이 財務諸表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선물계약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자산 또는 부채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방안이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⁷⁾.

다) 스왑去來

스왑거래는 거래 쌍방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支給의 흐름을 交換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때 同一 通貨 表示의 支給을 교환하는 것을 利子率 스왑, 異種 通貨 表示의 支給을 교환하는 것을 通貨스왑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일반 商品, 株式, 商品指數 또는 生産者 物價指數에 대한 스왑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利子率 스왑은 개념적인 名目元金에 대한 利子を 거래 당사자간에 교환하는 거래이다. 利子率 스왑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固定利子和 變動利子を 교환하는 스왑을 들 수 있다.

선도계약과 마찬가지로 스왑거래는 參與者間의 雙方 去來로 거래 당사자의 특정한 危險管理目的에 따라 그 조건이 조정된다. 스왑은 두 기업간에 직접 체결되거나 중개자로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金融機關이 개입한다. 어느 한 기업과 스왑거래를 체결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다른 고객과 반대되는 스왑거래를 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채권이나 선물거래에 의한 포지션을 헤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스왑을 제외한 여타 스왑거래에서는 인도일 이전의 中間 決濟가 相計되어 거래의 일방이 결제일에 그 차액만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스왑거래 계약 조건에 따라 相計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總額을 서로 교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變動金利과 固定金利을 교환하는 利子率 스왑의 경우, 變動金利에 의한 이자는 分期別로 지급하는 반면,

7) 자세한 내용은 本 報告書의 제Ⅳ장 제3절 참조.

固定金利에 의한 이자는 6個月이나 1年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상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자 총액을 교환하게 된다. 通貨 스왑의 경우에는 만기에 가서 반드시 元金이 교환된다.

모든 스왑거래가 滿期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에게 讓渡하거나, 去來 當事者들의 合意에 의해 자발적으로 종료되거나, 아니면 反對賣買를 통해 스왑거래를 청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 기간중 이자율 등 基礎商品의 價値가 변화하였다면 그에 따른 損益의 支拂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은 자신이 比較 優位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후, 補完的인 需要를 가진 기업과 스왑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債務 構造를 변경할 수 있다. 이로써 스왑거래의 쌍방은 資本 調達의 費用을 낮추게 되어 서로 이익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利子率 스왑을 사용하지만,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資產의 收益性을 제고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固定利子率 收益을 얻을 수 있는 投資를 원하는 투자자는 직접 固定利子率 收益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행하는 것보다 變動利子率 收益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행하고 이에 대한 스왑거래를 체결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스왑을 이용함으로써 자산이 고정이자율 수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부채는 변동이자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利子支給構造의 不一致에 따른 危險을 헤치하여 차입의 시기와 資產과 負債의 管理에 柔軟性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스왑은 기초자산이나 부채와 관련 없이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는 投機的 目的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스왑은 일반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危險管理 目的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타 파생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스왑거래는 그 자체의 危險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스왑去來의 構造, 去來 相對方の 信用度, 적절한 헤지 手段을 사용할 수 있는 可能性, 市場의 狀況, 스왑去來의 期間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크게 信用危險, 期間 不一致 危險 (mismatch risk), 市場危險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信用危險이란 거래의 상대방이 支給不能 狀態에 빠져 스왑거래에 따른 지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을 입을 위험을 말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金融機關이 대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元金과 利子를 모두 받지 못할 위험을 지게 되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準備金을 적립하게 된다. 하지만 利子率 스왑去來의 경우에는 名目元金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元金 損失의 危險이 없다. 또한 스왑은 支給의 흐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경우에 금융기관은 스왑거래에 따른 지급을 중지하게 되어 名目元金에 대한 利子 損失의 危險도 적다. 따라서 스왑去來에 따르는 信用危險은 대출에 따르는 위험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期間 不一致 危險이란 스왑계약에 따라 雙方의 支給 期間이 서로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信用危險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變動利子를 3個月마다 지급하고 固定利子를 1年 단위로 받기로 계약하였다면, 1년 후 고정이자를 받을 때에 이르러서야 상대방이 支給不能 狀態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지불한 변동이자를 잃을 위험을 지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왑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去來의 仲介者로서 金融機關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인데, 기업과 스왑거래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다른 기업과 反對 去來를 체결함으로써 市場危險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왑거래를 체결한 즉시 反對 去來를 체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매매를 체결할 때까지 金融機關은 市場危險을 지게 된다.

2) 옵션型 商品

옵션형 상품으로는 표준화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場內옵션과 개별 거래자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場外옵션으로 분류된다. 場內옵션에는 株式옵션, 先物옵션 등이 있으며 場外옵션에는 株式 場外 옵션契約,

利率上限契約(caps), 利率下限契約(floors), 「칼라」(collars), 「스왑션」(swaptions) 등이 있다.

가) 옵션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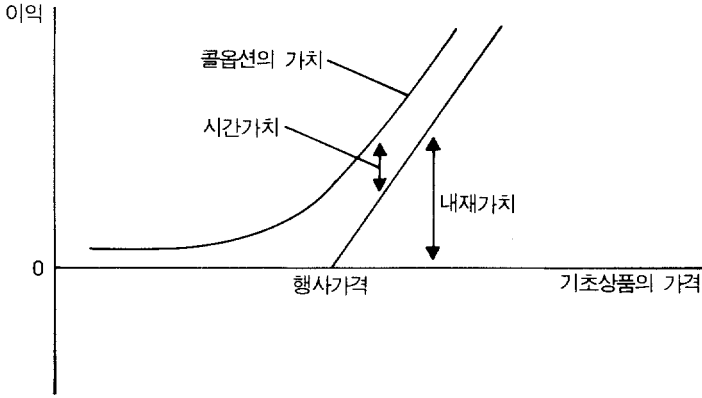
옵션이란 주어진 期間(안)에 基礎資産을 정해진 價格(行使價格)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基礎資産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場外市場 옵션거래는 債券, 株式, 通貨, 일반 商品, 또는 스왑과 같은 다양한 基礎商品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옵션거래는 株式引受權(warrants)과 같은 證券이나 特定 商品 또는 옵션의 성격을 지니는 株式 關聯 債券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場內옵션 중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先物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옵션도 존재하는데 이를 先物옵션이라고 부른다.

옵션은 매입자에게 權利이지 義務⁸⁾가 아니기 때문에 保險의 性格을 띤 상품으로서 옵션의 소지자가 基礎資産의 市場價格과 옵션의 行使價格을 비교하여 權利 行使 與否를 결정한다. 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과 만기일 이전 어느 때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美國型 옵션이 있다.

옵션의 價値를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를 內在價値(intrinsic value)와 時間價値(time value)로 구분할 수 있다. 內在價値란 基礎資産의 價値와 옵션의 行使價格과의 差異를 말한다. 물론 基礎資産의 價格이 옵션의 行使價格보다 낮다면 옵션의 구매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므로, 옵션의 內在價値는 基礎資産의 價格이 옵션의 行使價格보다 높아 옵션의 구매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時間價値는 옵션 프리미엄과 옵션의 內在價値의 差異를 말

8) 한편 옵션 매도자는 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圖 II -3] 옵션契約의 價値 變化



하는데, 이는 基礎資産의 價格, 基礎資産 價格의 變動性, 無危險資産의 收益率, 滿期日까지 남은 期間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옵션契約의 價値는 [圖 II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基礎資産의 價値 變化에 따라 비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옵션의 구매자는 옵션의 權利를 行使하거나, 옵션의 판매자에게 되팔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여 清算하거나, 契約을 清算하지 않은 채 滿期를 지나는 방법으로 契約을 종료할 수 있다.

나) 利率上限契約과 利率下限契約

利率上限契約(caps)은 變動利率이 契約에서 정한 수준 이상 (cap strike rate)이 될 경우 그 차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契約이다. 利率上限契約은 스왑과 마찬가지로 名目元金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變動利率은 LIBOR 금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利率上限契約을 이용함으로써 變動利率로 대부를 받은 자금 차입자는 이자율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음으로써 利率 變動의 危險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變動利率을 固定利率과 교환하는 利率 스왑契約과는 달리 利率上限契約의 매입자는

계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이자율이 낮을 경우 變動利率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利率上限契約의 매입자는 利率 變動 危險으로부터 벗어나는 대가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데, 이 프리미엄은 名目元金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利率上限契約의 期間은 수개월에서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은 계약 체결시에 지불된다. 따라서 利率上限契約의 매도자는 信用危險을 지지 않고 매입자만이 계약에 따른 위험을 지게 된다.

利率下限契約(floors)은 變動利率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利率上限契約과는 반대의 계약이다. 利率上限契約과 利率下限契約은 名目元金の 量, 保證期間, 헤지되는 變動利率의 種類, 보증되는 利率의 上限(利率上限契約의 경우) 또는 下限(利率下限契約의 경우), 그리고 및 프리미엄의 支拂 方法 등 5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利率上限契約과 利率下限契約을 동시에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를 「칼라」(collar)라고 부른다. 칼라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利率下限契約을 賣渡하고 이로부터 얻는 프리미엄으로 利率上限契約을 買入하는 계약인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利率 變動을 上限과 下限 사이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다) 스왑션

「스왑션」(swaption)은 스왑에 대한 옵션이다. 스왑션의 구매자는 未來의 一定 時點에 특정한 스왑去來를 시작할 權利를 얻는다. 물론 옵션 거래이므로 거래를 반드시 시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美國型과 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이 있다.

스왑션은 현재 企業債務管理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利率 스왑에 대한 옵션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은 利率의 變動 危險에 더

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變動金利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따른 利子費用을 固定하기 위해 현재 變動金利에 대해 6%의 固定金利로 스왑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때 스왑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變動金利에 대한 固定金利가 장래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기업은 현재 스왑거래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스왑션(변동금리와 6% 고정금리 스왑에 대한 옵션)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장래에 固定利子率이 上昇하는 경우 스왑션을 行使함으로써 이 기업은 6%의 固定利子로 전환할 수 있고, 固定利子率이 下落하는 경우에도 스왑션의 프리미엄만큼은 손해를 보게 되지만 낮은 이자율로 스왑거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스왑을 바로 개시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의 固定利子 支拂로 轉換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派生金融商品 會計 및 課稅制度 整備時 主要 考慮事項

1. 派生金融商品 會計 및 課稅制度의 整備 必要性

派生金融商品을 이용하여 일반 기업, 금융기관 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資産이나 예상되는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危險을 回避·管理할 수 있지만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그 자체에 危險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派生商品은 去來에 따르는 危險이 매우 큰 반면 거래에 드는 費用이 현물을 거래하는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거래를 수행할 수 있어 잘못된 예측이나 부당한 거래로 인한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失敗는 거래 참여 기관의 財務 狀況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과 같이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관계된 기업의 경우에는 각 이해 당사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派生商品 去來 情報를 정확히 평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會計·公示制度의 發展이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會計·公示制度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거래 참여자들이 그릇된 결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메탈게젤샤프트(Metallgesellschaft)社의 대규모 손실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會計 및 公示制度의 整備가 중요함을 살펴보기 위하여 메탈게젤샤프트社의 대규모 손실의 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¹⁾.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MGRM(Metallgesellschaft Refining and Marketing)社는 독일의 대기업 집단인 MG(Metallgesellschaft A.

G.)社의 美國 子會社로서 안정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3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석유 도소매상들에게 10년 동안 일정한 價格으로 석유 제품을 供給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先渡 供給 契約(forward supply commitment)을 체결한 MGRM社는 석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先渡 契約을 취한 量만큼 뉴욕금속거래소(NYMEX)에 석유 선물에 대한 매입 포지션을 취하였다. 한편 先物市場에서는 만기가 10년 이상인 長期 先物契約이 거래되지 않으므로 장기 선도계약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短期 先物契約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헤지 전략(rollover hedging strategy)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갱신 헤지 전략을 취한 1993년 후반 이후 油價는 우려한 것과는 반대로 계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先渡契約에서는 未實現 利得이 발생한 반면 先物市場에서는 日日精算에 따라 대규모의 損失을 보게 되었고 追加證據金의 납부 요구(margin call)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先物市場에서는 近月物 선물 가격이 遠月物 선물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정상시장 상황(normal market 또는 market in contango)이 전개되어 단기 선물을 이용한 헤지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갱신함에 따라 손실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²⁾. 결국 MG社의 감사회는 지나치게 위험한 先渡契約과 그릇된 갱신 헤지 전략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양 거래를 청산하였는데 그 결과 약 13억달러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大規模 損失이 발생한 原因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國家間 會計 慣行의 불일치와 적절치 못한 公示가 가장 결

1) 메탈게젤샤프트社의 대규모 손실사건에 관한 자세한 분석에 관하여는 Culp와 Miller(1994), Edwards and Canter(1995)를 참조.

2) 헤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近月物 先物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고 遠月物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갱신 헤지 전략이 계속적으로 손실을 누적시켰다.

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MG社의 미국 회계 법인과 독일 회계 법인이 서로 상반된 監査報告書를 발표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이 혼돈에 빠졌고, 이에 따라 MG社는 先物市場에서의 損失³⁾을 보전하는 데 先渡 供給 契約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득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美國의 會計基準에서는 純粹 賣買目的의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경우에는 時價主義 원칙에 따른 會計處理를 수행하고 있어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이득 또는 손실을 그 市場價値가 변동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인식하여 계상하고 있다. 또한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대상 기초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헤지라고 인정되면 「헤지 會計」(hedge accounting)로 처리될 수 있다⁴⁾. MG社가 미국의 회계기준을 따랐다면 先物去來에서 발생한 損失을 즉각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선도 공급 계약에서 손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회계관행에 따르면 헤지 대상물과 파생상품을 時價로 평가하여 동시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MG社의 미국 회계 법인인 아더 앤드슨(Arthur Andersen)은 先物契約과 先渡 供給 契約을 동시에 時價로 평가하고 결산일에 양 계약의 손익을 계상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여기서 同社는 상당한 利益을 본 건실한 기업으로 보고되었다⁵⁾.

3) 선물 시장에서의 손실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現物 油價가 하락함에 따라 先物 價格도 하락하여 선물 매입 포지션에 대한 추가증거금 요구에서 발생한 손실과 둘째, 短期 先物價格이 長期 先物價格보다 낮게 형성되는 市場에서 갭신 헤지를 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등이다.

4) 미국의 헤지 會計 처리에 따르면 헤지 대상물(여기서는 선도 공급 계약)의 손익이 인식될 때까지 파생금융상품(여기서는 선물 계약)의 손익을 이연하여, 양 거래의 손익을 동일한 會計 期間에 인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헤지 회계를 허용하는 이유는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헤지의 本質과 經濟的 實質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다.

5) MGRM社는 회계연도 1993년도(결산일이 9월 말)에 稅前 6,100만달러의 이익을, MG社는 3천만달러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MG社의 독일 회계 법인 KPMG는 獨逸의 會計 基準에 따라 MG社가 갱신 헤지 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의 회계 기준에 따르면 未實現 損失이 발생한 경우 결산일에 이를 인식하나, 未實現 利益에 대하여는 인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會計 慣行은 株主보다는 채권자, 종업원 등을 위해 기업이 보수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재무제표를 세무 목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미실현 손실까지 인식함으로써 稅金 控除가 최대 한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MGRM社의 경우 1993년 후반부터 油價가 하락함에 따른 先物去來에서의 未實現 損失은 인식되나 높은 가격으로 油類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先渡 供給 契約에서의 未實現 利得은 인식되지 않았다. 그 결과 MG社는 派生商品 去來에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러한 손실은 지나친 투기적인 성향의 거래에서 연유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만약 未實現 損失과 利益이 동시에 인식되었다면 MGRM社는 좀더 적은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派生商品 去來에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MGRM社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보수적인 성격을 띤 MG社(獨逸 本社)의 감사진에 의해 先物去來 및 油類 先渡 供給 契約이 종결됨으로써 이 계약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다.

MGRM社가 문을 닫게 된 이유로 同社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은행에 의거하여 지배되었다는 獨逸式 企業 支配 構造의 문제점과 同社가 지나치게 위험한 先渡 供給 契約을 체결하였다는 營業上의 문제점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會計·公示制度의 不調和 때문에 그릇된 의사 결정을 유도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派生金融商品 去來 損益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會計 情報를 제공

할 수 있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서로 상반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물며 대부분의 派生金融商品이 簿外去來(off-balance sheet contracts)이기 때문에 그 거래 내역과 그에 따르는 위험이 企業의 財務諸表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거래 참여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株主, 기업에 대한 貸付者, 증권 감독 당국, 과세 당국 등)이 派生金融商品 去來 現況에 관한 情報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련된 회계 및 공시제도가 거래 특성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며, 이 때 派生金融商品의 실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會計基準에 의거하여 파생상품손익을 인식·측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회계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派生金融商品의 등장에 따라 각국은 이를 自國의 課稅制度 안에 수용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 왔다. 現物의 引受渡나 反對賣買를 통해 결제되기 이전에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은 未決濟約定으로 취급되므로 이에 따른 損益을 未實現 損益으로 처리하는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租稅制度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租稅 移延, 租稅 回避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1년 이전의 美國 稅制는 短期 資本利益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長期 資本利益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자는 스트래들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短期資本利益에 대한 重課稅를 회피할 수 있었다. 스트래들이란 派生商品 市場에서 같은 크기의 買入 포지션과 賣渡 포지션을 취하는 것으로 과세연도 말에 한 포지션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포지션에서는 같은 크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거래자는 損失이 발생한 포지션만을 종료하여 損金控除를 받고, 利益이 발생한 포지션은 계속 유지하여 이익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연함으로써 長期資本利益 조항에 따른 낮은 稅率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稅法下에서도 派生金融商品의 損益을 決濟基準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 先物換 契約의 종료시에 같은 조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원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원계약의 손익과 재계약의 손익을 모두 재계약의 종료 시점에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참여한 거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 연도에 과생금융상품의 손익이 인식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派生金融商品 去來 技法이 발달함에 따라 既存 租稅制度의 問題點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이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性格에 따라 이에 관련된 課稅制度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르는 法的 危險이 매우 커서 派生金融商品 市場의 成長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通貨 옵션 去來에 대한 教育稅 賦課 基準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교육세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는 收益 金額의 0.5%를 教育稅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收益 金額에는 금융·보험업자의 收入 利子, 配當金, 手數料, 有價證券 賣却 益 등이 있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外換 賣買益이 있다. 이때 課稅 標準이 되는 수익 금액은 과세기간의 收益 金額 總額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교육세 부과 대상인 外換 賣買益의 概念과 算定方式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예규⁶⁾를 통하여 외환매매익을 ‘과세기간 중 現物換, 先物換, 스와프金融 등 外換 去來에서 발생하는 總賣出金額(또는 利益)에서 總買入金額(또는 損失)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 바가 있으나 이 예규에 통화옵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에 외국환은행이 국내 기업에게 通貨 옵션 去來를 통해 변칙적으로 外貨 與信을 제공한 사례(〈表 Ⅲ-1〉 참조)에 대해, 受取프리미엄 全體를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과 受取프리미엄에서 支給프리미엄을 제한 收益金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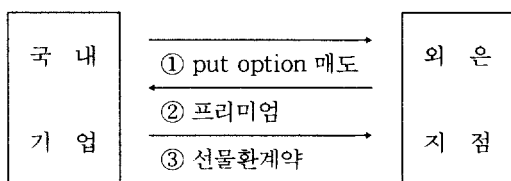
6) 재정경제원 예규, 「세조 22607-115」 참조.

〈表 Ⅲ-1〉 規制回避型 옵션去來 事例

다음은 1988년중 國內 外銀支店들이 國內 기업들에게 장외 통화옵션거래를 이용하여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는 본래 목적보다는 높은 금리로 외화여신을 공여하였던 事例를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國內에서는 원貨 절상 가속화와 더불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제도 폐지, 외화대출 축소 등으로 만성적인 자금 초과 수요가 있었고, 엔/US달러 환율은 120엔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契約 內容〉

國內 기업은 1년 후에 100円/1US달러라는 환율로 1억円을 100만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외은 지점에 매도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으로 계약금의 18%인 18만달러를 수취하였다. 그리고 양자는 1년 후에 US달러와 円을 선물환율 円/US달러=126.6으로 교환하는 契約을 체결하였다.



〈效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옵션 계약일에 18만달러를 수취하고, 만기일에 은행의 옵션행사로 100만달러를 은행에 지급하고 1억엔을 수취하게 된다. 그리고 만기일에 선물환계약의 실행으로 1억엔을 지급하고 79만달러(=1억엔/126.6엔)를 수취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3만달러(=100만달러-(18만달러+79만달러))를 더 지급하는 셈이 되고, 이는 18만달러를 1년간 차입한 대금으로 금리는 16.7%(=3만달러/18만달러)가 된다.

외국환은행간의 논란이 있었다⁷⁾.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확대되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課稅制度의 未備는 同 市場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派生金融商品 去來를 활성화하고 거래에 따르는 危險을 줄여 去來의 透明性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의 整備가 필수적이다.

2. 派生金融商品 會計制度 整備時 主要 考慮事項

企業 會計·公示制度는 기업의 활동과 재무 상황에 대한 客觀的 情報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企業會計基準도 ‘會計 情報의 利用者가 企業 實體와 관련하여 합리적 意思 決定을 할 수 있도록 財務上의 資料를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 原則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情報를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 처리는 歷史的 原價의 原則, 收益의 實現主義 原則, 收益·費用 對應의 原則, 一貫性의 原則, 完全 公示의 原則 등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⁸⁾.

歷史的 原價의 原則(historical cost principle)이란 모든 거래는 그 取得 原價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간의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자산 및 부채를 取得 原價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客觀的이고 檢證 可能한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歷史的 原價의 原則을 채택하고 있다.

7) 결국, 통화 옵션 프리미엄은 권리금이나 보험료의 성격이며 그 자체가 외환매매익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수취 프리미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다.

8) 宋梓外(1985)를 참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發生主義 會計(accrual basis accounting)를 채택하고 있다. 즉,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수취나 지급에 상관없이 수익과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느냐에 인식의 기준을 둔다. 여기에서 실제로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는 收益의 경우 實現主義 原則, 費用의 경우 收益·費用 對應의 原則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收益의 實現主義 原則(realization principle)이란 수익이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하고, 획득되었을 때 회계 장부상에 收益으로 認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주의 회계와는 달리 發生主義 會計에서 현금을 실제로 수취했는지의 여부는 수익의 인식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그 代金の 請求權이 확정되면 수익으로 인식된다.

收益·費用 對應의 原則(matching principle)이란 費用은 이와 관련된 收益이 인식된 會計 期間의 費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發生主義 原則을 따르게 되면 손익 계산에 있어서는 營業活動의 結果로 수입된 금액을 收益으로 인식하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입된 經濟的 價値를 費用으로 하여 費用·收益 對應 原則에 따라 期間 損益을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 회계상의 기간 손익은 가능한한 經常的 收益 能力을 반영하여야 情報 提供 機能으로서 유용성이 있으므로 기업 회계에서는 當期 業績主義에 따른 회계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一貫性의 原則(consistency principle)이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회계 거래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 同一 經濟 事件에 대해서는 同一 會計 原則과 會計 節次를 적용하고, 한번 택한 會計處理基準 및 節次는 매기에 계속 적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完全 公示의 原則(full disclosure principle)이란 情報 利用者들의 判斷과 意思決定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모두 완전히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원칙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會計情報를 보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회계원칙 중 一貫性의 原則, 完全 公示의 原則은 派生金融

商品의 會計處理時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收益의 實現主義와 收益·費用 對應의 原則으로 특징 지워지는 發生主義 原則이나, 歷史的 原價의 原則은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本質과는 다른 회계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一般會計原則에 따르면 派生金融商品 去來는 일반적으로 基礎商品의 引受渡 또는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되기 이전에는 未實行 契約으로 남는다. 특히 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으므로 거래 종료 시점까지 그 契約의 效果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一般會計原則에 의거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派生金融商品은 거래 내역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簿外去來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派生金融商品 去來는 기본적으로 장래에 基礎商品의 引受渡를 약속하는 계약일 뿐이어서 거래 완료 이전에는 基礎商品에 대한 所有權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基礎商品을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파생상품 계약 특히, 옵션계약의 경우 계약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派生商品 契約 그 자체도 재무제표에 기록하기 어렵다. 파생상품의 거래 특성상 去來로 인한 損益 또한 계약완료시에 실현되므로, 청산되지 않은 派生商品 포지션의 價値 變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未實現 損益으로 財務諸表에 이를 인식하지 않게 된다.

일반 회계 처리에서 歷史的 原價主義를 채택하는 이유는 取得價格이 가장 客觀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물, 옵션 등 去來所 市場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派生金融商品의 경우에는 時價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客觀性을 유지하면서도 資產 및 負債의 經濟的 價値를 가장 적합하게 나타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歷史的 原價主義와 收益 實現主義에 의거하여 선물거래의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先物 損益이 계약 실행일까지 이연되어 이익 조작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를 수행할 경우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관련된 情報가 기업의 財務諸表에 나타나지 않게 될 수 있고, 財務諸表에 표시된 損益이 期間損益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企業의 經常 收益 能力을 평가하여 客觀的 情報를 제공한다는 기업회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파생 금융상품 거래가 점차 확대되어 그로 인한 손익이 기업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去來의 透明性 確保와 投資者 保護를 위해 派生金融商品 去來 情報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會計·公示制度의 整備가 필요하다.

派生金融商品 관련 會計制度를 정비함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派生金融商品의 認識 與否, 價值評價基準, 損益認識方法, 去來目的에 따른 會計處理 區分 與否, 헤지會計 處理方法 등에 대하여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⁹⁾.

가. 派生金融商品의 會計認識 與否

派生金融商品의 去來內譯을 貸借對照表에 認識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一般的인 原則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一般會計原則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이 의무를 이행한 계약만이 계상되는데,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의 資產 또는 負債 狀況이 변동하게 된다. 그러나 派生金融商品 특히, 선물, 옵션, 스왑 등과 같이 價格危險을 轉嫁하는 기능을 지니는 상품들은 거래의 쌍방 모두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反對賣買 등을 통해 거래를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認識問題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9) OECD(1991) 참조.

일반적으로는 派生金融商品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는데, 이는 價格危險轉嫁 商品의 경우 상품의 경제적 성과가 결산일에 어떠할지가 불확실하고, 또한 파생금융상품을 인식할 경우 未實現 利益을 인식하게 됨으로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 이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派生金融商品으로부터 얻는 손익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나, 파생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이를 얻기 위한 費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른 대규모 손실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거래 내역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재무제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한 派生金融商品의 去來內譯을 재무제표에 인식시키도록 會計基準을 설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이 그 계약의 종결과 함께 청구권 또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하에 파생금융상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資產 또는 負債로 재무제표상에 계상하는 회계기준이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1994년 1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제48호 「금융상품」(이하 E48로 표시)에서 포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金融商品의 認識基準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금융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모든 危險과 經濟 價値가 기업에 이전되었을 때 또는 금융상품의 取得 原價 또는 價値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할 때 금융상품을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 반면, 금융상품과 관련된 실질적인 모든 危險과 經濟 價値가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관련 權利 또는 의무가 행사되거나 만료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인식을 중지하여야 한다.

미국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도 派生金融商品의 인식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를 진전하였고, 최근(1996년 1월)에 모든 파생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서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나. 派生金融商品의 價値評價 基準

金融商品을 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多樣하다. 금융상품을 획득하는 데 소요된 歷史的 費用에 따라 평가하는 原價法, 역사적 비용에 프리미엄 또는 할인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역사적 비용을 조정하여 평가하는 방법, 역사적 비용과 시장가격 중 작은 것을 사용하는 低價法, 현재 시장 가치를 이용하는 時價法 등이 있다. 나라마다 金融商品의 評價方法이 다르고, 대상 상품에 따라서 價値評價 基準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준들 중 파생금융상품의 가치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으로는 決濟基準과 時價基準을 고려할 수 있다.

1) 決濟基準 또는 實現基準

決濟基準(realization principle)이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權利履行 또는 反對賣買를 통하여 그 상품에 대한 義務와 權利가 소멸되었을 때까지 移延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는 경우 권리, 의무의 행사나 반대매매를 통하여 계약이 決濟될 때까지 會計處理하지 않는다. 다만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예를 들어 선물거래 증거금, 옵션 프리미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先物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決濟基準에 따른 회계 처리에서는 現物의 引受渡나 반대매매를 통하여 계약이 결제될 때까지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先物契約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또는 회계연도 말 결산하는 경우)에도 시세 차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先物去來를 위해 수수한 증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또한 先物契約의 決濟가 引受渡 또는 반대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각기 다르다. 반대매매를 통해 선물계약을 결제하는 경우, 계약의 결제에 따라 證據金의 반환 및 회수, 선물거래차금

의 결제, 수수료의 수수 등의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선물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반대매매에 의해 이를 결제할 때까지 발생한 선물 가격의 변동 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한다.

現物의 受渡를 통해 先物契約을 決濟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결제 가격을 선물거래 대상물의 매입가액(취득가액) 또는 매각가액으로 산정하고, 先物契約을 체결한 때로부터 現物의 受渡에 의해 결제될 때까지 발생한 선물계약 가치의 변동을 적당한 항목으로 처리하여 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상물의 매각가액 또는 매입가액에 가감하여 처리한다.

2) 時價基準

時價基準(mark-to-market principle)은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시장 가치가 변동하면(또는 회계연도 말 결산하는 경우에) 이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시가기준을 사용하는 國家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상품을 市場價値로 평가하는 것이 去來의 經濟的 實體를 재무제표에 더욱 공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의 경우 그로부터 기대되는 未來 現金흐름을 現在價値로서 평가하는 것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가기준을 사용할 경우 派生金融商品의 價値變化가 즉각 재무제표에 반영되게 되므로 경영자가 파생금융상품의 손익을 이연하여 수익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시가기준을 이용하는 경우 未實現 損益을 인식하게 되므로 一般會計原則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시행한 投資는 일반적으로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資金調達을 목적으로 발행한 장기채권과 같은 상품은 金融調達의 長期的 성격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會計處理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헤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보통 그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派生金融商品의 經濟的 實體와

일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⁰⁾.

또한 시가기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對象 派生金融商品의 市場價格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商品에 대한 去來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流動性을 지닌 市場이 존재하여야 하며, 市場 情報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市場價值를 계산할 수 있는 價值評價模型이 정립된 경우에 시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파생금융상품을 처리할 것인가는 派生金融商品의 性格 또는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企業의 性格과 意圖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의 회계처리방법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ASC는 E48에서 派生金融商品을 최초로 認識하는 경우와 인식된 派生金融商品의 價值가 變化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분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최초로 파생금융상품이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하기 위해 지불한 現金 내지는 이와 동등한 資產의 공정가격에 따라 평가하고,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保有 目的에 따라 가치평가기준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목적 을 헤지목적, 순수 매매목적, 투자 또는 자금조달 목적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헤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歷史的 費用에 따라 획득시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유기간중의 가치변화는 이를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契約이 終了된 후 基礎資產의 價值變化에 상응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純粹 賣買 目的으로 보유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

10) 이러한 문제는 만약 헤지 대상 상품(기초 상품)도 시가로 회계 처리한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시가로 인식하고, 헤지 대상 기초상품은 다른 방법(원가 기준, 저가기준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 양자간의 손익 인식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각기 다른 회계기간에 손익이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헤지 대상 상품거래의 손익과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손익을 동일한 회계연도에 인식하는 헤지회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 공정가치로 대차대조표상에 인식하고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품에 대해 충분한 流動性을 갖춘 組織化된 市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수 매매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이 경우에는 投資 또는 資金調達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投資 또는 資金調達 目的으로 획득한 金融資産과 負債는 만기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획득에 필요한 現金 또는 資産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계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평가하고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 派生金融商品의 價値變化에 따른 損益의 認識方法

派生金融商品의 價値가 변화하여 帳簿價額과 差異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損益計算書에 반영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價値變動을 인식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인식을 이연하는 損益移延方法(分離法)과 가치변화를 즉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帳簿價修整方法(一體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방법을 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없는 상태이다.

價値變動을 인식하지 않고 去來가 종료될 때까지 인식을 이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경영자가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損益 實現의 時期를 선택하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經濟的 效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短點이 있다. 반면에 가치변화를 즉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未實現 損益을 인식하게 된다는 短點이 있다.

損益認識方法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派生金融商品의 性格과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참여한 經營者의 意圖 및 일관된 방법으로 損益을 평가할 수 있는 手段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ASC는 E48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헤지거래로 활용된 금융자산 또는 부채(즉

派生金融商品)의 공정가치 변화로 인한 損益은 헤지 對象物의 공정가치 변화로 인한 損益이 인식될 때와 같은 시점에서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때 헤지수단으로 활용된 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 변화와 헤지 대상물의 공정가치 변화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헤지로서의 처리를 중단하고 이에 따른 손익을 즉시 인식한다. 그리고 헤지 수단의 공정가치 변화가 헤지 대상물의 공정가치 변화를 상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손익을 측정한다. 반면 純粹 賣買目的으로 인한 金融資產이나 負債의 공정가격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현된 또는 미실현된 利益과 損失은 그것이 發生할 때 인식한다. 投資 또는 資金 調達을 목적으로 한 금융자산과 부채의 손익은 그것이 實現되었을 때 인식한다.

라. 헤지會計 處理方法

派生金融商品 去來와 관련된 會計基準을 결정하는 데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去來目的에 따른 會計處理의 구분 여부와 去來 目的에 따라 구분할 경우 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의 결정이다. 後者와 관련해서는 헤지 去來로 분류하기 위한 適格要件, 헤지 損益 認識 時期, 헤지 상품 손익의 헤지 대상물 손익으로의 반영 방법, 다수의 거래를 헤지 대상으로 하는 헤지 상품 거래 손익의 헤지 대상물로의 배분 방법 등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1) 去來目的에 따른 會計處理 區分 與否

일반적으로 派生金融商品은 그 去來目的에 따라 會計 處理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去來 目的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이 번잡하고 복잡할 수 있으나 각 去來의 特性에 적합하게 經濟的 實質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은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去來時點과 損益實現時點이 다른 경우가 많고 거래 목적에 따라 관련 기초 상품과의 연계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

에 거래 목적에 따라 會計處理을 하는 것이 회계정보를 재무제표에 충실히 표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은 派生金融商品 去來를 거래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派生金融商品 去來를 수익 창출 목적의 순수 매매 거래와 위험 회피 목적의 헤지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순수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 평가하여 손익을 발생시점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헤지거래의 경우 헤지 대상물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IASC는 派生金融商品을 포함한 金融商品의 去來를 순수매매거래, 헤지거래, 투자 및 장기 자본 조달거래로 구분하여 會計處理을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헤지 會計의 必要性

派生金融商品을 去來目的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헤지 會計의 도입여부와 헤지회계 처리방법이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된다. 여기서 헤지회계(hedge accounting)란 危險 回避의 헤지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한 경우, 헤지 대상물의 손익과 헤지 수단인 派生金融商品의 損益을 동일한 會計期間에 인식하는 회계를 말한다.

헤지 會計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헤지 대상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原價基準, 低價基準, 時價基準 등으로 이루어지고, 헤지 수단이 되는 파생금융상품을 決濟基準 또는 時價基準으로 평가될 경우 양자간의 손익 인식 기준이 상이함으로써 각기 다른 회계기간에 손익이 인식되므로 兩 損益을 동일한 期間에 일치시켜 손익인식의 시점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3) 헤지 適格 要件

헤지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헤지목적인지 순수매매목적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

의도를 구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헤지 會計를 적용하기 위한 基準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헤지 會計의 適用 要件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고 각국마다 상이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IASC가 제안한 헤지회계 적용 요건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ASC는 E48에서 금융상품이 헤지회계로 처리될 요건으로 첫째, 헤지 대상물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기업이 價格 變動에 의한 損失危險에 노출되어 있고 둘째, 金融商品이 헤지수단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셋째, 헤지 수단인 金融商品이 헤지로서 유효하기 위하여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헤지 대상물의 공정가치의 반대방향으로의 變動이 높은 相關關係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美國에서는 SFAS(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제80호에서 선물거래를 헤지회계 처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先物去來 대상물이 해당 기업을 價格 또는 利率 危險에 노출되도록 하고 둘째, 선물이 헤지 목적이라고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美國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헤지회계 적용대상을 선물에 국한하지 않고 派生金融商品까지 擴大하고 헤지 적용요건을 좀더 具體化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¹⁾. 특히 헤지 상품과 헤지 대상물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첨부하여 헤지 회계처리 방법 중 시가 헤지 회계방법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4) 헤지會計의 處理方法

헤지會計는 헤지 대상물의 손익 인식시기와 헤지 수단의 손익 인식 시기를 맞추는 회계 처리로서 移延헤지會計法(deferral hedge accounting)과 時價헤지會計法(mark-to-market hedge accounting)이 있다.

11) 자세한 내용은 제IV장 제3절 참조.

가) 移延헤지會計法

移延헤지會計法이란 헤지 대상물과 헤지상품에 대한 損益의 認識을 관련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이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헤지 대상물의 평가 방법이 原價法인 경우 주로 활용되며, 헤지 상품의 市場價値變動으로 인한 손익을 헤지 대상물의 손익이 인식될 때까지 이연하게 된다.

이연헤지회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헤지 상품과 헤지 대상물의 損益 認識을 期間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헤지 상품에 대해 인식한 손익에서 헤지 대상물에 대해 인식한 손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損益 移延方法 또는 帳簿價修整方法으로 처리하게 된다. 帳簿價修整方法은 그 초과액을 헤지 대상물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는 방법이고, 損益移延方法은 그 초과액을 별도의 자산 또는 부채 계정으로 계상하여 이연하는 방법이다. 損益移延方法에서는 헤지상품의 손익을 移延損失(資産) 혹은 移延利益(負債) 計定으로 처리하여 헤지 대상물의 손익인식기간에 이연한다. 한편 帳簿價修整方法에서는 헤지 상품의 손익과 헤지 대상물의 손익이 총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헤지 상품 손익이 헤지 대상물에서 차감적 방법으로 기장되기 때문에 순액만 표시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헤지회계방법으로 移延헤지會計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헤지 손익 기장 방법으로 美國에서는 帳簿價修整方法을, 日本에서는 損益移延方法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移延헤지會計法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이연헤지회계법이 현행의 一般企業會計基準에 부합하여 활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歷史的 原價主義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헤지 상품의 손익을 헤지 대상물의 거래까지 이연하는 회계처리하는 현행 회계기준상의 역사적 원가주의와 일치하고 실무자들에게도 익숙한 방법이다.

나) 時價헤지會計法

時價헤지會計法은 헤지의 구성 요소로 지정된 헤지 대상물 및 헤지 수단 등 모든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발생기간에 모두 損益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派生金融商品의 헤지 회계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헤지 회계처리 방법으로 移延헤지會計法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가능한한 金融商品을 時價로 측정하여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라 헤지회계처리 방법을 時價헤지 會計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時價헤지會計法의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로서는 우선 이 방법이 헤지의 經濟的 實質을 이연 헤지 회계법보다 더 충실히 표현한다는 것이다. 헤지 대상물의 價値 變動과 이를 상쇄시키는 헤지 상품의 價値 變動을 헤지의 본래 의미와 부합하게 충실히 대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가 헤지 회계법에서는 헤지 商品의 價値 變化를 미래 기간으로 이연하지 않고 발생시점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헤지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다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헤지 구성 요소들의 모든 損益이 發生 時點에서 인식되므로 헤지상품의 손익이 헤지 대상물의 손익을 어느만큼 보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헤지 有效性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時價헤지會計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헤지 구성 요소를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客觀的인 基準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헤지회계를 적용할 경우, 헤지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會計上 未實現 損益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같은 항목들이 서로 다른 측정기준(한 쪽은 역사적 원가기준, 다른 한쪽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5) 包括 헤지 수용 여부

헤지會計를 허용할 경우 개별 헤지뿐 아니라 포괄 헤지를 허용할 것인

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個別 헤지란 헤지 상품과 헤지 대상물간에 대응관계가 個別的으로 특정지워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包括 헤지란 헤지 商品이 복수의 대상물을 포괄적으로 헤지 대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개별 헤지의 경우 헤지 수단과 헤지 대상물들의 損益을 個別的으로 관련하여 기간 대응시킬 수 있으나 포괄 헤지의 경우 헤지 상품에서 발생한 損益을 複數의 헤지 대상물에 배분하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포괄 헤지에 대한 헤지 商品 損益의 배분기준으로 헤지 대상물을 原價基準, 時價基準 등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으나 어느 방법을 채택하건 포괄 헤지를 허용한다면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의 整備時 主要 考慮事項

企業會計가 기업의 財務 能力에 대한 客觀的인 情報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合理的인 判斷의 基準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稅務會計는 국가의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納稅義務의 成立과 確定을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와는 다른 원칙하에서 운용되며 각 경제주체의 손익을 인식하는 기준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稅務會計는 權利義務確定主義, 實質課稅原則, 自意計算排除原則, 負擔能力原則, 企業會計의 尊重 및 計算基準明確原則에 따라 이루어진다¹²⁾.

기간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에서 收益은 實現主義에 의하여, 費用은 發生主義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기간손익을 구성하는 세무수익과 세무비용을 權利義務確定主義에 의하여 인식한다. 이 때 권리의무확정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세무수

12) 金光潤(1994), pp. 33~42 참조.

익과 당해 사업연도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세무비용을 인식함에 있어 現金의 授受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 않고, 法律的으로 수입할 權利와 지급할 義務의 確定日을 基準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企業會計의 保守主義 또는 安定性的의 原則을 배제하게 되고 과세연도 말에 기업회계에 의해 확정된 기간손익을 조세목적과 조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수정하여 세무회계의 기간손익을 계산한다.

實質課稅原則은 납세자의 실질적 담세력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課稅所得의 歸屬者를 결정함에 있어서 형식상의 명의보다는 事實上的 享有者를 소득자로 보아 과세하고, 과세소득의 인식과 추정에 있어서도 거래의 외면적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內面的인 經濟的 實質에 따라 판단한다는 세법적 원칙이다.

自意計算排除原則이란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자간의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유지하기 위해 個別納稅者의 과도한 主觀的 判斷에 따라 자의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원칙이다. 이를 위하여 세무회계 처리에 있어 會計處理基準의 繼續的 適用과 同一 事業年度에서 一貫性 있는 會計處理를 요구하게 된다.

負擔能力原則은 과세소득의 개념구성이나 그 계산에 있어서 租稅負擔能力 내지 支給能力을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所得의 發生原因이나 實態 및 그 性格 등을 고려하여 租稅의 負擔能力을 배려한다는 원칙으로 조세 지급 능력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세무회계는 課稅所得의 조기 확보는 물론 課稅衡平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期間計算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나, 장기적 입장에서 稅源保護를 위해 期間計算을 초월하여 부담능력을 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결손금에 대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거나, 채무면제익이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 규정 등은 기간계산과는 별도로 기업 유지 능력을 보완하면서 조세 부담 능력을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세무회계가 비록 法的 會計로서 強制性を 지녔다고 하나 기본적으로는 기업회계제도라는 사회적 제도에 의존하면서 企業會計의 自主性 및 獨立性を 유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세무회계에서는 이를 企業自主計算原則이라 부른다. 즉,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會計原則에 의하여 企業 利益을 계산하며, 세무회계는 이러한 기업이익을 기초로 稅務調整을 가하여 課稅所得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計算基準明確原則은 조세법률주의의 실질 내용인 課稅要件의 明確主義와 상호보완적으로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納稅者의 便宜를 도모하는 한편, 稅務行政上의 效率性を 배려하여 가급적 明確性과 簡便性を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계산편의와 세무행정상의 조사결정의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劃一的 計算基準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요청이다. 비록 세무회계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각각의 사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원칙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국의 과세제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派生金融商品의 導入에 따라 각 원칙간의 矛盾과 不一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생금융상품 대부분은 滿期日이 되어야만 계약에 따른 權利와 義務가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만기일까지 이연하여 과세목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實質課稅原則과는 다른 조세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스왑의 경우와 같이 非對稱의 지급흐름이 교환되는 경우 과세연도 말에 양자에게 서로 다른 非對稱의 租稅處理를 할 가능성이 커서 公平課稅原則에 어긋나는 조세처리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租稅處理規程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과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損益認識의 시기, 인식된 損益의 性格과 源泉에 따른 課稅方法을 整備하는 것으로 귀착된다¹³⁾. 이에 대해 아직까지 國家間에 이루어진 合意가 없을 뿐만 아니라, 一國內

에서도 派生金融商品別로 서로 다른 租稅處理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각 租稅處理規程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가. 損益의 認識時期

派生金融商品 去來로 인해 발생한 損益을 租稅目的으로 언제 認識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손익 인식 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로는 現金基準(cash basis), 決濟基準(payment basis), 發生基準(accruals basis), 時價基準(mark-to-market principle) 등을 들 수 있다.

現金基準에 따른 課稅制度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現金의 수취가 일어나면 收益으로, 現金의 支給이 이루어지면 費用으로 계상하여 이를 당해 사건이 발생한 期間 損益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決濟基準은 파생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이연하여 契約이 종료되어 決濟가 일어난 時點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반대매매를 통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손익을 인식한다.

많은 국가들이 現金基準 또는 決濟基準을 이용하여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손익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現金基準과 決濟基準이 이미 세무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이어서, 세무처리 전반에 걸쳐 一貫된 方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現金의 受取와 支給을 과세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損益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고려하여야 하는 派生金融商品 公正價値의 評價, 期間損益의 再計算 등과 같은 번거로운 과정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기준 또는 결제기준으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처

13) OECD(1994) 참조.

리하는 경우 파생금융상품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租稅移延 또는 租稅回避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公平課稅原則에 어긋나는 조세처리를 할 수 있다.

派生金融商品의 課稅目的으로 現金基準을 사용하는 것은 스왑과 같이 反對給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만기가 5년인 利子率스왑에 참여하고 있는 거래의 일방이 거래의 개시와 함께 일정액을 수취하고 거래기간에 걸쳐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受取한 金額에 대하여는 모두 課稅하고, 거래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反對의 支給에 대하여는 損金控除를 하지 않게 되어 公平課稅原則에 어긋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보면, 처음의 支給에 대하여는 控除를 인정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받는 시점에서 과세하므로 기업은 契約期間에 걸쳐 수년간 세금을 이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르는 支給과 受取가 同一 課稅年度 內에 모두 이루어질 때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파생금융상품의 과세기준으로 決濟基準을 사용하는 것은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을 결제시점에서 모두 인식하게 되므로 現金基準을 사용할 때와 같은 非對稱的 租稅處理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과세가 계속 이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同一 條件의 再契約을 契約의 延長으로 보아 再契約이 끝나는 時點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경우 파생금융상품 거래 참여자들이 再契約을 통하여 계속 조세를 이연할 수 있고 자신이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反對賣買를 통하여 損益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發生基準에 따른 課稅制度는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派生金融商品의 去來期間에 걸쳐 配分하여 利益을 課稅하거나 損失을 控除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두 해의 과세연도에 걸쳐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거래에 따른 收益과 費用을 契約期間에 比例하여 두 과세연도에 귀속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財務會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派生金融商品 契約의 損

益을 契約期間에 따라 期間配分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발생기준에 따른 과세처리는 權利義務確定主義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때에 과세한다는 일반과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損益의 期間配分을 위해 매 과세연도마다 복잡한 損益調整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課稅節次가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5년 만기의 先渡契約을 체결하고 契約의 終了時點에서 現金을 一括支給함으로써 契約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契約이 체결된 課稅年度부터 5년에 걸쳐 分配된 損益에 대하여 租稅處理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契約이 진행되는 도중 3년만에 反對賣買를 통해 契約을 종료하였다면 이전 두 해에 대하여 다시 損益을 期間配分하여 세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옵션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 損益을 期間配分한다는 것 자체가 論理的 矛盾을 가지게 된다.

時價基準에 따른 경우에는 課稅年度 末 또는 契約終了時點에 파생금융상품을 時價로 평가하여 손익을 측정하게 된다. 즉, 派生金融商品을 課稅年度 末에 매도하고 즉각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발생한 損益을 그날에 실현한 손익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契約 체결시의 價値와 會計年度 末의 市場價値와 差異를 損益으로 인식하여 과세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滿期가 도달했거나 反對賣買로 파생금융계약이 종료하였을 때의 손익은 前 會計年度 末의 市場價値와 實現된 價値 사이의 차이를 근거로 계산된다.

時價基準에 따라 조세처리를 하는 경우 非對稱的 課稅로 인한 문제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期間配分에 따른 稅額調整을 수행하여야 할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매 과세연도 말에 時價에 따라 세액을 평가함으로써 再契約 등을 통해 租稅를 移延하거나 回避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가기준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派生金融商品의 市場價値

(公正價値)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客觀的 公正價値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時價主義를 채택하는 경우 未實現 利益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어, 일반과세원칙에 反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욱이 현금기준 또는 결제기준을 택하는 경우에 비하여 시가주의 또는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經濟的 利益만을 課稅하도록 損失을 계산하는 데에 더 많은 융통성을 필요로 하게 되어 과세제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각국마다 과세목적으로 派生金融商品 去來 損益의 인식시기를 결정하는 데 서로 다른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先物去來의 경우 日本, 濠洲 등에서는 과세 손익 산출에 決濟基準을 적용하는 반면, 美國에서는 時價基準을 적용한다. 그리고 獨逸에서는 先物去來益은 決濟主義를, 損失은 時價主義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保守的 會計原則을 준수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파생금융상품의 손익인식에 대하여 자국의 一般的 原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을 모든 派生金融商品에 同一하게 적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른 현금 흐름이 상품별로 매우 다르고, 去來目的도 달라 각각의 經濟的 實質에 맞는 課稅를 위해서는 다양한 변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¹⁴⁾.

14) 자세한 내용은 제 V장 제1절 참조.

나. 損益의 性格

資本損益과 經常損益에 대하여 課稅上의 差異¹⁵⁾를 두고 있는 경우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이 자본이득인지 경상이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基準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손익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대상이 되는 基礎金融資產의 性格,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目的 및 去來의 主體 등에 따라 구분된다.

손익의 性格을 구분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기초금융상품의 性格이다. 손익의 性格을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純益 項目을 모두 經常利益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차대조표상의 資本的 項目을 헤지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헤지대상물의 손익처리와 헤지상품의 손익처리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영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자본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 헤지대상물과 헤지상품을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하기 위해 헤지대상물의 性格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손익을 資本損益 또는 經常損益으로 구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헤지대상물의 價値變動과 헤지商品의 價値變化 사이에 밀접한 相關關係가 존재해야만

15) 가장 일반적인 과세상의 차이는 經商所得과 資本所得의 세율을 달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1981년 이전의 美國 稅制를 들 수 있다. 이 과세제도는 경상소득 항목으로 분류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손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은 단기자본소득과 장기자본소득으로 구분하여 短期資本所得에는 중과한 반면 長期資本所得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최근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資本移動의 彈力性을 고려하여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경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orensen(1994) 참조).

세율상의 차이 이외에도 경상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손금공제의 범위에 차별을 두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과세제도를 들 수 있는데, 자본소득 항목으로 분류되는 파생금융상품의 손실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 V 장 참조.

이러한 조세처리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 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자산 또는 부채를 개별적으로 헤지할 수 있지만 市場 變動性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자산 또는 부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包括헤지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헤지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초상품의 성격 이외에도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主體 또한 損益의 性格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상장된 去來所의 會員資格을 가지고 있는 證券會社가 고객의 매매요청에 대비하거나 헤지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는 증권회사의 자연스러운 營業活動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손익은 經常損益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證券會社가 投機目的 또는 賣買目的으로 자기계정을 통해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경상적인 요소로 처리하기보다는 資本投資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손익의 성격을 구분짓는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目的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독립적인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純粹賣買目的의 去來에 따른 損益을 資本損益으로 처리하고 있다. 헤지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각국의 처리방법이 다른데, 대표적인 예로서 美國의 경우에는 基礎商品의 性格에 따라, 英國의 경우에는 去來主體에 따라 損益의 性格을 구분하고 있다.

다. 損益의 源泉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르는 損益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課稅制度上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損益의 源泉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국내에 固定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派生金融商品 去來로 인한 損益에 대해 資本流出入稅를 과세하지 않

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현금의 유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損益 全體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派生商品去來의 經濟的 實體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純流出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IV. 主要國의 派生金融商品 會計 · 公示制度

本章에서는 各國의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會計 · 公示制度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示唆點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會計 · 公示制度의 整備에 대하여 여타국에 비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美國의 會計 · 公示基準은 國際基準으로 설정되어 여타 국가들이 회계기준을 설정하는 데 준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美國의 會計 · 公示制度의 發展過程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改善方案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1. 派生金融商品의 會計 · 公示에 대한 主要國의 對應¹⁾

각국의 金融機關 監督當局이나, 證券去來 監督機構 및 會計基準 設定 機構는 派生金融商品 시장 참가자의 財務狀況과 危險을 公示하도록 유도하여 市場의 透明性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會計 · 公示 處理 指針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및 싱가포르 등이며, 그 외의 국가들은 따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美國이나 英國의 制度를 援用하고 있다.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회계 · 公示 기준은 각국의 經濟的 狀況과 法的 環境에 따라 각기 다르다. 英國의 경우에는 判例法에 의해 생성되는 原則들을 成文法에 반영하는 형태로 기준이 개정되어 가고 있으며, 아직 國家會計基準은 마련

1) OECD(1991)를 참조.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美國의 會計基準을 기본으로 하여 자국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日本의 경우에는 一般會計原則에 부합되도록 保守的 會計原則을 고수하고 있다.

먼저 각국의 金融機關 監督當局이 취한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美國의 FRB(Federal Reserve Board)는 銀行의 簿外去來에 대한 내부적 조절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1979년부터 은행이 자신의 簿外去來에 대한 報告書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1984년부터는 簿外去來의 具體的 情報(일반적으로는 去來量)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연계된 대규모의 損失 事件이 빈번히 발생하자 미국 내에서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會計·公示制度를 재정비하는 등 管理·監督制度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FRB는 복잡하고 다양한 危險을 내포한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管理·監督 強化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러한 監督 強化가 金融革新을 阻害해서는 안되고, 기술적 상품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基準을 정하여 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去來 內譯에 대한 會計·公示基準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Commission de Contrôle des Banques는 신용기관 스스로 그들이 부담하는 危險을 內部的으로 管理·監視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同 委員會는 新金融商品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각 금융기관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거래에 따르는 危險의 認識, 去來의 最終 收益에 대한 分析 및 實時間 內部 監視 등의 體系를 구축하

2) FRB, FDIC and OCC(1994)를 참조.

도록 하고 있다. 1986년에 금융감독당국은 金融先物 및 條件附 去來를 모두 포함하는 場外去來에 대한 特別基準을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도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情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同 委員會는 上場 企業의 內部的 資料處理 및 分析 指針을 마련하였으며, 主주 및 일반 證 市 參與자를 보호하기 위해 企業의 派生金融商品 利用 現況과 그에 따르는 損益에 대한 公示指針을 마련하였다.

國際金融監督機構에서도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公示 및 監督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은 1988년에 適正資本要求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면서 簿外 去來 項目의 信用危險을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³⁾. 최근 금리, 환율, 주가, 일반 상품가격 등 主要 價格變數의 變動性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資產 및 負債의 市場危險이 증대하게 되자 1993년에 同 委員會는 金融機關들에게 信用危險뿐 아니라 市場危險을 고려하여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露出危險을 算定 및 報告하는 規制案을 제안하였다. 또한 同 委員會는 1995년에 金融機關의 새로운 資本適正性 判斷基準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별 은행들이 자신의 내부 통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內部 危險管理 模型을 의무적인 적정 자본금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金融機關의 危險露出狀況을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IOSCO(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은 1995년 5월에 世界 派生金融商品 리스크 管理對策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⁴⁾. 이들은 은행과 증권회사, 일반 기업들의 派生金融商品 去來 內容을 本國의

3)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1988)을 참조.

4) IOSCO(1995) 참조.

金融當局에 정기적으로 報告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派生金融商品 리스크 관리대책에 합의하였다. 이 대책은 派生金融商品 去來業者들에게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한 信用리스크, 市場리스크, 收益 등 세 분야를 각국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의 金融監督機關이 국내 거래업자 외에 국제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 去來業者들로부터도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은 派生金融商品의 去來內容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와 정보를 입수,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派生金融商品 去來 實態를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 이 대책의 근본 목적이다.

國際金融監督機構뿐 아니라 民間研究團體에서도 會計 · 公示制度의 強化와 國家間 連繫를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Group of Thirty (1993)는 파생금융상품을 時價로 평가하고, 거래자가 체결한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規模와 目的, 리스크의 정도 및 會計處理方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회계 · 공시원칙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金融監督當局이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報告書의 제출을 요구하여 金融機關의 簿外去來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은행이 簿外去來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시간에 따라 去來量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金融監督當局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簿外去來에 참여하는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派生金融商品의 會計 · 公示基準을 마련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會計基準委員會도 파생금융상품의 회계 · 공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7년 2월에 캐나다의 회계기준위원회는 金融機關의 簿外去來에 대한 會計基準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同委員會는 1989년 7월에 條件附 契

約과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報告書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簿外去來의 認識範圍, 簿外去來로 인한 損益의 認識問題 및 簿外去來의 公示에 필요한 情報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캐나다 은행은 회계기준 위원회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공식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형 국제은행의 관례를 따라 簿外去來의 去來量, 그에 따르는 危險 및 簿外去來에 적용된 會計方法을 공시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프랑스의 CNC(Conseil National de la Comptabilité)는 派生商品 去來에 따르는 會計·公示上의 問題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1986년 7월에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최초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기준은 派生金融商品의 會計·公示 基準 設定 作業의 구조적인 틀이 되었으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양상이 점차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개별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CNC는 금융기관의 회계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위원회의 위원이 의장이 되는 特別委員會를 설치하였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個別 商品 研究를 착수하였는데 1987년에 利子率 옵션의 會計處理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派生金融商品의 評價, 損益의 認識 등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여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먼저 簿外去來의 會計處理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특별목적 거래에 관한 회계」(Accounting for Special Purpose Transactions, ED42)를 1988년에 발표하였고 1990년에는 이를 확장하여 「자산과 부채의 본질에 관한 회계」(Accounting for the Substance of Assets and Liabilities, ED49)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資產과 負債의 본질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損益의 認識基準을 확장하였다.

은행회계에 대하여는 British Banker's Association이 아일랜드 은행연합과 연계하여 마련한 狀況附 債券에 대한 회계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狀況附 債券 契約과 관련된 利子率, 換率 및 市場價格의 評價方法,

所得認識의 시기와 방법, 財務諸表에 포함되어야 할 情報 등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지침으로는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의 연구보고서인 「신금융상품의 회계」(Accounting for New Financial Instruments)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현재 이용가능한 金融商品들을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企業會計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다.

2. 美國의 會計 · 公示制度

美國의 경우 1970년대부터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국가에 비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一般的 會計原則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요한 거래 유형이 등장할 때마다 FASB 등이 각각에 대한 會計處理基準을 마련하여 왔다.

先物契約에 대한 회계처리는 FASB가 1984년 8월에 공표한 SFA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제80호 「선물계약의 회계처리」에 규정되어 있으며 先物換契約의 會計處理에 대해서는 FASB가 1981년 12월에 공표한 SFAS 제52호 「외화환산」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관련조항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SFAS 제80호에 의거하고 있다. 옵션에 대한 會計基準은 미국에서도 공표되어 있지 않으나 AICPA(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가 1986년 3월에 공표한 「옵션의 회계처리」가 실무상의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별 대응방식은 파생금융상품이 폭발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한계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FASB는 1986년에 금융상품을 이사회 심의 프로젝트(Board Agenda Projects)로 채택하여, 1단계로 금융상품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公示基準을 제정한 후 2단계로 認識 및 測定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단계별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1단계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1990년 3월에 SFAS 제105호 「리스크가 있는 부외금융상품과 신용리스크가 집중된 부외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공시」, 1991년 12월에 SFAS 제107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공시」, 그리고 1994년 10월에 SFAS 제119호 「파생금융상품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관한 공시」가 발표되었다. 2단계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중으로, 基礎金融商品의 認識 및 測定 基準에 대한 문제점을 확정하고 이를 다양한 應用商品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先物契約과 옵션契約에 대한 會計·公示制度를 살펴보고,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會計制度 改善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金融先物去來의 會計處理⁵⁾

1) 一般原則

SFAS 제80호에서 설정한 금융선물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一般原則에 따르면 헤지거래를 제외한 모든 先物契約의 價値變動은 그 변동이 일어난 當該 期間의 損益으로 인식하고, 헤지거래의 경우에는 헤지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여, 그에 따르는 損益을 移延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 헤지對象 項目의 損益과 관련하여 회계 처리한다⁶⁾.

헤지대상항목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이 다른데, 既存 資産 또는 負債에 대한 헤지인 경우에 時勢變動額은 當該 資産 및 負債의 帳簿價額을 수정하여 처리하는 반면, 確定契約에 대한 헤지인 경우에는 當該 契約 實行時까지 이연되어 去來價格에 산입된다. 豫想去來에 대한 헤지(anticipatory hedging)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確定契約에 대한 헤지의 會計處理方法을 준용한다. 時價로 표시되는 項目에 대한 헤지의

5) FASB, SFAS 제80호 참조.

6) 즉, 이연 헤지회계법에 따라 헤지거래를 회계처리한다.

경우에는 先物時勢變動에 의한 損益을 當期の 損益으로 인식된다. 다만 당해 항목의 未實現損益이 貸借對照表上의 資本金 增減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當該 時勢變動額이 資本金으로 계상될 수 있다.

금융선물계약의 회계처리 가능성과 관련하여 SFAS 제80호는 會計處理의 可能性을 부정하고 있다. 즉, 금융선물계약은 未實行契約이며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基礎商品의 法的 所有權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계정과목으로 기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물거래와 관련된 決濟手數料, 仲介手數料 등의 費用은 해당 기업의 선물거래손익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營業損益 또는 營業外損益으로 회계처리한다.

2) 純粹 賣買目的 金融先物去來의 會計處理

투기, 투자 등 純粹 賣買(trading)目的의 金融先物去來는 時價基準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당해 선물계약의 市場價格變動을 週期的(매일 또는 매달)으로 評價하고 그 평가에 따라 발생한 損益은 當期 損益으로 계상한다.

3) 헤지目的 金融先物去來의 會計處理

가) 先物去來의 헤지會計處理 要件

헤지目的의 去來란 기업의 財務的 危險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결하는 거래로 선물거래가 헤지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헤지 지정, 상관관계, 계약실행의 확실성 등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선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업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經營者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先物契約의 價格과 헤지對象 商品의 價格間에 높은 相關關係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相關關係가 존재하여야만 실질적인 헤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先物去來와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할 거래가 실제로 일어날 確率이 상당히 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상당히 추상적인 조건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SFAS 제80호는 선물거래를 헤지회계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先物去來의 對象 商品은 해당기업을 價格 또는 利率 危險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때 危險이란 해당 基礎商品을 거래함으로써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資産 및 負債의 價値 또는 장래에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시장가격변동이나 수익률 변동에 따른 豫想利益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해당 기초상품의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타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 등에 의하여 이미 그 위험이 상쇄되었거나 감소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先物契約이 헤지目的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즉, 헤지를 시작한 날로부터 전 헤지期間에 걸쳐 先物契約의 결과가 헤지對象項目의 價格 · 利率 變動을 상당한 정도로 상쇄할 수 있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現在 保有하고 있는 資産 · 負債 및 確定契約의 헤지

現在 保有하고 있는 資産 · 負債를 헤지하기 위한 先物契約의 市場價値 變動分은 契約 終了時에 헤지대상항목의 帳簿價額을 수정함으로써 이를 인식한다. 선물계약이 確定賣買約定을 헤지하기 위한 것일 경우 선물계약의 시장가치 변동분은 매매약정이 실행될 때 그 去來의 測定價額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헤지 대상인 利率附 金融商品이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어 割引額 또는 割増額으로 계상되는 경우, 이 할인액 또는 할증액은 당해 금융상품의 殘存期間에 걸쳐 收入利率 내지 支給利率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생각된다.

다) 未來의 豫想去來에 대한 헤지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未來의 豫想去來에 대한 헤지를 目的으로 수행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선물거래의 헤지회계처리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의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豫想去來의 特性과 去來條件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하고 둘째, 豫想去來의 發生이 거의 확실시되어야 한다.

헤지로 처리할 先物契約이 豫想去來 實行 以前에 종결된 경우에는 先物契約 價格變動에 따른 손실을 관련 거래가 실행될 때까지 移延하여 去來價格에 포함시킨다. 만약 예상 거래를 헤지하는 데 필요한 양 이상으로 금융선물거래를 수행한 경우, 超過 部分은 헤지거래로 보지 않고 계약에 따르는 손익을 인식하여 當期 損益에 산입한다.

나. 先物換去來의 會計處理問題⁷⁾

1) 一般原則

여타의 금융선물거래와는 달리 선물환거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先物換契約 締結日에 있어서 現物換率과 先物換率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換率差損益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선물환계약 체결 이후 決算日 및 契約 滿期日에 先物換率과 現物換率의 差異로 인하여 발생하는 換率差損益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SFAS 제52호는 다음과 같이 先物換去來의 會計處理方法을 정하고 있다.

첫째, 先物換去來는 일반 상거래와는 독립된 別個의 外貨去來로서 獨立된 計定科目으로 처리한다. 둘째, 헤지목적의 先物換契約과 純粹 賣買목적의 先物換契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헤지목적의 거래는 一般商去來 헤지(forward foreign exchange contracts), 未來 外貨去來約定의 헤지(identifiable foreign currency commitment), 海

7) FASB, SFAS 제52호 참조.

外純投資헤지(hedge of net investment)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순수 매매목적의 선물환거래를 제외한 先物換去來의 경우 先物換 契約 締結 時의 現物換率과 每決算日 現在의 現物換率間의 差異를 損益으로 인식한다.

2) 헤지去來의 會計處理

헤지목적의 선물환거래의 경우, 先物換去來에서 外換差益이 발생하면 헤지對象 去來에서 外換差損이 생기고, 先物換去來에서 外換差損이 발생하면 헤지對象 去來에서 外換差益이 생기는 등 헤지목적의 선물환거래의 경우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이 서로 상계된다. 헤지회계처리는 선물환거래의 목적에 따라 一般商去來 헤지, 未來外貨約定에 대한 헤지, 海外純投資 헤지 등으로 구분되는 데 그 처리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가) 一般商去來 헤지의 會計處理

선물환계약에 명시된 약정환율과 선물환계약 체결일 현재의 현물환율과의 차액인 割引額 또는 割増額은 移延資産 또는 移延負債로 계상하였다가 당해 선물환거래의 계약기간에 걸쳐 定額法으로 이를 상각하여 期間損益으로 인식한다. 先物換去來의 評價損益은 當期損益에 포함시킨다. 결산일 현재 現物換率로 외화표시 자산 또는 부채를 평가한다.

나) 未來外貨約定 헤지의 會計處理

미래 外貨約定에 대한 헤지란 실제적인 상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거래계약을 행한 경우에 未來의 代金決済에 대비하여 맺는 先物換去來를 말한다. 이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물환계약 당시 상거래 계약이 취소 불가능하고 先物換 契約 期間이 대금결제일 또는 그 이후까지 걸쳐 있어야 한다. 둘째, 先物換 契約 金額이 실제 대금결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超過金額은 投機目的의 선물환 거래로 보아 評價損益을 當期에 반영한다. 넷째,

先物換 契約金額의 外貨表示가 거래로 인한 실제 대상 결제외화와 같아야 한다.

이로 인한 손익은 당기에 실현시키지 않고, 商去來日까지 移延하여 商去來 契約의 價値를 조정하는 데 쓰인다. 外換差損益은 移延處理하여 관련된 外貨表示去來의 原價에 포함시킨다. 商去來日 以後의 外換差損益은 當期損益에 포함시킨다.

다) 海外 純投資 헤지의 會計處理

외환차손의 발생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外貨換算調整' 計定으로 移延處理한다. 그러나 實去來日 이후 발생하는 外換差損益은 資本金計定으로 처리한다.

3) 純粹 賣買目的 先物換去來의 會計處理

純粹 賣買目的 先物換去來의 경우, 선물환계약 체결시점에 있어서 先物換契約 未收金과 先物換契約 未支給金 모두 先物換率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換率差損益을 인식하지 않는다.

선물환계약 체결 이후 매결산시에 先物換率과 現物換率의 差異를 當期損益(外貨換算差損益)으로 인식하며, 계약만료시에 있어서 先物換率과 現物換率의 差異를 전액 當期損益(外換借損益)으로 인식한다. 先物換 割增額 또는 割引額은 기록되지 않으며, 상각되지도 않는다.

다. 옵션去來의 會計處理⁸⁾

1) 基本原則

헤지요건을 만족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헤지회계를 적용하고 純粹 賣買目的의 옵션거래로부터 생기는 時價變動額은 日日精算하여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다음의 헤지요건을 만족하는 옵션에 한해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옵션이 헤지 對象物의 危險을 경감하고 둘째, 옵션과 헤지대상항목이 각각의 時價變動에 높은 相關關係가 있으며 셋째, 옵션과 헤지대상항목 각각의 時價間에 명확한 經濟的 聯關性이 있고 넷째, 옵션이 헤지를 위한 거래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利率上限契約 또는 利率下限契約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회계 기준서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한다.

2) 純粹 賣買目的의 去來

純粹 賣買目的의 옵션거래는 계약 체결일, 결산일, 옵션만기일에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우선 계약 체결일에 옵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옵션프리미엄을 資產 計定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負債計定에 時價로 계상하며, 契約金額은 표시하지 않는다. 결산일에는 옵션프리미엄을 평가하여 이의 가격변동을 當期損益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옵션 買入時 자산에 계상된 프리미엄을 대변에 기록하고 實現 損失을 계상하며, 옵션 賣渡時에는 實現利益을 계상한다.

8) AICPA(1986) 참조.

3) 헤지목적의 去來

가) 옵션 買入의 경우

헤지목적의 옵션거래의 경우, 헤지對象項目의 評價方法에 따라 그 회계처리가 다르다. 헤지대상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은 原價法, 低價法, 時價法 등이 있다.

原價法에 따른 경우, 헤지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純粹 賣買目的의 去來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低價法에 따라 평가되는 자산 또는 부채를 헤지한 경우, 옵션프리미엄을 時間價値(time value)와 內在價値(intrinsic value)로 분리하여 옵션의 內在價値는 資産으로 계상하고 時價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변동에 따른 內在價値의 變化分은 헤지대상항목의 帳簿價額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옵션의 時間價値는 先給費用으로 계상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일까지 期間配分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한다. 옵션포지션이 청산되었을 경우, 아직 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시간가치는 當期損益에 포함하여야 한다.

時價法에 따라 평가되는 자산 또는 부채를 헤지한 경우, 純粹賣買目的의 去來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다만 헤지대상 항목을 자기자본으로 처리하는 경우, 구분계산법에 따라 내재가치의 시간 변동액을 자기자본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確定契約 및 豫定去來에 대하여는 옵션프리미엄의 가치를 시간가치와 내재가치로 분리하여 옵션의 內在價値는 기타 자산으로 계상하며 時間價値는 옵션 기간에 걸쳐 상각하거나 헤지 대상 자산의 평가시 이에 반영한다. 옵션계약의 內在價値의 시가변동액은 이연처리하여 헤지 대상 거래 가액에 포함한다. 時間價値의 償却額도 이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예상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옵션포지션이 청산되었을 경우 옵션에 대한 이익(손실)은 관련 거래 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한다.

나) 옵션 賣渡의 경우

옵션프리미엄을 時間價値와 內在價値로 분리하지 않고 전액을 負債로 계상하여 時價로 평가한다. 따라서 時間價値에 대한 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時價變動額은 헤지 對象項目의 帳簿價額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으나 프리미엄 受取額을 限度로 하여 그 이상의 거래는 헤지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

1) SFAS 제80호의 公示基準

美國 FASB는 先物去來를 未實行 約定으로 보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결제기관(또는 중개업자)에 납부한 去來證據金은 대차대조표에 預置金 또는 去來證據金(기타 유동자산)으로 기록한다. 이 증거금 계정은 추가자금을 예치하거나 거래가 완결되었을 때 내지는 未決濟 約定의 日日精算에 의해 거래이익이 이체될 때 증가하고, 예치된 자금의 인출, 완결된 거래 또는 일일정산의 결과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거래수수료 기타 중개수수료의 비용이 借記될 때 감소한다. 開始證據金을 초과하는 부분의 자금은 언제든지 인출·사용이 가능하다.

선물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은 해당기업의 선물거래 손익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營業損益 또는 營業外損益으로 회계처리한다. 금융선물거래는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대차대조표에는 先物去來 證據金(margin)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先物契約에 의해 헤지된 資產·負債, 賣買約定 또는 豫想去來의 內容, 그리고 先物契約의 會計處理方法을 註釋으로 公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派生金融商品 公示基準 強化措置 이후 公示基準

FASB는 기존의 商品別 對應方案이 한계에 다다르자, 과생금융상품

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1단계 결과로서 派生金融商品의 公示를 강화하는 새로운 회계기준들을 발표하였다.

SFAS 제105호(1990년 3월)에서는 信用危險 또는 市場危險에 따라 발생하는 會計上의 損失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모든 金融商品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情報을 公示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이 있는 簿外金融商品으로 先物契約, 스왑金融契約, 賣渡 옵션 契約, 賣渡 金利上限契約, 또는 金利下限契約, 先物換契約 등을 예시하고 있다.

SFAS 제107호(1991년 12월)에서는 위험을 지닌 簿外去來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105호와는 달리 모든 금융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이들 商品의 公正價値를 추정하여 公示하되 실무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帳簿價額, 利子率, 滿期日 등 推定에 관련된 情報을 公示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의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속출하자, 派生金融商品 關聯情報의 公示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SFAS 제119호(1994년 10월)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회계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는 簿外金融商品에 대하여만 公示를 강제한 제105호와 달리 모든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保有目的, 契約內容 및 公正價値 등의 情報을 公示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파생 금융상품 이외의 金融商品에 대한 公正價値의 公示도 保有目的에 따라 區分 公示하고, 여러 항목의 註釋으로 나누어 公示된 경우 이를 요약하는 註釋을 公示하도록 의무화하였다.

3. 最近 美國의 派生金融商品 會計制度 改善方案

FASB는 公示에 대한 1단계 프로젝트가 완료되자, 이를 바탕으로 金融商品의 認識 및 測定에 관한 2단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중이나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폭발적 증가에 비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包括的 會計基準의 설정 작업은 상당히 더디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미국의 회계기준은 1981년에 SFAS 제52호와 1984년에 SFAS 제80호가 발표된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確定的 會計處理基準에 대한 공식적 견해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계의 요구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제도 특히, 헤지會計에 대한 최종 방안이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방안은 1996년 말 내지는 1997년도 상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하에서는 미국 FASB가 1996년 1월에 제안한 「파생상품 및 헤지 회계에 대한 회계기준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⁹⁾.

가. 適用對象 派生金融商品의 範圍

제시된 회계 기준은 投資者뿐만 아니라 派生商品 發行者的 회계 처리 문제를 다루며, 모든 派生金融商品 및 現物商品과 派生商品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混成商品(hybrid instruments)에 적용된다. 派生金融商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派生金融商品은 발생 시의 계약 조건 또는 특정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소유자가 金融商品, 一般商品, 價格指數 등의 價格變化 또는

9) FASB(1996)를 참조. 이 자료를 추천하여 주신 익명의 본 보고서 심사위원회 감사드립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 변화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할 능력을 가지지만, 基礎商品을 보유하거나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金融商品을 말한다. 기초 상품을 소유하거나 인도할 의무를 지는 계약은 基礎商品이 派生商品이거나, 기초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損益을 純現金決濟할 수 있는 계약이거나, 反對賣買를 통해 純損益만을 現金決濟할 市場機構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파생상품으로 본다.

SFAS 제60호 「보험회사의 회계 및 보고」(Accounting and Reporting by Insurance Enterprises), 제97호 「보험회사의 장기 계약 및 투자 판매로 인한 손익에 대한 회계 및 보고」(Accounting and Reporting by Insurance Enterprises for Certain Long-Duration Contracts and for Realized Gains and Losses from the Sale of Investments) 및 제113호 「단기 계약 및 장기 계약의 재보험에 대한 회계 및 보고」(Accounting and Reporting for Reinsurance of Short-Duration and Long-Duration Contracts)에 의해 처리되는 保險契約은 派生金融商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先物, 先渡, 스왑 및 옵션은 反對賣買를 통해 純現金決濟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派生商品으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負債關聯契約들은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계약 소유자가 대출자에게 負債를 지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派生商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金融支給保證은 계약 불이행시 보증의 제공자가 基礎商品(부실채권)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派生商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파생상품으로 간주되는 混成商品은 額面利子 또는 元金償還額이 基礎商品에 대한 直接投資로부터 얻는 收益과 차이가 나는 상품들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은 合成商品에 내재된 派生商品的 要素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갖는 경우 이 混成商品을 파생상품에 포함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나. 派生金融商品의 認識과 評價

모든 파생금융상품은 公正價値(fair value)로 평가되어야 하며 資產 또는 負債로서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派生商品 去來損益은 去來 目的에 따라 다르게 회계 처리된다.

다. 保有資產, 負債 및 確定契約에 대한 헤지

1) 損益의 認識

기업은 헤지對象物과 헤지比重을 명시하여야 한다. 派生商品의 價値 變化와 헤지 對象物의 價値 變化는 모두 時價헤지會計(mark-to-market hedge accounting)에 따라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過多(過少) 헤지의 結果가 損益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2) 헤지의 要件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保有 資產, 負債 및 確定契約에 대한 헤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i) 헤지상품은 관련된 危險管理政策에 비추어 일관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ii) 헤지 意圖가 豫測可能하고 公式的으로 文書化되어야 한다.
- iii) 헤지 商品과 헤지 對象物의 價値를 公正價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iv) 거래 개시 이후 계속적으로 派生商品의 公正價値가 헤지 對象物의 公正 價値 變化를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 v) 헤지 대상물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價格變化 危險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 vi) 헤지 대상물은 單一商品이거나 類似(similar) 商品의 포트폴리오이어야 한다.

- vii) 매장되어 있는 原油와 天然가스, 未採掘 天然鑛物, 재배중인 農產品, 無形 資產 및 이와 유사한 항목은 헤지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일정한 미래 豫想 去來는 헤지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또한 保險契約과 관련된 負債는 헤지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viii) SFAS 제115호 「부채 및 자본 증권에의 투자에 대한 회계」(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s in Debt and Equity Securities)에 따라 滿期까지 保有하는 것으로 會計處理되는 證券는 헤지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3) 헤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헤지 對象物 損益의 處理

헤지를 시작할 때, 헤지 對象物의 헤지 部分은 公正 價値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包括的 利益(comprehensive income)¹⁰⁾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겠다.

4) 베이시스 差異가 있는 헤지 手段의 사용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헤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基礎商品이 헤지 對象物과 다른 交叉 헤지(cross-hedging)는 제한되지 않는다.

5) 헤지 手段으로서 옵션의 사용

옵션의 賣渡는 既存 資產, 負債 및 確定契約의 헤지로 보지 않는다. 買入옵션은 헤지 수단으로 인정되며, 그 가치는 時間價値와 內在價値를 구

10) 미국 SFAS 제3호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포괄적 이익이란 '일정 기간에 소유주와의 관계가 아닌 거래, 기타 사상 및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순자산의 변화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지분의 변화 중 소유주에 의한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제외한 부분'을 뜻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포괄적 이익의 한 구성부분에 불과하고, 포괄적 이익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예컨대 현재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 손익수정손익도 포괄적 이익에 포함된다.

분하지 않고 市場價値로 평가하여야 한다.

독립적으로 거래되었거나 다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포함된 옵션 거래의 결합은 거래를 개시할 때 또는 계약기간 동안에 현금 등의 수단으로 순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경우에 옵션의 純賣渡로 간주한다. 서로 다른 두 지수에 대한 옵션의 매도와 매입의 결합은 옵션 매도로 처리한다.

6) 分離會計處理

단일 상품에 내포한 특정 위험, 複合商品(compound instrument)을 구성하는 부분 중 분리 가능하지 않은 부분, 混成商品을 구성하는 派生商品과 現金商品 부분에 대하여 分離會計處理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豫想去來에 대한 헤지

1) 損益의 認識

헤지 수단으로 사용된 派生金融商品의 公正價値의 變化는 包括的 利益의 일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 기간에 가서 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헤지의 要件

예상 거래에 대한 헤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i) 예상거래의 헤지는 관련된 危險管理政策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 ii) 헤지 의도가 豫測可能하고 공식적으로 文書化되어야 한다.
- iii) 예상되는 거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즉, 예상 거래의 성격에 따라 去來額, 去來量 또는 去來量과 價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iv) 예상거래는 發生 可能性이 높아야 한다.
- v) 예상거래는 기존의 企業 活動의 一部이어야 한다.

- vi) 거래 시작 이후 그리고 계속적으로, 派生商品의 價値變化가 豫想去來의 價値變化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 vii) 예상거래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긴 滿期를 갖는 派生商品을 사용하여야 한다.
- viii) 헤지되는 부분은 보고하는 기업에 속하지 않은 제3자와의 거래에 포함된 外部事件이어야 한다. 關係企業과의 豫想去來는 헤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ix) 예상되는 거래는 現金흐름 變化의 危險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 x) 예상되는 거래는 보고되는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價格變動危險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3) 헤지 會計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豫想去來에 대한 헤지는 더이상 헤지 회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기존에 발생한 손익은 처음에 명시한 기간까지 이연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익은 包括的 利益으로 처리하여 이연하지 않는다.

- i) 派生商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즉, 派生商品의 움직임 또는 豫想去來의 時期와 條件에 대한 豫想의 變化로 인해 派生商品의 현금 흐름이 더 이상 예상 거래의 현금 흐름의 변화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ii) 派生商品이 賣却되거나 決濟된 경우
- iii) 派生商品이 豫想去來의 헤지 商品으로서 지정 해지된 경우
- iv) 헤지의 대상인 豫想去來가 기대한 것보다 일찍 발생하거나 지정한 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
- v) 헤지의 대상인 豫想去來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헤지 手段으로 옵션을 賣渡하는 경우

옵션 賣渡는 豫想去來에 대한 헤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其他 派生商品

純粹賣買目的으로 거래하는 파생상품, 헤지 目的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 다른 派生商品의 危險을 헤지를 위해 거래하는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모든 其他 派生商品의 경우, 時價로 평가하며 이에 따르는 損益은 當期損益으로 인식한다.

바. 헤지와 연관된 外貨問題

1) 外貨 表示 確定契約의 헤지

確定契約의 價値變化는 헤지 상품의 가치 변화에 따라 상쇄되는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分離會計處理하지 않는다. 공정 가치 변화의 모든 부분은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즉, 確定契約의 公正價値는 外貨市場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시장에서의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헤지된 外貨契約에 따라 취득한 資產은 취득일에 公正價値로 기록하여야 한다.

2) 純投資의 헤지 및 母企業의 海外 子會社의 危險 露出에 대한 헤지

기업이 海外 純投資를 헤지하지 못하도록 SFAS 제52호 「외화 환산」(Foreign Currency Translation)을 수정한다. 또한 기업은 특정한 地域 通貨로 표시된 子會社의 資產 및 負債를 母企業의 헤지 포지션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3) 豫想 去來에 대한 헤지

外換關聯 派生金融商品은 동일한 그룹 내 연결 대상 기업간의 거래를 제외한 豫想外貨去來를 헤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4) 現金 商品

換露出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外貨表示 現金商品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재무회계 처리기준 제52호를 개정한다.

5) 企業間 外貨 去來

기업은 外換換算調整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企業間 換去來에 따른 損益을 계속 보고하여야 한다.

사. 其他 決定事項

1) 公正價値 評價指針

SFAS 제107호 「금융 상품 공정가치의 공시」(Disclosure about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는 金融資産의 公正價値를 결정하는 기초를 제공하며 評價指針은 변화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大量證券의 公正價値를 결정할 때 大量集團要因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즉,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 거래 단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평가함으로써), 브로커-딜러와 다른 산업간의 차이점들이 조정되었다.

2) 헤지 手段으로 現金商品의 使用

기업들이 現金商品을 헤지 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3) 公示

SFAS 제105호 「부의 거래 위험과 신용 위험이 집중된 금융상품의 정보 공시」(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with Off-Balance-Sheet Risk and Financial Instruments with Concentrations of Credit Risk)와 제119호 「파생금융상품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공시」(Disclosure about Derivative Finan-

cial Instruments and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의 公示規程이 同 基準案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다만, 信用危險의 集中과 관련된 제105호의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07호는 동 기준안에 알맞도록 예시 규정만을 수정하여 유지한다.

아. 提案된 會計基準案의 主要 特徵

최근에 FASB가 제안한 파생상품 및 헤지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의 특징은 우선 派生金融商品을 정의하고 이들 거래에 대한 包括的인 會計處理基準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 동안 선물환거래, 이자율 관련 선물거래 등 상품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번 기준안에서는 대상 파생금융상품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회계처리 및 공시의 기본 원칙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모든 派生金融商品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대차대조표에 資產 또는 負債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향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시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派生商品去來의 會計處理可能性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과거 헤지요건이 명료하지 않아 헤지회계 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헤지 판정을 위한 적격요건을 객관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손익을 時價評價 헤지會計로 인식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헤지적격요건으로 헤지수단이 되는 派生金融商品뿐만 아니라 헤지對象物의 價値를 公正價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헤지 회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헤지商品과 헤지對象物의 공정가치 변동을 평가하여 이를 그 변동이 일어난 당해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함으로써 헤지활동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반영하면서 기간 이익을 충실히 계산하는 時價評價 헤지會計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헤지會計

의 方法과 適用 要件이었다. 즉 派生商品의 損益을 인식함에 있어서, 일부 대차대조표 항목은 時價로 평가되지만 다른 일부 항목들은 原價로 평가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는 派生商品과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항목에 대한 헤지를 會計處理할 경우 對象物의 損益이 인식된 회계기간과는 다른 회계기간에 헤지에서 발생한 손익이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지對象商品의 損益이 인식되는 시점까지 헤지商品의 損益을 이연할 수 있는 헤지회계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안된 헤지회계기준안에 의하면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한 資産, 負債 및 確定約定만이 헤지對象物이 될 수 있고, 또한 파생상품의 거래 개시 이후 派生商品의 價値가 헤지對象物의 公正價値 變化를 계속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헤지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헤지상품의 손익을 이연할 필요가 없고 헤지對象物과 동시에 공정 가치로 評價하여 해당 會計期間의 損益으로 인식하는 時價 評價 헤지會計의 導入을 제시하고 있다.

V. 主要國의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

현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一般的 課稅制度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각 국가별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OECD(1994)에 따르면 派生金融商品 등 新金融商品에 대한 각국의 과세제도가 매우 다양하여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에 대한 國際的 調和를 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대부분의 新金融商品이 '소득·자본에 관한 OECD 표준조세모델' 상의 각 所得條項에 꼭 들어맞는 것이 없어 결국 新金融商品의 과세는 其他所得 條項에 의해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존에 각국이 체결한 租稅條約 중에는 其他所得 條項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國內稅法條項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二重課稅 또는 不公平 課稅 등 국제조세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으며, 국제금융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國際的 調和를 염두에 두고 課稅條項과 租稅條約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각국 제도의 근간이 되는 미국, 영국, 일본의 派生金融商品 關聯 課稅制度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국내 과세제도 정비와 관련된 示唆點을 도출하고자 한다.

1.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各國의 課稅制度¹⁾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課稅制度는 國家間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商品別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派生金融商品이 도입된 배경에 따라 經濟的 役割이 다르고 이에 맞추어 課稅制度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各國의 經濟狀況 및 租稅環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派生金融商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國家 課稅制度나 國際的인 課稅基準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경우 派生金融商品의 經濟的 役割에 반하는 조세처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同一商品에 대해서는 國際的 課稅基準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몇몇 국제기구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같은 상품에 대해 국가별로 차이를 둘 경우 非對稱的 租稅處理로 말미암아 租稅回避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과세제도를 정비하게 될 경우에도 상품에 따라 특성에 맞는 제도를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主要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各國의 課稅制度上的 差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利率率 스왑

利率率 스왑에 대한 특별한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고, 各國은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利率率 스왑에 대한 課稅上的 特例를 두고 있다. 美國의 경우 納稅者의 機能通貨²⁾(functional currency)

1) 본 절은 OECD(1994)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利子率 스왑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이자율 스왑 등의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發生主義基準을 마련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에는 1989년에 스왑 手數料의 課稅에 대한 지침(Consultative Document)을 발표하고 1991년에는 모든 金融商品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장된 지침을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一般租稅原則에 따라 조세처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및 터키는 財務會計處理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企業慣行(sound business practice)에 따라 조세처리를 하고 있다.

1) 課稅對象

모든 국가가 利子率 스왑에 따라 지급·수취되는 現金흐름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호주, 아일랜드 및 영국 등은 스왑去來의 성격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純粹賣買目的(trading purpose)인지, 純粹賣買外目的(non-trading purpose)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호주는 헤지目的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去來主體에 따라서도 과세방법을 구분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이 수행한 거래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주체가 수행한 거래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 損益의 性格

모든 국가에서 스왑거래로 인한 손익을 經常損益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에는 스왑거래가 실제적인 基礎商品을 대상으로 하

2) 機能通貨란 經濟主體가 주된 經濟活動을 벌이는 經濟圈의 通貨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FASB, SFAS 제52호 참조.

여 수행하였는가에 따라 損益의 性格을 구분하고 있다.

3) 損益 認識의 시기

스왑 손익을 인식하는 데 있어 스왑去來에 따른 現金흐름이 規則的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不規則的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구분하여야만 한다. 스왑거래로 인한 現金의 受取와 支給이 한 課稅年度 내에서 同時에 規則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發生基準을 적용하나 決濟基準을 적용하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어 과세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스왑거래에 따른 現金흐름이 不規則的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거래 쌍방이 동시에 對稱的 現金흐름을 授受하지만 이러한 現金授受가 이루어지는 期間이 不規則的으로 정해지는 경우이다. 반면 거래 쌍방이 同時에 現金흐름을 주고 받지만 양자가 서로 다른 基準으로 現金을 수수하는 경우³⁾에도 不規則的인 現金흐름이 발생한다. 不規則的인 現金흐름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거래 일방은 正規的으로 現金을 지급하지만 상대방은 去來 開始時 또는 去來 終了時에 一時拂로 現金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의 불규칙적인 現金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損益認識 基準을 택하느냐에 따라 거래 쌍방에 대한 조세처리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핀란드, 獨逸,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및 美國 등의 6개국은 불규칙적인 現金흐름을 갖는 스왑거래의 일반적인 손익 인식 기준으로 發生基準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日本 및 스위스는 決濟基準을 일반원칙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실현된 스왑손익에 대하여 과세하되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따른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호주는 스왑거래에 대해 現金主義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손익이 이자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發生基準을 적용한다. 英國의 경우에

3) 이 경우에는 쌍방이 지급하는 現金의 양이 서로 다르게 된다.

는 金融機關 및 딜리에 의한 스왑거래에 대하여는 發生基準을 적용하지만, 其他 去來者에 의한 스왑거래는 資本利得稅 條項에 의해 처리한다.

나. 金融先物

일찍부터 금융선물거래가 발달해 온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영국 및 미국 등은 금융선물에 대한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는 공인된 去來所에서 거래되는 금융선물에 대해 특별한 課稅條項⁴⁾을 두고, 其他 金融先物去來에 대하여는 一般課稅原則에 따라 조세처리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에는 一般 商去來 過程에 따라 부수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先物에 대해 規制條項을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금융선물을 포함한 금융계약에 대해 發生主義 課稅原則을 두고 있다.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는 一般課稅原則에 의거하여 금융선물에 대한 조세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1) 課稅 對象

대부분의 국가에서 營業 目的으로 체결한 金融先物去來로 인한 利益을 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중 노르웨이는 營業外 目的으로 체결된 金融先物去來의 利益까지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營業外 目的으로 체결된 金融先物去來의 利益에 대하여 공인된 去來所에서 거래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先物去來의 損失을 控除 對象으로 취급하는데, 호주와 노르웨이의 경우 非課稅 對象으로 처리된 先物去來의 損失은 控除 對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 Internal Revenue Code의 1256조. 이에 대하여는 제 V 장 제 2 절 참조.

2) 損益의 性格

선물거래 손익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모든 국가가 先物딜러에 대하여는 經常損益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단 美國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56조에 속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先物딜러라 하더라도 헤지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납세자가 資本損益으로 처리하고 있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9개국은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先物去來 損益을 經常損益으로 취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投機 去來者의 경우 經常損益으로 할 것인지 資本損益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단 선택한 후에는 매 과세기간마다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딜러와 資產項目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된 先物契約에 대하여 經常損益으로 취급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資本損益으로 처리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및 미국의 경우에는 先物去來 損失이 資本損失로 취급되는 경우 資本利益에 대하여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및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헤지목적의 先物去來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과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先物去來 損益은 일반적으로 資本損益으로 처리하는 것이 一般原則이나 헤지로 지정된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經常損益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英國은 資產項目에 대한 헤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先物去來 그 자체가 資產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先物去來 損益을 經常損益으로 취급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資本損益으로 처리한다.

3) 損益認識의 시기

선물거래의 손익인식 시기 또한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호주,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은 모든 금융선물거래에 대하여 決濟基

準을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스위스 등은 이익에 대하여는 決濟基準을, 損失에 대하여는 時價基準을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익과 損失 모두에 대하여 時價基準을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는 딜러 및 其他 投資者에 대하여는 時價基準을, 資本計定에 속하는 先物去來의 損益에 대하여는 決濟基準을 적용하고 있다. 英國과 아일랜드는 일반적으로 決濟基準을 적용하나 時價基準에 따라 金融先物契約에 대한 會計處理를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時價基準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는 공인된 去來所에서 거래되는 先物契約에 대하여는 原則적으로 時價基準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256조 계약이라 할지라도 헤지目的으로 인정된 경우이거나 1256조 契約 이외의 先物去來는 決濟基準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時價基準을 적용하고 있으나, 헤지目的의 去來에 대하여는 決濟基準을 적용하고 있다.

다. 株式 옵션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및 미국 등 9개국은 株式 옵션에 적용되는 특별한 조세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去來目的(trading purpose) 이외의 목적으로 체결된 옵션에 대하여만 특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핀란드, 스위스는 주식 옵션을 企業會計處理에 따라 조세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株式 옵션의 租稅處理 方法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접근 방법 중 한 가지를 취하고 있다. 한 가지 접근방법은 옵션을 基礎商品과는 獨立的인 金融契約이라고 보는 입장인 반면, 다른 접근방법을 취할 경우에는 옵션에 대한 課稅方法을 基礎商品인 株式에 대한 課稅와 연관시켜 결정하게 된다.

1) 옵션 所有者에 대한 課稅

가) 옵션을 獨立的인 金融商品으로 處理하는 方法

옵션을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우, 옵션 所有者는 基礎商品인 株式과는 獨立的으로 옵션의 損益을 계산하여야 한다. 우선 保有 옵션을 販賣하거나 反對賣買를 통하여 清算하는 경우 옵션거래로 인한 損益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며, 權利를 행사하지 않고 滿期가 된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純損失로 처리하여 공제하게 된다. 옵션의 權利를 行使한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번째 방법은 基礎商品인 株式의 市場價値와 행사가격의 差異에서 옵션의 購入價格(연말에 가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된 값)을 차감한 값을 損益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의 옵션價値의 變化에 대한 課稅 또는 控除를 인정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옵션 프리미엄과 購入價格에 대한 控除만을 허용하고, 행사가격을 권리행사로 얻은 株式의 購入費用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權利를 행사할 경우에는 옵션 損益에 대한 租稅處理가 基礎資產인 株式과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및 영국 등은 옵션을 獨立的인 金融商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중 덴마크, 프랑스 및 노르웨이는 權利를 행사한 경우 첫번째 방법으로 손익을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손익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스위스는 두번째 방법과 기초자산인 주식과 연계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英國은 資本計定에 속한 옵션에 대하여는 基礎商品인 株式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資產에 속하는 옵션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위스는 옵션의 權利가 行使되었을 때 프리미엄과 購入費用에 대한 控除를 허용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에는 옵션을 購買한 時點에 즉시 프리미엄과 購入費用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 그러나 실제로는 英國의 一般會計 處理 方法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을 옵션의 契約期間에 걸쳐 配分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나) 基礎商品과 連繫하여 處理하는 方法

기초상품과 연계하여 옵션 손익을 처리하는 경우, 옵션의 權利가 행사되었을 때 옵션의 행사가격과 프리미엄 및 購入費用을 모두 더하여 基礎商品인 株式의 購入費用으로 처리하고 있다. 옵션의 權利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滿期에 프리미엄 또는 購入費用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다. 保有 옵션을 販賣하거나 反對賣買를 통하여 清算한 경우에는 이를 옵션 거래의 완성으로 보아 損益을 계산한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및 미국이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옵션에 대한 조세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英國의 경우에는 資本計定에 속한 옵션에 대하여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독립상품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기초상품과 연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달러 이외의 옵션 保有者가 연말에 자신의 未決濟約定의 價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에는 모든 옵션 保有者가 이러한 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옵션의 價値는 時價基準에 의해 조정된다. 이러한 조정에 따라 손익이 발생한 경우 課稅對象이 되는데, 損失을 입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의 限度內에서만 控除가 가능하다.

2) 옵션 發行者에 대한 課稅

가) 옵션을 獨立의인 金融商品으로 處理하는 方法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옵션 발행자는 基礎商品인 株式과는 독립적으로 옵션의 損益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發行者의 所得(income)으로 처리되고, 옵션 保有者가 權利를 행사하지 않고 滿期가 지난 경우에는 發行者의 純利益으로 처리된다. 發

行者가 再買入 또는 反對賣買를 통하여 옵션을 청산한 경우에는 再買入費用 또는 反對賣買費用에 대한 控除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옵션 保有者가 權利를 행사한 경우에는 프리미엄에서 옵션의 市場價値와 행사가격의 差異를 차감하여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방법과 프리미엄에 대하여만 課稅하고 행사가격을 基礎商品인 株式의 販賣價格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市場價値의 變化로 인한 損益에 대하여 課稅 또는 控除를 하게 된다. 두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을 發行한 課稅年度에 프리미엄에 대한 課稅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주, 덴마크,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등은 옵션을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 중 英國은 資產計定에 속하는 옵션의 경우에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其他 國家는 이 방법을 옵션課稅의 一般原則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基礎商品과 連繫하여 處理하는 方法

기초상품과 연계하여 옵션에 대한 조세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옵션 保有者가 權利를 행사하였을 때 옵션 프리미엄을 發行者의 자본손실로 처리하게 되며,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課稅는 각국의 株式讓渡에 대한 課稅條項을 따르게 된다.

옵션 發行者에 대한 課稅를 基礎商品과 연계하여 처리할 때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 옵션 保有者가 權利를 행사하지 않으면 몇 가지 課稅上 問題點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基礎商品인 株式의 거래로 인한 所得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경우 一般 商去來와 관련하여 옵션을 발행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조세법상의 經常所得에 대한 課稅條項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金融機關 등에 의해 발행된 옵션의 경우 항상 一般 商去來와 聯關이 있는 것은 아니다. 商去來와 關聯없이 발행된 옵션의 경우에는 資本利得稅 條項을 적용할 수 있지만, 만약 옵션을 保有者가 株式을

살 수 있는 제한된 權利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기초상품과 연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 權利를 行使하지 않은 옵션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시기를 결정하는 것 또한 불명확하다. 프랑스와 美國의 경우에는 옵션의 滿期가 속한 과세연도에 옵션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옵션 發行時點에 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차후 課稅年度에 옵션 保有者가 權利를 행사한 경우 프리미엄에 대한 稅額을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및 영국은 옵션 發行時點에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고 차후 保有者가 權利를 행사하면 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옵션을 재매입하여 청산한 경우 美國과 프랑스는 販賣時 受取한 프리미엄과 再買入時 지불한 프리미엄을 상계하여 再買入年度에 과세하거나 공제한다. 옵션 發行時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再買入年度에 재매입시 지불한 프리미엄 전체를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3) 달러에 대한 課稅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및 미국 등 8개국은 달러에 대한 課稅上 特例를 두고 있다. 먼저 損益의 性格을 결정하는 데 차이를 두어 이들 국가는 달러가 옵션거래로 얻은 손익을 經常損益으로 처리하고 있다. 經常損益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損失控除에 대한 制限을 받지 않게 되며, 資本損益과는 다른 稅率로 과세된다.

캐나다와 英國의 경우에는 달러에 의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基礎商品인 株式이 資產計定에 속하는 경우 옵션거래 損益을 經常損益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에 美國의 경우에는 달러에 의한 거래라 할지라도 1256條 契約에 대해서는 資本損益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러와 기타 거래자는 損益認識의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이

고 있다. 우선 달러에 대한 조세 처리는 기타 거래자에 대한 처리와 원칙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및 영국의 경우 달러는 옵션 프리미엄이나 再買入費用을 즉시 控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英國 및 美國 등의 경우 달러는 과세연도 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未決濟 約定의 價値를 재조정할 수 있다. 美國의 경우에는 1256조 계약에 대해서만 이러한 價値調整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달러와 기타 거래자 모두 年末에 未決濟 約定의 價値를 再調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 美國의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

美國의 派生金融商品 關聯 稅制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變遷하여 왔다. 1981년 이전에는 IRC(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조세처리가 이루어졌으나, 1981년에 ERTA(Economy Recovery Tax Act)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이후 1986년에 레이건 행정부의 租稅改革措置의 일환으로 크게 수정되어 일부 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 課稅制度의 變遷

1) 1981년 이전

가) 과세규정의 개요

1981년 이전에는 IRC상의 一般課稅原則에 따라 과생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처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派生商品 去來로부터 발생한 損益은 現物의 引受渡, 反對賣買 등을 통하여 거래가 종료된 課稅年度에 이를 인식하여, 實現 損益에 대하여만 조세처리가 이루어졌다.

선물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선물의 保有期間에 따라 長期資本利益 또는 短期資本利益으로 처리되었다. 선물의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短期資本利益으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長期資本利益으로 간주되었는데, 장기자본이익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단기자본이익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5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옵션의 買入 포지션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되었다. 하지만 옵션의 賣渡 포지션으로부터 얻는 손익은 保有期間에 관계없이 短期資本利益으로 처리되었다.

나) 問題點

이와 같이 1981년 이전에는 과세금융상품에 대한 특별한 과세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一般課稅原則에 따른 조세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세금융상품 시장 참여자들은 先物 또는 옵션 去來技法을 이용하여 租稅回避를 도모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된 방법은 滿期日이 같은 派生金融商品에 대하여 買入 포지션과 賣渡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스트래들」(straddle) 戰略이었다. 스트래들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課稅年度末에 두 포지션 중 한쪽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자가 利益이 발생한 포지션은 유지하여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은 채 損失이 발생한 포지션만을 決濟하여 손실을 실현시키면, 利益은 다음 課稅年度로 移延되면서 현재 課稅年度에 損失에 따른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시의 과세제도하에서는 단기자본이득세가 장기자본이득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상황이었어서 이익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용된 전략이었다.

2) 1981년에서 1986년까지

미국 과세당국(Internal Revenue Service)은 派生商品契約에 대한 과세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1977년에 銀先物의 스트래들 契約에 대하여, 1978년에는 財務省 債券 先物에 대하여 과세원칙을 정하였으나, 법원이 스트래들 계약의 損益決定, 損失의 課稅控除 등

에 대한 명백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원칙을 정비하기 위하여 1981년에 의회가 派生商品 去來와 스트래들 去來에 대한 조세조항을 IRC 내에 설치하고, ERTA(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안에 派生商品의 損益認識 基準을 설정하였다.

경제부흥세법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時價評價制度和 60:40 原則의 도입을 들 수 있다. 時價評價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자는 과세연도 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未決濟 約定을 時價로 評價하여 損益을 認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식된 손익은 60:40원칙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保有期間에 관계없이 손익의 60%는 長期損益으로 40%는 短期損益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시가평가법과 60:40 규칙을 따라 과세되는 파생상품은 IRC 1256조에 규정(section 1256 contracts)되어 있는데, 1256조에서 규정한 계약으로는 先物과 非資產型 옵션(선물, 부채 관련상품, 외환 및 주가지수에 대한 옵션)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포함되는 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헤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평가제도와 60對 40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헤지로 간주하지 않은 거래 중 IRC 125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옵션의 손익은 옵션의 基礎資產의 性格에 따라 資本 또는 經常損益으로 구분하고 옵션의 保有期間이 6개월을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長期損益 또는 短期損益으로 분류하였다. 옵션 거래에 따라 수수하는 프리미엄은 옵션 계약이 결제되어 손익이 확정될 때까지 이연하여,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基礎資產의 取得原價 또는 賣却代金에 포함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資本損益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IRC에 그 동안 조세회피 및 이연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스트래들 거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스트래들 거래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한쪽 포지션을 청산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다른 쪽의 포지션에서 나타나는 未實現 利益의 範圍 안에서만 인식하도록 규정하였다.

3) 1986년 이후

1986년 레이건 미국 행정부가 취한 일련의 租稅改革 措置에 따라 파생 금융상품 과세제도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은 長·短期資本利益의 區分 廢止 및 스트래들 去來에 대한 租稅條項 變更이다.

1986년의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서는 個人所得稅 率을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누진성을 완화하여, 이전의 소득세율 11~50%의 14단계 체계에서 11%와 28%의 2단계 체계로 간소화하였다. 또한 장·단기 모든 자본이득을 경상소득과 합산하여 납세자의 소득세율(또는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조세조항이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ERTA상의 장·단기 자본이익 구분 기준이던 60:40 규칙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損金控除의 범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졌는데, 資本損失은 資本利益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損益認識 基準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IRC 1256조에 규정된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損益은 여전히 時價基準에 의해 평가되었다.

스트래들 去來에 대한 조세규정도 변화하여 스트래들 거래로 인하여 한쪽 포지션에서 損失이 실현된 경우 다른 쪽 포지션에서 利益이 실현될 때까지 損失 認識을 移延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IRC 1256조에 규정된 派生金融商品만으로 이루어진 스트래들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는 1256조에 규정된 派生金融商品의 경우 損益을 時價基準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손실과 이익을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인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국세입법상의 identified straddle⁵⁾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래도 스트래들을 구성하는 모든 거래의 始作時點과 終了時點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스트래들 去來 損失移延

5) Identified straddle이란 스트래들을 구성하는 모든 거래를 같은 날 획득한 뒤 다시 모든 거래를 같은 날에 종료하는 스트래들을 의미한다. Identified straddle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트래들 거래를 시작한 날에 납세자가 이 거래를 identified straddle로 기록하여야 한다.

條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그 해결 방안의 모색이 막연해지자 다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1990년 부시 행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하여 31%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한편 장기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이 세율의 적용을 면제하고 28%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부활하였다. 따라서 장·단기 자본이익 구분 기준인 60:40 규칙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36%, 39.6%의 최고 소득세율을 신설하였으며,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특례 조치는 유지하도록 하였다.

나. 商品別 課稅制度

1) 先物

가) 損益認識의 시기

規制先物(regulated futures)의 損益은 時價基準에 따라 인식한다. 여기에서 規制先物이란 去來所에 上場되어 거래되는 先物을 의미한다. 美國의 모든 先物去來所는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先物去來所는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先物商品만을 상장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去來所 市場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先物の 경우 포지션의 가치를 日日精算하여 證據金에 반영하게 되며 손실을 보아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追加證據金を 납부하고, 이익을 보아 증거금이 基本證據金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인출할 수 있다.

시가기준에 따라 납세자는 보유하고 있는 規制先物の 未決濟 約定을 과세연도 말에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마치 미결제 약정을 과세연도 말에 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처럼 모든 約定에 대하여 그 市場價値를 전과세연도 말에 계산한 市場價値와 비교하여 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

계 계산한 손익을 당해연도의 當期損益으로 인식한다.

나) 損益의 性格

납세자가 先物契約을 資本(capital asset)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에 따른 損益은 資本損益으로 분류된다. 資本損益으로 인식되는 경우 손익의 60%는 長期資本損益으로, 나머지 40%는 短期資本損益으로 처리하는데, 개인의 경우 長期資本損益은 최고 28% 특별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長期資本損失은 經常利益에 대해서 공제처리할 수는 없다. 단 換率變動에 따라 발생한 外換先物契約의 損益에 대해 납세자는 이를 資本損益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經常損益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 損益의 源泉

先物契約의 매매로 발생한 利益은 個人財産의 處分으로 보아 賣買者の 居住地에 따라 損益의 源泉을 결정한다. 따라서 非居住者の 利益은 일반적으로 海外所得으로 인식되어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非居住者라 하더라도 이익이 美國 內 固定事業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國內所得으로 인식하여 미국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居住者の 固定事業場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해외에서 적어도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海外所得으로 인식한다.

損失의 源泉을 결정하는 원칙은 불명확한데, 특정한 규제가 없는 한 損失의 源泉은 그것과 가장 경제적 연관이 높은 所得의 源泉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특정한 자산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거래로부터 손실을 입었다면 이의 源泉은 동일한 유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所得의 源泉과 같이 처리된다. 반면 利子支給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금융거래로 인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利子로 처리된다.

라) 헤지去來

선물거래가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결된 것이라면 時價基準에 의한 損益의 評價를 하지 않는다. 이는 時價基準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선물과 헤지 대상물간에 損益認識時機와 損益 性格의 결정에 不一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산, 부채 또는 예상 거래에 대한 헤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先物契約의 價格變動이 헤지對象物의 價格變動危險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고 去來開始日에 헤지목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對象物의 去來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이 經常損益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先渡去來

가) 손익인식의 시기

先導契約의 손익인식 시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헤지나 스트래들의 일부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선도계약의 손익인식 시기는 一般課稅原則에 따라 결정된다. 先導契約을 販賣한 경우에는 對象物의 引導, 現金決濟 또는 契約의 再販賣 등으로 權利義務가 확정된 때에 손익을 인식한다. 반면 先導契約을 購買한 경우에는 現金決濟 또는 再販賣 등으로 계약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손익을 인식하지만 現物을 引導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취득한 資產이 소멸될 때까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에 대한 先導契約 또는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계약 등 일부 선도계약은 시가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또한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연말에 시가평가하여야 한다.

나) 損益의 性格

선도계약으로 인한 損益의 性格은 납세자가 基礎資產을 資本으로 보유하고 있는가(또는 보유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投資

者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도계약은 資本으로 보는 반면 딜러가 보유하고 있는 선도계약을 자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이라 하더라도 헤지目的으로 선도계약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로 인한 손익은 經常損益으로 처리한다.

先物換去來로 인해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換率變動으로 인한 損益은 거래의 다른 결과와 분리하여 經常損益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先物換契約을 資本計定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계약이 스트래들의 일부가 아니라면 납세자는 換率變動으로 인한 損益을 資本損益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 損益의 源泉

선도계약의 利益의 源泉은 일반적으로 基礎資產의 性格에 따라 결정된다. 납세자가 미결제 선도계약을 재고로 보유하는 딜러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居住地에 근거하여 損益의 源泉을 결정한다. 따라서 딜러가 아닌 非居住者가 선도거래로 얻은 손익은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도계약의 損失의 源泉은 선물계약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所得의 源泉과 같이 결정된다.

3) 옵션去來

가) 손익인식의 시기

옵션의 發行者는 옵션 프리미엄을 所得으로 처리하지 않고 옵션의 購買者도 프리미엄에 대한 控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옵션의 매매는 일반적으로 과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옵션의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옵션을 再販賣하거나, 또는 相計 또는 現金決濟를 통해 계약을 終了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滿期를 지날 때 손익을 인식한다. 再販賣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받은 금액과 구매시 지급한 프리미엄의 차이를 이익으로 보며, 相計 또는 現金決濟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시 받은 금액과 구매시 지급한 프리미엄의 차이를 이

익으로 본다. 權利를 行使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구매시 지급한 프리미엄과 관련비용을 손실로 본다.

그러나 옵션 購買者가 權利를 行使하였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옵션 購買者는 구매시 지급한 프리미엄과 관련비용을 옵션의 權利行使로 얻은 資產의 取得原價에 가산한다.

옵션의 發行者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權利를 行使하거나, 발행자가 옵션을 販賣(sale), 指定(assignment), 終了하거나 구매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滿期가 지난 경우에 손익을 인식한다. 구매자가 權利를 行使하였을 경우에는 프리미엄과 行使價格을 합한 금액과 基礎資產의 帳簿價値의 差異를 발행자의 이익으로 본다. 발행자가 옵션을 販賣 또는 指定한 경우에는 발행시 받은 프리미엄과 판매 또는 지정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이익으로 본다. 相計 또는 現金決濟 등으로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발행시 받은 프리미엄에서 종료시 지급한 금액을 뺀 값을 이익으로 본다. 구매자가 權利를 行使하지 않고 滿期가 지난 경우에는 발행시 수취한 프리미엄을 발행자의 이익으로 본다.

그러나 去來所 市場에서 거래되는 非資本型 옵션(nonequity option)과 딜러가 거래하는 資本型 옵션(equity option) 등은 時價基準에 의해 손익을 인식한다. 時價基準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옵션을 보유한 購買者가 옵션 權利를 行使한 경우, 구매시 지급한 프리미엄을 권리행사에 따라 취득한 資產의 購買費用으로 처리하지 않고 損失로 처리한다.

有價證券 딜러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옵션의 價値를 時價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時價基準에 따른 손익의 평가를 받을 필요 없는 옵션이라 하더라도 딜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時價基準에 따라 그 價値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損益의 性格

옵션 구매자가 얻은 損益의 性格은 基礎資產이 資本的 性格을 가지고 있는가 에 따라 결정된다. 購買者는 基礎資產과 동일한 性格을 지니는 資

産을 販賣 또는 交換한 것처럼 損益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옵션 發行者의 損益은 일반적으로 短期資本損益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딜러가 日常的 營業活動의 過程에서 거래하거나 在庫로 보유하고 있는 옵션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위에서 설명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經常損益으로 처리된다. 또한 時價基準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 外換옵션去來 損益의 경우 換率變動으로 인한 損益은 납세자가 다르게 지정하지 않는 한 經常損益으로 처리된다. 去來所 市場에서 거래되는 非資產型 옵션의 경우, 損益을 時價로 평가하며 이에 따라 인식된 損益은 60:40 規則을 적용하여 성격을 결정한다.

다) 損益의 源泉

일반적으로 옵션 去來者의 居住地에 따라 損益의 源泉을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發行者인 딜러가 인식한 利益은 딜러가 옵션거래를 수행한 場所에 따라 源泉을 결정한다. 또한 고객에게 再販賣하기 위해 옵션을 취득한 購買者가 인식한 利益은 購買者가 옵션을 在庫로 보유하고 있는 場所에 따라 원천을 인식한다.

3. 英國의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

英國은 派生金融商品 課稅에 대한 단일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判例法이 중요시되는 英美法의 특성상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과세제도도 재판을 통하여 判例가 성립하면,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이 판례에 대한 해석으로서 시행규칙(Statement of Practice)을 발표하고, 이후 입법과정에서 성문조세규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따라서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조세처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참여하는 機關 또는 個人의 經濟的 位置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의 性格에 따라 매우 複雜多技한 조세처리가 이루어

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적용되는 一般課稅原則을 설명하고, 개인 및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 一般租稅原則

현재 英國의 租稅體系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과세규정은 Schedule D. Case I, Schedule D. Case VI, 資本利得稅 조항이다. Schedule D. Case I은 법인의 經常所得 또는 개인의 勤勞所得에 적용되는 과세조항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賣買目的의 去來로 인한 所得(trading income)에 대해 적용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통상 法人稅率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個人稅(individual taxation)의 限界稅率에 따라 과세한다. 다른 방법에 비하여 손금보전의 허용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어서, 損失金은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과 차감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전년도 또는 차년도)의 손익금액과도 차감계산이 가능하다.

Schedule D. Case VI는 其他 所得(other income)에 적용되는 과세조항으로 課稅方法은 Schedule D. Case I과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損失金의 差減計算이 다른 소득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고 當期 또는 次期에 발생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利益金은 課稅되나 손실금이 이익금에 의하여 보전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投機的 去來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서 이 방법을 선호하여 왔다.

資本利得課稅는 資本의 去來(capital transaction)에 대해 적용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30%의 有效稅率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개인의 경우에 연간 5천파운드까지 所得控除를 받는다. 자본이득세 조항을 적용하여 조세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자본손익의 差減計算은 매우 制限的이어서 단지 당해 연도나 차년도분의 자본이득

에 대해서만 손금공제가 가능하다.

나. 租稅規程의 發展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租稅處理에 대하여는 런던 國際金融先物去來所(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 : LIFFE)가 설립되면서 法體制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LIFFE는 거래소 개설 이전인 1982년 8월에 영국의 내국세 당국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租稅指針(Taxation Guideline)을 발표하였다.

1984년에는 年·基金을 금융선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다음 해부터 年·基金의 금융선물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Schedule D, Case VI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1988년에 國內收益規則報告書(Statement of Inland Revenue Practice)가 발표된 이후 전통적으로 선물·옵션의 과세상 불투명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1988년 7월에 내국세입청은 헤지의 정의 및 선물 옵션의 과세 취급에 대한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1990년에 개정된 「財政法」(Finance Act)은 공인된 單位型 投資信託(unit trust)과 이미 금융선물거래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던 年·基金에 대한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稅金 免除을 승인하였다. 損益에 대한 稅制惠澤은 損益이 一般去來로부터 발생한 경우¹⁾와 헤지去來로부터 발생한 경우로 구분된다. 헤지의 정의는 투자신탁에서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投資信託의 선물·옵션거래는 자본이익상의 세금이 면제되고 단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의 경우 헤지된 포트폴리오가 資本으로 계상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6) 損益이 일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와 헤지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前者는 소득으로 과세되고 後者는 기초자산 또는 부채에 의거하여 과세된다는 것이다.

다. 課稅原則

特定去來에 대하여 어느 課稅原則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LIFFE가 처리하는 去來業務의 性格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하여 1985년에 개정된 財政法의 제72항에 따르면, 공인된 先物去來所와 證券去來所에서 이루어지는 金融先物 및 옵션 去來(traded option) 등과 관련된 업무는 賣買去來에 의한 이익금 내지는 손실금이 아니면 모두 자본성질의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원칙은 거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法人, 個人 및 金融機關에 대한 조세적용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法人 · 金融機關

銀行 및 特殊 金融機關이 헤지의 목적으로 金融先物과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 내국세입청은 이들 거래의 이익을 收入으로 취급하고 매매계정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賣買에 의한 利益 혹은 損失은 매매소득을 사정하는 통상의 방법, 즉 Schedule D, Case I이 적용된다.

一般 會社法人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참가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헤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입한 商品의 費用 혹은 고객으로부터의 대금을 수령받은 사실에 따라 損益이 인정되어 Schedule D, Case I이 적용된다. 이 경우 특별히 옵션 또는 선물계약의 거래에 따른 비용은 全額 控除된다. 법인의 자본계정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장기차입금 혹은 자본 설비취득 등에 포함된 危險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派生金融商品을 去來한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은 資本利得稅條項에 따라 과세된다.

2) 個人

개인이 행하는 대부분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1985년에 개정된 財政法의 규정에 의해 대부분 資本的 性質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資本利得稅條項의 적용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선의의 헤지거래를 행하는 個人에 대해서는 Schedule D, Case I에 근거하여 과세한다. 또한 개인이 공인 선물거래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金融去來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거래로 인한 所得은 Schedule D, Case I에 의해 과세된다.

개인 투자자가 株式 또는 先物去來所에서 행한 거래의 경우에는 資本利得稅의 규칙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순수 매매거래가 빈번하고 투자가가 여기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Schedule D, Case I을 적용할 수도 있다. Schedule D, Case I을 적용하여 課稅하는 경우에는 資本利得이나 損失이 과세목적을 위하여 사전에 미리 추산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실현된 결과에 의해 事後的으로 課稅되어야 한다.

3) 年金 · 投資信託

승인을 받은 年 · 基金은 기금의 투자수익과 투자 대상을 처분하여 얻는 資本利得에 대하여 免稅惠澤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 · 기금이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참여하여 이득을 얻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1985년과 1990년에 개정된 財政法에 의해 金融先物과 옵션이 연 · 기금의 투자에 포함되고, 非賣買去來로부터 얻은 利益은 課稅가 면제되었다. 단, 옵션의 경우에는 공인된 株式 및 先物去來所에 상장된 옵션에 대한 거래에만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990년 개정된 財政法에 의해 單位型 投資信託(unit trust)을 포함한 공인된 투자신탁에 대해 資本利得稅가 면제되고 있지만,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금 보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4. 日本의 派生金融商品 課稅制度

가. 先物去來

日本에서는 先物損益을 權利義務確定主義에 의거하여 權利義務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決濟基準으로 실현된 損益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법인의 선물거래로부터의 損益은 기타 소득과 함께 標準稅率로 과세된다. 개인의 先物去來 損益은 납세자의 거래가 營業活動으로 간주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 營業活動으로 간주될 경우 손익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住民稅를 포함하여 기타소득과 함께 15~65%까지 표준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영업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損益이 잡손익으로 처리된다. 所得은 다른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소득으로써 과세되나, 손실은 잡이익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이익들과 상계하여 종결하지도 않고 소급시키거나 이연시키지도 않을 수 있다.

나. 옵션去來

옵션프리미엄에 대한 옵션거래의 租稅規則은 해당 基礎資產의 특성 및 옵션만기의 기간 등 多樣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자산이 옵션보유자의 재고에 포함시킬 만한 유형이라면 옵션의 총원가를 資本化해야 한다. 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損益은 인식되지 않는다. 그 대신 옵션의 原價는 基礎資產의 매입원가에 부가된다. 옵션을 매도하거나 또는 滿期에 도래하게 되면 損益은 매도 또는 만기의 과세연도에 인식된다.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時價評價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基礎資產이 옵션보유자의 재고에 포함시킬 만한 유형이 아니라면 손익 인식 시점은 옵션의 잔존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短期옵션(잔존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옵션들)의 原價는 매입연도의 손실로 전부 控除될 수 있다. 그러나 長期옵션의 原價는 옵션의 잔존기간 동안 상각된다. 過

內價格(deep in the money)上的 옵션프리미엄은 지불될 때 控除되지 않을 수 있다.

프리미엄의 전액 지불 또는 수취는 日本 一般會計原則의 목적에 따라 반드시 資本化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도시 내지는 행사시, 아니면 만기 도래시까지 인식이 이연됨으로써 潛在的인 위험노출이 있다. 이는 상기에서 서술된 역사적 방법과 다르다. 상장된 商品先物들은 0.001% 거래소 시장세를 납부하고, 옵션프리미엄은 0.01%의 거래소 시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VI. 派生金融商品 關聯 國內 會計 · 公示 및 課稅 制度의 改善方向

1. 會計制度의 改善方向

가. 派生金融商品 관련 現行 國內會計制度

그 동안 국내에서는 換率과 利子率의 헤지거래라는 좁은 범위의 파생 금융상품거래에 대하여 決濟基準을 적용하도록 파생금융상품관련 회계 처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株價指數先物市場의 개설과 더불어 앞으로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危險回避 목적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회계처리방법은 많은 한계점이 노정되었다. 예를 들어 환율 및 이자율 이외의 價格變數(주가, 원자재가 등)의 變動 危險을 대상으로 한 派生商品 去來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결제기준의 파생금융상품 평가기준만 설정되어 있지 헤지회계의 도입여부, 헤지거래 구분 기준 등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限界點을 인식한 당국은 企業會計基準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先物去來 관련 條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 76조(先物去來 등의 처리) ① 原資材, 通貨, 有價證券, 利子率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대한 경우 발생한 資産 · 負債 등은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價格, 換率, 利子率 등의 契約條件과 契約의 滿期 清算可能性을 고려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金融去來에서 발생한 損益은 發生時點에 인식한다. 다만, 그 거래로 價格, 換率, 利子率 등의 變動으로 인한 危險의 回避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험 회피대상 資產·負債의 損益 認識 時點까지 이를 이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金融去來의 경우 그 去來目的과 會計處理方法 및 危險回避 目的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이 된 資產·負債, 確定契約 및 豫想去來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企業會計基準上の 개정된 회계규정에 따르면 우선 파생상품 거래 계약 체결 시점의 회계처리는 계약 조건과 계약의 만기 청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派生金融商品 去來에서 발생한 損益은 당해 회계연도에서 時價로 認識하되 危險回避目的의 去來인 경우에는 파생상품 거래 대상인 資產·負債의 損益認識時點까지 그 손익의 인식을 移延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파생금융상품을 時價로 평가하고 헤지회계를 허용하되 移延헤지會計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 내용은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會計處理方法에 대한 내용들이 기업회계기준 예규 등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파생금융상품 거래내역이나 평가액의 대차대조표 표시 방법, 거래 구분 형태, 헤지 적격 요건, 헤지 회계 처리 방법, 포괄 헤지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企業會計基準의 개정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투신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체 회계처리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派生金融商品去來 會計處理基準」을 제정하고 이를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¹⁾. 이 會計處理基準은 時價主義 會計制度의

1) 자세한 내용은 附錄 I 참조.

원칙하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을 매월 1회 市場價格으로 평가하고, 同 評價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기의 損益으로 認識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派生金融商品 去來는 契約形態(선도, 선물, 스왑, 옵션 등) 및 基礎資產의 價格形態別(환율, 이자율, 주가 등)로 買入 · 賣渡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의 脚註事項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헤지 會計處理의 구체적 條件과 方法을 제시하였다. 첫째, 派生金融商品은 원칙적으로 時價評價하고 그 평가 손익을 損益計算書에 반영토록 하였다. 그러나 헤지거래의 경우에는 헤지 대상물의 평가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派生金融商品 去來는 거래시점에서 헤지거래와 순수 매매거래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 때 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國際金融市場에서 헤지 대상물과 밀접한 相關關係가 있다고 인정되고, 헤지 규모가 헤지 목적을 위해 적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未來 豫想去來에 대한 헤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헤지 대상이 되는 기초 거래의 발생 시기와 금액이 계약서 등의 문서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헤지 去來 損益認識方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헤지 去來의 損益 認識은 헤지 대상이 되는 기초상품거래의 손익 발생 시점에 대응하여 인식하고, 헤지거래가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발생하였던 관련 損益을 당초 헤지거래의 만기시까지 균등 분할하여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純粹 賣買去來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시점에 派生金融商品 去來를 시가평가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토록 하였다. 넷째,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평가에 따른 損益은 손익계산서상의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익계정과 대차대조표상의 파생금융상품 평가조정계정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단, 일일정산액이 證據金에 반영되는 去來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상의 파생금융상품거래손익계정과 대차대조표상의 기타 예치금계정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證券業의 경우에도 파생금융상품거래 관련 회계규정을 정비하였다. 證券監督院은 「증권회사 회계처리 규정」중 株價指數先物 去來와 관련

된 회계처리규정을 1996년 3월에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株價指數先物去來에서 발생한 損益은 이를 발생시점에서 인식하는 時價主義에 의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株價指數先物去來와 관련하여 선물거래 고객계좌원장, 종목별 선물 자기계약원장, 위탁자 선물계약원장, 선물거래 일일정산원장, 선물매매증거금 대장 등의 帳簿를 신설하였다. 또한 증권거래 책임준비금 적립대상에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포함하고 주가지수선물 위탁거래 금액의 10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의 목적은 株價指數先物去來가 도입됨에 따라 증권회사의 회계처리상의 통일성을 기하고 고객 보호 및 공정한 업무처리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證券會社의 決濟 不履行 危險 등에 대비하여 내부통제기능을 강화시켰는데 회계처리상 증권회사의 위탁계좌와 증권회사의 자기계좌를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선물거래 고객예탁금 보관대장의 별도 관리에 대하여는 이 대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委託計座와 自己去來計座間의 철저한 분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證券會社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고객 보호의 원칙이 희생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나. 改善方向

時價會計基準에 따라 派生金融商品 去來를 회계처리하고, 헤지 會計를 인정하도록 企業會計基準을 개정·실시중에 있으므로 派生金融商品會計制度의 基本方向은 올바르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企業會計基準上에 규정된 내용이 너무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派生金融商品 會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예규, 준

칙 등을 통하여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는 1992년 7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예규(102~470)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 금번에 개정된 企業會計基準에 의거하여 예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IASC 및 美國 FASB는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회계처리 권고안과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案을 기초로 하여 국내 派生金融商品 去來 會計處理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파생금융상품 가치평가방법, 거래구분형태, 헤지 적격 요건, 헤지거래 손익 인식 방법, 재무제표 계상 여부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派生金融商品 去來 포지션은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시장성 있는 파생금융상품인 경우는 市場價値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만약 派生金融商品의 價値를 시장성이 있는 상품에 준거하여 市場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模型을 사용하여 파생상품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금번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서는 그 동안 取得原價 또는 低價로 평가해 왔던 유가증권을 모두 時價로 평가하되 시장성이 없는 증권과 관계회사 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30대 대기업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일시에 時價로 평가할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出資限度 超過가 발생하는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有價證券의 時價 評價를 1998 회계연도까지 유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예조치는 국내의 특수상황에 따른 조치라 판단되나 大企業에 대한 이러한 優待措置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에 개정된 企業會計基準에서는 市場性이 있는 모든 金融資產과 負債뿐만 아니라 派生金融商品도 時價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운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손익을 인식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

어 있지 못하다. 특히 향후 去來所에서 거래되어 流動性이 보장되고 時價의 형성이 가능한 派生金融商品뿐만 아니라 場外에서 당사자들끼리 거래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場外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공정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가치평가모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非金融資産 또는 未來 支出과 연계된 현금 흐름을 헤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派生金融商品 포지션에 대하여는 시가기준 평가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회계처리는 純粹 賣買 또는 헤지 목적 등 거래목적에 구분하여 각 거래의 經濟的 實體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목적에 구분할 경우 현재와 같이 헤지 거래와 기타 거래로 분류하는 방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美國의 會計基準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순수 매매거래, 보유자산·부채 및 확정계약에 대한 헤지 거래, 예상거래에 대한 헤지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거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派生金融商品 去來 포지션은 헤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純粹 賣買포지션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헤지 적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基準이 필요하다. 헤지회계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할 경우 손익인식시점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최근 미국 FASB에서 검토중인 헤지 적격 요건들을 참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공정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헤지 대상물에 대해서만 헤지회계를 허용하여 현재의 損益移延헤지會計法에서 時價헤지會計法으로 헤지會計處理方法을 전환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헤지거래 損益認識에 있어서 헤지 포지션은 헤지 대상품과 동일한 基準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非金融資産 또는 미래지출에 대한 헤지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에 의거하여 인식되어야 한다. 즉, 헤지 상품의 손익은 헤지 대상 상품의 성격에

상관없이 헤지 대상품의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한 기간과 동일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사건이 회계적으로 인식되기 이전에 실현된 헤지 商品의 利益은 헤지 대상물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을 때까지 이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保守的 會計處理基準에 준거하여 실현되거나 측정된 헤지 商品의 損失은 그때까지 헤지 대상품과 관련하여 기록되지 않은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헤지 去來와 관련하여 會計處理의 구체적 방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헤지 적격 요건뿐만 아니라 헤지 유효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시기, 포괄헤지 인정 여부 및 포괄헤지 손익의 배분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특히, 헤지 去來가 중단되거나 헤지 條件을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市場性이 있는 先物, 옵션 등의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언제나 반대매매를 통해 決濟가 가능하기 때문에 헤지 거래의 중단도 쉽게 가능하다. 따라서 헤지 去來가 중단되는 경우의 移延損益 處理方法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또한 헤지 商品의 만기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헤지 대상물이 수익을 가져다 준 경우 헤지 商品을 時價基準에 의한 평가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商品別 特性에 맞는 例規가 필요하다. 즉, 과생상품 거래의 契約 形態別 및 基礎資產의 價格形態別 特徵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규가 필요하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언급한 만기청산가능성에 따른 상품별 회계처리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선도거래 등 만기 청산이 확실한 상품과 선물, 옵션 등 언제든지 청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간 회계처리에 차이를 두겠다는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달리할 것인가를 예규에서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상품별로 선물, 옵션 등 派生金融商品의 會計處理 例規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옵션 去來에 대한 會計處理基準의 補完이 필요하다. 옵션 거래의

경우도 순수 매매 목적과 헤지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會計處理基準이 정립되어야 하며, 옵션 매도 포지션의 경우는 거래 포지션이 위험하기 때문에 헤지회계의 적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옵션 프리미엄을 수수 시점에 損益 處理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후 이연하여 회계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예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의 市場價格變動을 측정 및 인식하는 데 內在價值와 時間價值로 구분 처리하지 않고 프리미엄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財務諸表上的의 계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국제적 추세는 파생상품의 거래효과를 財務諸表에 계상하고 평가방법으로 時價主義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상품의 평가 방법으로 時價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재무제표상의 계상에 대해서는 계약조건과 만기청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는 개괄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기준의 해석에 있어 실무자간에 상이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公示制度의 整備方向

派生金融商品의 會計·公示制度를 정비하기 위한 各國의 노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원칙을 정립하기 전에 먼저 公示制度를 強化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는 派生金融商品의 會計制度를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들지만, 公示制度를 強化하는 것은 일반회계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簿外去來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연유한 대규모 損失 事件이 빈번히 일어나자 이의 원인과 방지책을 연구한 보고서마다 대표적인

권고사항으로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 強化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최초로 광범위한 연구 조사를 실시한 G-30의 보고서에서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에 대한 勸告事項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종 수요자 또는 딜러들의 재무제표는 투자자들이나 거래 상대방들이 거래 목적, 거래 규모, 내포된 리스크, 회계처리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派生金融商品의 去來 參與者들이 경영층의 재무 리스크에 대한 태도, 파생상품의 이용방법, 리스크의 감시 및 통제 방법 등에 대한 사항, 회계처리 방침, 대차대조표 작성일의 포지션 분석, 이러한 포지션에 기인한 신용 리스크 분석 등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딜러들은 그 외에 파생금융상품거래 참여 정도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G-30은 이와 같은 質的인 去來情報의 公示뿐만 아니라 量的인 情報의 公示도 권고하고 있다. 부외거래 포지션의 액면 계약 금액, 현재의 신용 노출도, 그리고 딜러의 경우 원천별 수익 분석 등 派生金融商品 參與機關의 거래 정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G-30은 市場 리스크의 公示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존하는 시장 리스크 측정치를 계산하여 보고하는 데에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참여기관간에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市場 리스크 測定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어 좀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측정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BIS (1994), IIF(1994) 등의 기관에서 市場 리스크의 公示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派生金融商品 去來 리스크를 공시하는 것은 경쟁자에게 자기의 리스크에 대한 選好度 또는 自己 賣買去來 戰略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친 公示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된 내용이 잘못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한 수준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市場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에 대하여 표준화된 리스크 측정 틀을 구축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Gastineau(1995)는 派生金融商品의 額面 契約 價値, 다양한 시장에서 체결한 派生金融契約의 數와 滿期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내역에 대한 공개는 그릇된 의사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참여 기업이 당면한 淸算 리스크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株主利益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탈게젤샤프트社의 대규모 損失 事例²⁾에 있어서 當社의 거래내역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當社가 어느 시점에서 基礎商品市場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先物市場(NYMEX)에 참여하고 계속적인 갱신 헤지를 수행할 것인지를 모든 先物市場 參與者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탈게젤샤프트社가 先物契約을 갱신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높은 費用이 들도록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先物價格을 계속 상승시켰고, 그 결과 갱신헤지를 수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費用이 소요된 것이 메탈게젤샤프트의 美國 子會社가 문을 닫게 되는 데에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메탈게젤샤프트社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去來 內譯이 公示되는 경우 그 效果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派生金融商品 去來 內譯의 公示에 균형잡힌 制度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外部報告體系는 적절한 리스크 管理 內部統制시스템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관리시스템은 즉각적이고 계속적이며, 사전적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 포지션의 헤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세한 내용은 제Ⅲ장 제1절 참조.

이와 같은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情報 公示의 정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내포하고 있는 각종 危險에 대한 情報가 財務諸表 기록을 통해서건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건 추가로 공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財務情報의 기본 목적이 투자자들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번 기업회계기준 개정시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基準을 強化하였다. 기업회계기준 제76조 제3항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그 去來目的과 會計處理 方法을 기재하고, 危險回避 目的인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이 된 資産 · 負債, 確定契約 및 豫想去來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정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거래 내역의 공시도 강화하여 全國銀行聯合會의 「銀行經營統一公示基準」上 장기적인 공시대상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時價情報³⁾를 同 會計基準에 의거 처리하여 1996 회계연도부터 공시토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 內容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상세한 公示基準이 例規 등을 통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파생금융상품의 계약조건, 상품의 성격, 신용리스크에 대한 정보, 회계처리방법, 관련 계정과목의 평가가액 및 회계처리방법, 헤지거래의 경우 헤지대상상품과의 연관성에 대한 公示 水準과 方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상세한 공시기준을 예규 등에서 설정할 때 主要國 및 國際機構들이 시행 및 제안하고 있는 공시제도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IASC가 제안하고 각국들이 강화하고 있는 公示制度의 내용을 派生金融商品의 數量情報 公示, 파생금융상품에 내포된 危險의 評價

3) 거래실적별, 계약형태별 및 기초자산가격형태별 계약액, 시가 및 손익 등

公示, 그리고 평가에 사용된 會計原則의 公示를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향후 國內의 派生金融商品關聯 公示制度의 整備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가. 派生金融商品의 數量 情報의 公示

企業이 참여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 去來를 數量化함으로써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파생금융상품 항목의 相對的인 重要性이나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效果를 豫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때 財務諸表에 공시할 派生金融商品 情報의 範圍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활발하게 파생상품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재무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활동에 관한 數量的 情報를 公示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량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므로 먼저 企業에 미치는 影響 또는 潛在的인 影響의 중요도에 따라 공시할 派生商品의 範圍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派生金融商品의 性格에 따라 이를 관리·통제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公示하는 내용 또한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헤지목적으로 사용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주요 헤지수단의 종류, 액면가 또는 표준적인 기본수량, 회계기간중 收益에 미치는 헤지활동의 結果, 認識된 損益 등을 公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함으로써 헤지된 貸借對照表上의 項目에 대한 情報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반면에 投機, 投資 등의 純粹 賣買目的으로 보유하고 있는 商品의 경우에는 보유량 이외에 현재 市場價值를 함께 公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의 시장가치를 공시함으로써 관련 상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예측하고 내재된 危險을 評價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무제표에 歷史的 費用으로 평가된 金融資產 또는 負債와 관

런된 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市場價値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른 企業의 危險 露出度 公示

派生金融商品의 性格과 數量에 대한 情報는 이해관계자가 企業의 재무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는 企業이 미래에 얻을 손익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追加的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르는 危險을 公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은 信用 危險, 流動性 危險, 市場 危險 및 經營管理 危險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표시하기 위해서 각 파생금융상품 거래별로 潛在的 危險에 대한 補助的 數量 情報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보는 앞에서 언급된 數量的 情報를 제공하는 방식과 일관된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금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수량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市場狀況에 따른 資產 또는 負債의 現金흐름 크기와 시기 및 不確實性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주요 조건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擔保 및 危險이 집중된 상품에 대한 정보, 債務不履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金融資產의 信用度에 대한 指標를 제공하고 潛在的인 流動性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企業의 管理統制體制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거나 管理統制體制에 대한 수량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이 企業의 財務狀況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公示하여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부의 활동에 대하여 관리자가 설정한 목표와 그 달성 정도, 금융활동에 관련한 자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통제과정의 작동 여부, 그리고 관리·통제 체계의 新金融商品市場, 利率率 및 換率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변화 여부 등이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각 금융기관들이 자체 內部危險管理를 위하여 작성하고 있는 保有資産 및 負債의 確率的 損失 可能額, 예를 들어 VAR (Value-At-Risk)을 공시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VAR이란, 개별 자산의 단순 위험 가중 합계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 多樣的 資産間의 相關關係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수치로서, 資産 포트폴리오가 일정한 信賴水準에서 그리고 일정한 未來期間 동안에 발생할 最大 損失의 推定 値를 뜻한다. 예를 들어 99% 신뢰수준, 그리고 10일 보유기간에서 10억 원의 VAR이란 10일 후에 포트폴리오의 손실액이 10억원보다 적을 확률이 99%임을 뜻한다.

JP Morgan의 RiskMetrics를 이용한 DEaR(Daily Earning at Risk), Bankers Trust의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등 각 금융기관들이 市場危險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금리, 환율 등 金融價格變數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派生金融商品 去來에서 대규모의 손실사건이 급증하자 市場 리스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BIS는 각 금융기관이 개발한 內部 危險資産 測定技法의 활용을 인정하는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金融監督機關은 국내의 각 금융기관에게 위험자산 정보를 계산하여 내부 위험관리의 기초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市場危險情報를 공시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나리오에 따른 최대 손실 가능액, 최악의 상황의 최대손실 가능액 등도 공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危險과 收益을 동시에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派生金融商品 會計·公示에 사용된 會計方法의 公示

현재 派生金融商品에 대하여 어떤 會計基準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國際的인 基準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一般會計原則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會計處理方法是 기업마다 차이를 가질 수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사용된 基準을 公示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주어진 會計情報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파생금융상품의 가치평가기준, 손익의 상계여부, 未實現損益의 처리방법, 그리고 헤지거래와 순수매매거래를 다르게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3. 課稅制度의 改善方向

국내에 파생금융상품관련 조세 규정으로는 先物去來 등에 관한 조세 규정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 17」이 있고, 관련 예규로서 「법인세법 예규 22601-505, 1988.12.3」 및 「법인세법 예규 22601-3337, 1988.12.23」이 있다.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先物去來로 인하여 생긴 換差損益은 실질적인 去來가 성립하는 날(계약 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에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益으로 한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稅法體系上 先物去來에 따른 換差損益의 귀속시기 이외에는 派生金融商品 去來로 인한 損益에 대한 명백한 세법상의 규정이 없다. 또한 同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계약일, 결산일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결제일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선물거래와 선도거래를 구별하지 않고, 옵션 및 스왑거래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企業會計基準이 개정되어 派生金融商品 去來를 時價會計基準으로 회계처리하고 헤지會計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세체계는 가능한한 간편하고,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즉, 조세체도가 간편하고 명료하여 납세협력비용이 적게 들고, 동일

한 경제적 실체에 대하여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세금 부과가 납세자의 납세 능력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원칙들은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립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준거하여 이하에서는 파생상품의 손익 인식 시기, 손익 성격, 손익 원천 등으로 구분하여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稅務會計上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손익인식 시기를 時價基準으로 바꾸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의 회계기준이 정비되어 그 損益이 時價基準으로 인식됨에 따라, 시가기준에 의해 인식된 會計上の 所得을 課稅目的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파생상품거래손익의 인식시점을 계약실행일 또는 청산일로 보고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의 본질을 살리고 과세소득의 기간조정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거래손익의 인식을 시가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규정은 엄격한 決濟基準을 따르고 있어서 파생상품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損益의 認識을 移延시키도록 誘導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先物換 去來의 경우 결제일에 정산하여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財政經濟院의 有權解釋에 의하면 “先物換 去來의 계약만료일에 再契約를 체결하여 期限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先物換 去來에 따른 損益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契約延長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事業年度에 損益을 歸屬시킬 誘引이 발생하는 것이다. 派生金融商品의 去來技法이 발달함에 따라 契約滿了時點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손익을 이연하거나 조기 실현하는 행동(tax timing option)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時價

評價에 의한 課稅制度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日日精算이 이루어지는 場內去來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할 경우 손익을 이연하여 과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企業會計基準과 동일하게 課稅目的의 損益認識基準을 時價基準으로 바꾸어 각 과세기간 말에 공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산출한 손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을 濟濟基準에 의거하여 인식하고 과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가격의 변동분에 대한 손익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보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중 市場價格이 형성되는 선물, 옵션 등은 일일정산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하여 派生商品 價格變動分에 대해 즉각적으로 證據金의 授受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派生金融商品의 去來損益을 평가 손익으로서 미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금전 채권 또는 채무가 수반된 實現損益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時價評價가 가능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시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는 價值評價模型에 의거하여 공정가치를 추정(mark-to-market model)하여 파생상품의 손익을 인식하고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 순수매매 목적의 거래손익, 헤지 목적의 거래 손익 등의 損益性格에 따른 과세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국내 과세제도는 파생금융상품거래에 去來目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나 課稅中立性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체에 부합하도록 헤지목적과 순수매매목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純粹賣買目的의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時價評價하여 과세하고, 헤지目的의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헤지 대상물의 손익과 대응하여 同一 會計期間에 인식하고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순수 매매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손익을 시가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資本利得課稅의 수용 여부

문제와 未實現利得에 대한 과세 여부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資本利得課稅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기보다는 時間經過나 市場變化 등으로 인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아직 까지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資本利得에 대하여 이를 과세 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純資產 增加說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所得源泉說에 의하여 과세를 해서는 않된다는 주장으로 구분된다. 외국의 예를 보면,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이득과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⁴⁾.

美國에서는 IRC 제1256조의 규정에 따라 헤지목적 이외의 純粹賣買 目的의 金融商品去來의 손익을 과세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산출하여 총 이익 중에서 40%는 단기 자본이득으로, 60%는 장기 자본이득으로 처리하고 있다. 個人인 경우 이러한 資本利得을 경상소득과 합산하여 綜合課稅하며, 장기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별 우대조치가 있다. 자본손실은 자본이익에서만 공제될 수 있고 경상이익에서는 공제될 수 없다. 한편 法人의 경우에는 派生金融商品 去來損益이 다른 손익과 합산되어 法人稅가 부과된다. 즉 장기 자본이익에 대한 특별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時價基準에 의해 인식된 派生金融商品 損益은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는 미실현 자본이득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未實現 資本利得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차별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다⁵⁾. 현재 국내에서 資本利得課稅가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첫째, 실현된 자본이득과 관련한 과세로서 不動產 資本利得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와 거주자의 非上場株式 등의 讓渡差益(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대한 과세가 있고, 둘째, 未實現

4) 재무부(1989) 참조.

5) 홍기영(1993) 참조.

資本利得과 관련한 과세로는 土地超過利得稅와 일부 자산에 대한 評價損益(재고자산의 평가손익과세, 매매목적의 유가증권평가손 과세, 상속세법에 의한 시가주의 과세, 자산보유과세 또는 자산재평가세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未實現 資本利得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未實現 資本利得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課稅衡平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과생상품거래에 있어서의 去來損益에 대하여도 과생상품의 본질상 時價基準에 의하여 과세하는 未實現資本利得課稅를 세법에서의 企業會計尊重(「國稅基本法」第20條)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생금융상품 거래를 헤지목적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인식된 去來損益에 대하여는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經常損益과 연계된다. 금번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헤지상품의 去來損益을 헤지對象 商品의 去來損益과 대응하여 同一 會計期間에 인식하는 헤지會計方法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헤지 목적의 과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도 企業會計基準에서 인식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 課稅의 簡便性을 유지하면서 去來의 經濟的 目的에 적합한 과세 방법이라 판단된다.

美國에서도 헤지목적의 派生商品 去來를 통하여 발생한 損益을 헤지對象物의 損益과 對應하여 同一 會計期間에 인식 과세하도록 한다. 한편 日本에서는 과생상품손익을 權利 · 義務 確定主義에 의거하여 권리 ·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反對賣買 혹은 權利行使에 의해 決濟가 행하여지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先物去來稅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과생금융상품 거래 손익과 관련된 個人所得稅制度의 정비가 필요하다. 場內 派生金融商品은 적은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信用危險度가 매우 낮기 때문에 個人도 과생금융상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個人所得稅體系上 資本利得에 대해 課稅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國內 個人投資家들이 파생금융상품 거래로부터 얻는 損益에 대해 과세할 근거가 없다. 반면 개인이 이자율스왑거래를 통해 손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利子所得으로 보아 종합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課稅衡平性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資本利得에 관한 綜合課稅制度가 도입되기 전에 거래 商品別 例規를 마련하여 혼란을 막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생상품시장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매우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資本利得이 여타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綜合課稅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점 또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非居住者가 국내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로부터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源泉課稅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므로 이러한 관행에 맞게 派生金融商品 去來 損益의 源泉에 대한 課稅基準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⁶⁾.

다섯째,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부과하는 教育稅의 정비와 시장성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去來稅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派生商品 去來에서 발생하는 收益金額에 대해 1,000분의 5의 教育稅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法人稅, 住民稅 이외에 教育稅가 중복하여 부과되는 三重課稅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향후 단순화하여 事業 서비스 部門에 대한 附加價値稅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선물, 옵션 등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6) OECD(1996) 참조.

대하여 去來稅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로는 日本, 프랑스, 濠洲, 英國, 싱가포르 등이 있다. 한편 美國에서는 先物去來稅의 導入法案이 의회에 몇 번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아직 선물거래세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國內의 株價指數先物 去來에 대하여는 市場의 活性化 次元에서 先物去來稅의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물 증권거래에 대하여 이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선물시장과 주식시장을 연계한 조세차익거래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또한 향후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도입될 예정에 있으므로 선물·옵션거래 등에 대한 資本利得課稅 導入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去來所 市場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去來稅 導入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축소폐지하고 金融資產에 대한 利子所得뿐 아니라 資本所得을 모두 綜合課稅하는 방향으로 課稅制度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Ⅶ. 結 論

國內 金融市場의 自由化와 開放化가 進전됨에 따라 金融市場에서의 결정요소인 이자율, 환율, 주가 등에 대한 先物去來, 옵션去來, 스왑去來 등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 금융 거래와 대비하여 볼 때 派生金融商品 去來는 보다 效率的으로 시장 내에 존재하는 金融危險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派生金融商品 去來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金融市場 전체에 대규모의 危險을 노출시킬 개연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傳統的 金融去來와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去來形態에 적합한 下部構造를 구축하여야 한다.

本 研究에서는 派生金融商品 去來와 관련한 下部構造 중에서 이들 거래에 대한 公示·會計 및 課稅制度의 整備方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제적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公示·회계 및 과세제도의 정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특히 최근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연유한 대규모 損失 事件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들 거래의 公示와 會計에 대한 국제적 조화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출현 목적 중에 하나가 기존의 課稅體制의 틀을 우회하여 節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들 去來에 대한 經濟的 實體에 적합하게 과세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課題이다. 국제적 기구에서도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公示·會計 및 課稅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나 각국마다 이들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一貫性 있는 國際的 基準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단지 유연하게 조화를 이루고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企業會計基準을 개정하여 派生金融商品을 時價

基準으로 평가하고 헤지會計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들은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정비하는 등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활성화에 대비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내용이 개괄적이고 상당한 부분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과 어려움이 생길 것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관련 규정 및 例規의 具體化 作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派生金融商品 去來 關聯 會計制度의 改善方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派生金融商品 去來 포지션은 公正價値로 평가되어야 한다. 시장성 있는 파생금융상품인 경우는 市場價値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만약 파생금융상품의 가치를 시장성이 있는 상품에 준거하여 시장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派生商品의 評價는 公正價値를 도출할 수 있는 模型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대한 會計處理는 純粹賣買 또는 헤지 目的 등의 去來目的으로 구분하여 각 거래의 經濟的 實體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목적은 구분할 경우 현재와 같이 헤지거래와 기타 거래로 분류하는 방법보다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회계기준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純粹賣買去來, 保有 資産·負債 및 確定契約에 대한 헤지去來, 豫想去來에 대한 헤지去來 등으로 구분하여 去來特性에 맞는 회계처리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派生金融商品 去來 포지션은 헤지 目的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純粹賣買 포지션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헤지適格要件에 대한 명확한 基準이 필요하다. 또한 公正價値로 평가될 수 있는 헤지對象物에 대해서만 헤지회계를 허용하여 현재의 損益移延헤지會計法에서 時價헤지會計法으로 헤지會計處理方法을 전환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헤지去來 損益認識에 있어서 헤지 포지션은 헤지對象品과 同一 基準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즉, 헤지商品의 損益은 헤지對象商品의 性格에 상관없이 헤지對象品の 收益 또는 費用이 발생한

期間과 동일한 기간에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헤지거래와 관련하여 헤지適格要件뿐 아니라 헤지有效性을 판단하는 방법 및 시기, 包括 헤지 認定與否 및 包括헤지 損益의 配分方法, 헤지去來가 종결되거나 헤지條件을 벗어나는 경우의 會計處理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商品別 特性에 맞는 例規가 필요하다. 즉, 派生商品 去來의 契約形態別 및 基礎資産의 價格形態別 特徵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규가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파생금융상품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따라 先渡型 商品과 傭選型 商品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거래 포지션이 위험한 傭選賣渡 포지션의 경우는 헤지회계의 적용을 불허하는 등 傭選去來에 대한 會計處理 基準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財務諸表 計上 與否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의 평가방법으로 時價主義를 채택하였으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재무제표 계상에 대해서는 契約條件과 만기청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는 개괄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따라 기준 해석에 있어 실무자간에 상이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가 활성화된 국가들의 대규모 손실사태 후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에 따르면 派生金融商品 去來 參與機關의 內部統制 시스템의 構築과 去來內譯에 대한 公示制度의 強化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번 기업회계기준 개정시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公示基準을 強化하였으나 아직 미흡하고 구체적 공시 내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시하여야 할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보유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의 數量情報를 들 수 있다. 그리고 企業에 미치는 影響 또는 潛在的인 影響의 중요도에 따라 공시할 파생상품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派生金融商品의 性格에 따라 이를 관리·통제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公示하는 내용도 달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헤지목적으로 사용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주요 헤지수단의 종류, 액면가 또는 표준적인 기본수량, 회계기간중 收益에 미치는 헤지활동의 結果, 認識된 損益 등을 公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派生金融商品 去來에 따른 危險 露出度가 公示되어야 할 것이다. 각 파생금융상품 거래별로 潛在的 危險에 대한 補助的 數量 情報뿐 아니라 市場狀況에 따른 現金흐름의 크기, 시기 및 不確實性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의 주요 조건을 같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擔保 및 危險이 집중된 상품에 대한 정보, 債務不履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金融資產의 信用度에 대한 指標을 제공하고 潛在的인 流動性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企業의 管理統制體制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거나 管理統制體制에 대한 수량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派生金融商品이 기업의 재무 상황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각 금융기관의 자체 내부 위험관리를 위하여 작성하고 있는 保有資產 및 負債의 確率的 損失 可能額, 예를 들어 VAR (Value-At-Risk)를 公示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나리오에 따른 최대 손실 가능액, 최악의 상황의 최대손실 가능액 등도 公示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危險과 收益을 동시에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派生金融商品 會計·公示에 사용된 會計方法이 公示되어야 할 것이다.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會計處理方法은 기업마다 차이를 가질 수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사용된 基準을 公示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주어진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派生金融商品의 價值評價基準, 損益의 相計與否, 未實現損益의 處理方法 및 헤지去來와 純粹賣買去來를 다르게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을 公示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課稅制度라 판단된다. 현행 세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損益은 決濟基準으로 인식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企業會計基準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평가 방법으로 時價基準을 채택하고 헤지회계를 허용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會計上 인식된 손익을 課稅目的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派生金融商品은 對象 基礎商品의 價値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수익흐름을 결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흐름을 재생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經濟的 實質이 동일한 거래가 서로 다르게 과세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租稅差益 去來(tax arbitrage)가 일어나지 않도록 派生金融商品 去來 關聯 課稅制度가 정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생금융상품관련 國內 課稅制度의 改善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 稅務會計上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손익인식시기를 결제기준에서 時價基準으로 바꾸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의 회계기준이 정비되어 그 損益이 時價基準으로 인식됨에 따라, 과세목적의 손익인식 기준도 時價基準으로 바꾸어 각 과세기간 말에 공정한 市場價格에 따라 산출한 손익에 대하여 課稅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국내 과세제도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거래목적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나 課稅中立性의 원칙에 따라 經濟的 實體에 부합하도록 헤지목적, 순수매매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損益性格에 따른 과세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純粹賣買目的의 派生商品 去來 損益은 時價評價하여 과세하고, 헤지목적의 派生商品 去來 損益은 헤지對象物의 損益과 對應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파생금융상품거래 손익과 관련된 個人所得稅制度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 個人所得稅體系上 資本利得에 대하여는 課稅하고 있지 않으므로, 個人이 派生商品去來로 얻는 損益에 대하여는 과세할 근거가 없다. 반면 개인이 이자율스왑거래를 통해 손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이자

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課稅衡平性¹⁾上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높으므로 자본이득을 여타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점 또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非居住者가 국내에서 派生金融商品 去來로부터 획득한 所得에 대하여 源泉課稅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므로 이러한 관행에 맞게 派生金融商品 去來 損益의 源泉에 대한 課稅基準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¹⁾.

다섯째,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부과하는 教育稅의 정비와 시장성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去來稅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부과되는 教育稅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인세, 주민세 이외에 중복하여 부과되는 三重課稅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事業서비스 部門에 대한 附加價値稅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의 주가지수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先物去來稅의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資本利得을 포함하여 個人 金融所得에 대한 綜合課稅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先物 옵션去來 등에 대한 資本利得課稅의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去來所 市場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去來稅 導入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金融資產에 대한 利子所得뿐 아니라 資本所得을 모두 綜合課稅하는 방향으로 課稅制度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1) OECD(1996) 참조.

參 考 文 獻

- 金光潤, 『現代 稅務會計』, 서울 : 박영사, 1994.
- 金光潤 · 洪起用, 『先物去來의 課稅受容에 관한 研究』, 1993年度 夏季 學術論文發表論文集, 한국세무학회, 1993. 6, pp. 47~71.
- 金基成, 「先物市場에의 稅制導入, 그 事例와 提言 - 金融先物去來所의 稅制를 中心으로」, 『先物』, 1987. 7, pp. 16~26.
- 박환일 · 정순섭, 「派生商品去來의 事故類型과 金融機關의 리스크 縮小 方案」, 『KDB 산업경제』, 제31호, 한국산업은행, 1995. 4.
- 宋梓 外, 『재무회계』, 서울 : 博英社, 1985.
- 尹鍾圭, 「金融先物去來의 導入과 對應方案 - 會計 및 稅務處理上의 對策을 中心으로」, 『上場協』, 제31호, 1995, pp. 95~117.
- 이광호, 「OECD 조세분야에서의 주요논의의 흐름과 대응방안」, OECD - 한국조세연구원 세미나 자료, 1996. 4.
- 李聖淳 · 金東憲, 「證券先物 · 옵션 去來制度 導入에 따른 市場規制 및 會計制度에 관한 연구」, 『財務管理研究』, 제11권 제1호, 1994. 6, pp. 191~232.
- 李準應, 「美國 金融先物去來 會計處理에 관한 小考」, 『先物の 世界』, 1992. 6, pp. 30~48.
- 財務部 稅制局, 『주요국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1989. 7.
- 재무부 세제조사과, 「통화옵션거래에 관한 교육세 과세표준 검토」, 1993. 4.
- 趙星河, 「時價會計의 必要성과 導入」, 『상장협』, 제31호, 1995, pp. 48~66.
- 朱仁基, 「國際會計基準 草案 第48號(金融商品) 導入方案」, 『상장협』,

- 제31호, 1995, pp. 86~94.
- 崔星根, 「과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 『先物の世界』, 1995. 12.
- 한국은행, 『派生金融商品去來의 世界的 擴大趨勢와 그 影響』, 조사연구자료 94-2, 1994.
- , 『과생금융상품의 거래확대에 따른 영향과 정책당국의 대응』, 조사연구자료 95-9, 1995.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은행회계해설』, 1996. 1.
- 洪起用, 「선물손익의 회계인식과 과세」, 『先物の世界』, 1993. 10, pp. 58~65.
- 洪正和, 「先物換去來에 대한 會計處理」, 『先物の世界』, 1994. 3, pp. 12~25.
- 加藤 厚, 「美國會計基準 및 國際會計基準에 의한 과생상품의 會計와 公示」, 金正國·全美英(譯), 『證券』, 1995. 6, pp. 92~111.
- Allen, F. and D. Gale, *Financial Innovation and Risk Sharing*, Cambridge: MIT Press, 1994.
- Arthur Andersen, “A Global Survey,” *Worldwide Directory and Review 1995—A Supplement of Futures and Options World*, 1994, pp. 47~56.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Recent Innovations in International Banking*, April 1986.
- Bank of England, “Statistical Information about Derivatives Markets,”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Vol. 35, No. 2, May 1995, pp. 185~191.
-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July 1988.

- , *Risk Management Guideline for Derivatives*, July 1994.
- Carpenter, A., *Inside the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Market*, New York : Woodhead-Faulkner, 1991.
- CFTC, *OTC Derivative Markets and Their Regulation*, October 1993.
- Culp, Christopher and Merton H. Miller, "Hedging a Flow of Commodity Deliveries with Futures : Lessons from Metallgesellschaft," *Derivatives Quarterly*, Vol. 1, No. 1, Fall 1994, pp. 7~15.
- Derivatives Policy Group, *Framework for Voluntary Oversight*, March 1995.
- Edwards, Franklin R. and Michael S. Canter., "The Collapse of Metallgesellschaft : Unhedgeable Risks, Poor Hedging Strategy, or Just Bad Luck?," *The Journal of Futures Markets*, Vol. 15, No. 3, 1995, pp. 211~264.
- European Bond Commission, *European Options and Futures Market*, Chicago : Probus, 1991.
-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Financial Derivatives : New Instrument and Their Uses*, 1993.
- Figlewski, Stephen, "How to Lose Money in Derivatives," *The Journal of Derivatives*, Winter 1994.
- Fitzgerald, D., *Financial Futures*, London : Euromoney Publication, 1983.
- FRB, FDIC and OCC, *Derivative Product Activities of Commercial Banks*, January 1994.
- FASB,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52, Stamford, December 1981.

- , “Accounting for Futures Contract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80, Stamford, August 1984.
- ,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with Off-Balance Sheet Risk and Financial Instruments with Concentrations of Credit Risk,”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05, Stamford, March 1990.
- , “Disclosure about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07, Norwalk, December 1991.
- , “Disclosure about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and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19, Stamford, October 1994.
- , “Summary of the Proposed Standard on Accounting for Derivatives and Hedging,” Stamford, March 1996.
- Gastineau, G. L., “Some Derivatives Accounting Issues,” *Journal of Derivatives*, Spring 1995, pp.73~78.
- General Accounting Office, *Financial Derivatives: Action Needed to Protect the Financial System*, Washington, May 1994.
- Group of Thirty, *Derivatives: Practice and Principles, A report by Global Derivatives Study Group*, July 1993.
-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A Preliminary Framework for Public Disclosure of Derivatives Activities and Related Credit Exposures,” August 1994.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 “Financial Instruments,” Exposure Draft E48, January 1994.

-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Framework for Supervisory Information about the Derivatives Activities of Banks and Securities Firms," Joint Paper with the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May 1995.
- Kolb, R., *Financial Derivatives*, New York Institute of Finance : New York, 1993.
- May, G., "Taxing Derivative Contracts : Questions and Answers," *Derivatives Quarterly*, Fall 1994, pp. 16~23.
- OECD, *New Financial Instruments-Disclosure and Accounting*, 1988.
- , *New Financial Instruments, Accounting Standards Harmonization*, No. 6, 1991.
- , *Taxa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1994.
- , DAFFE/CFA, *Draft Report on Special Sessions on Innovative Financial Transactions*, May 1996.
- 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 *Risk Management of Financial Derivatives*, Bank Circular 227, October 1994.
- Readhead, K., *Introduction to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New York : Woodhead-Faulkner, 1990.
- Sorensen, P., "From the Global Income Tax to the Dual Income Tax,"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1, 1994, pp. 57~79.
- Stoll, Hans R., "Lost Barings : A Tale in Three Parts Concluding with a Lesson," *The Journal of Derivatives*, Fall 1995.

附錄 I : 金融機關 派生金融商品 去來 會計處理基準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통일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이 행하는 모든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용어정의)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거래’라 함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격(환율, 이자율, 주가 등)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선도(forwards)거래’라 함은 약정가격으로 장래의 특정일에 대상상품을 인수도하기로 하는 장외거래를 말한다.
 - (3) ‘선물(futures)거래’라 함은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약정가격으로 장래의 특정일에 인수도하기로 하는 장내거래를 말한다.
 - (4) ‘스왑(swaps)거래’라 함은 당사자간에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 이자율, 주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5) ‘옵션(options) 거래’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또는 특정일에 특정한 행사가격으로 특정금융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 (6) ‘합성(synthetic) 거래’라 함은 상기 (2) 내지 (5) 항에서 정하는 거래가 결합되어 있는 거래를 말한다.
- (7) ‘헷지(hedge) 거래’라 함은 거래목적이 환율, 이자율, 주가 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기초거래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를 말한다.
- (8) ‘기초거래(underlying transaction)’라 함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가 확실시되는 자산 및 부채 또는 이로부터 발생할 이자 등 장래의 현금흐름(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제외함)으로서 헷지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말한다.
- (9) ‘트레이딩(trading) 거래’라 함은 거래목적이 헷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 (10) ‘장내(exchange) 거래’라 함은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
- (11) ‘장외(Over-The-Counter) 거래’라 함은 명칭, 방법 및 형태에 상관없이 장내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파생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

제 2 장 회계처리일반

제 1 절 일반적인 회계처리

4. (계약가액의 표시 및 원화환산)

- (1)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계약가액은 거래일에 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란 외의 각주사항으로 표시한다.

(2) 실행환율이 약정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계약가액 원화환산은 원화대 외화간 거래의 경우에는 약정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대 외화간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해당통화 매매기준율을 각각 적용한다.

(3) 실행환율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계약가액 원화환산은 환산시점의 해당통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5. (거래의 구분)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거래시점에서 헤지거래와 트레이딩거래로 구분하고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 등에 기초거래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6. (거래의 평가)

(1)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시가평가(Mark-To-Market)하여 그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2)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평가시기는 금융기관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별표3> 회계처리기준 IV-2. '외화표시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장내거래의 평가가격 결정) 장내거래의 평가가격은 평가일 현재 당해 거래소에서의 해당상품의 종가(settlement price)로 한다. 단, 평가일 현재 당일 종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종가를 평가가격으로 할 수 있다.

8. (장외거래의 평가가격 결정)

(1)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외거래에 대한 평가가격의 결정은 다음에 의한다. 단, 그 평가가격의 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① 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시장가격

② 평가시스템(pricing system)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일 오

- 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환율, 이자율, 주가 등 정보를 사용하여 적절히 산출한 가격
- ③ 상기 ① 또는 ②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우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획득한 거래별 예시가격(indication price)
- (2) 평가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때에는 상기 (1)항에 따라 산출된 직전 영업일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9. (손익의 회계처리)

- (1) 즉시 현금화될 수 없는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평가손익은 거래별로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된 현재가치로 표시한다.
- (2) 파생금융상품거래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상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익계정과 대차대조표상 파생금융상품 평가조정계정으로 처리한다. 단, 매일의 정산차액이 증거금에 반영되는 장내거래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상 파생금융상품거래손(익)계정과 대차대조표상 기타예치금(외화인 경우에는 외화에 치금 중 기타예치금)계정으로 처리한다.
- (3)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정산 또는 청산 등에 의해 실현된 손익은 파생금융상품거래손(익)계정으로 처리한다.

제 2절 헤지거래의 회계처리

10. (헤지거래의 조건)

- (1) 헤지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거래 중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기초거래는 그 발생시기와 금액이 계약서 등 구속력을 갖는 문서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 (2) 헤지거래시 이용할 파생금융상품은 기초거래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3) 헤지거래의 규모는 헤지목적에 위하여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대
상상품의 특성 또는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초과하는 규모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11. (헤지거래의 평가) 헤지거래의 기초거래가 시가평가(금융기관 경영
지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회계처리기준 IV-2.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평가 포함)되는 경우 당해 헤
지거래도 시가평가하고 동기초 거래가 시가평가되지 않는 경우 당해
헤지거래도 시가평가하지 않는다.

12. (헤지거래 손익의 인식)

(1) 헤지거래에 따른 손익은 기초거래의 손익발생시점에서 발생한
기초거래의 손익과 대응하여 인식한다.

(2) 기초거래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지거래가 중도해지되는
경우에 발생한 관련손익은 당초 헤지거래의 만기시까지 균등분
할하여 인식한다.

(3) 당초 헤지거래로 구분된 거래를 기초거래의 소멸로 인하여 트레
이딩거래로 전환하여야 할 경우 그 사실을 거래장표 등에 표시
하고 전환시점에서 당해 거래를 시가평가하여 그 손익을 손익계
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당초 트레이딩 거래로 구분된 거래를 헤지거래로 전환할 경우
기초거래의 내용 및 전환사유를 거래장표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전환시점에서 당해거래를 시가평가하여 그 손익을 손익계산서
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절 관련 예치금 및 수수료 등

13. (관련 예치금 및 증거금)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
이 예치하는 예치금·증거금 등은 기타예치금(외화의 경우에는 외
화예치금 중 기타예치금)계정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증거금 등은

수입보증금(기타)계정으로 처리한다.

14. (옵션프리미엄 및 스왑수수료 등)

- (1) 헤지거래로서 기초거래가 시가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프리미엄, 스왑수수료 등을 대차대조표상 선급비용(선수수익)으로 계상 후 이를 만기까지 기간에 균등 배분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손(익)계정으로 처리한다.
- (2) 트레이딩거래 및 기초거래가 시가평가의 대상이 되는 헤지거래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은 대차대조표상 옵션지급(수입)프리미엄계정으로 처리하고, 스왑수수료 등은 손익계산서상 파생금융상품거래손(익)계정으로 처리한다.
- (3) 중개수수료, 취급수수료 등 거래비용의 성격을 갖는 수수료는 그 발생시점에서 손익으로 처리한다.

제 3 장 선도거래

15. (선물환거래의 정의 등)

- (1) ‘선물환거래’라 함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를 매매계약일 이후 장래의 약정한 기일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인수도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원화대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선물환계정으로 각주표시하고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는 양 통화의 당해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 선물환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16. (원화대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의 평가가격 결정)

- (1) 원화대 미달러화간 선물환거래의 평가가격은 ‘8.(장외거래의 평가가격 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오후 3시경 주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선물환율을 참고로 하여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고시하는 선물환율로 한다.

- (2) 원화대 기타통화간 선물환거래의 평가가격은 상기 (1)항에 의한 원화대 미달러화간 선물환율과 미달러화대 기타통화간 선물환율을 재정한 환율로 한다.
- (3) 평가목적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단위를 설정하여 잔여만기가 동일한 단위기간 내에 속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평가시 적용할 선물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7. (현재가치할인)

- (1) 원화대 외화간 선물환거래의 평가손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될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각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로 한다.
- (2) 선물환거래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평가손익의 계상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헤지를 위한 선물환 거래의 회계처리)

- (1) 헤지를 위한 선물환거래의 경우 동 계약과 관련된 기초거래는 11. (헤지거래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정환율에 의해 평가한다. 단, 외화대 외화간 거래에 대하여는 동 약정환율에 계약일 현재 해당통화 매매기준율을 각각 적용하여 평가한다.
- (2) 상기 (1)항의 경우 선물환 거래시점의 현물환율(트레이딩거래가 헤지거래로 전환된 경우 전환시점의 현물환율)에 의한 가액과 약정환율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은 선물환거래차(대)로 계상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환입)하여야 하며, 선물환거래차(대)가 외화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해당 통화의 매매기준율로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환입)한다.

19. (이자율선도거래의 정의 등)

- (1) '이자율 선도거래'라 함은 장래 일정시점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결제일에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이자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도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 (3) 해지를 위한 이자율선도거래의 정산시점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은 당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기간배분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손(익)으로 처리한다.
20. (주식관련선도거래의 정의 등)
- (1) '주식관련선도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장래의 특정일에 계약당시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주식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주식관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선도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제 4 장 선물거래

21. (통화선물거래의 정의 등)
- (1) '통화선물거래'라 함은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 (2) 통화선물거래는 양 통화의 당해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통화선물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22. (이자율선물거래의 정의 등)
- (1) '이자율선물거래'라 함은 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 (2) 이자율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물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23.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정의 등)
- (1) '주가지수선물거래'라 함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종목 주식들의 가격수준을 대표하는 특정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 (2)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가지수선물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제 5 장 스왑거래

24. (스왑손익의 보정) 헤지를 위한 스왑거래로서 결산시 기초거래의 이자가 보정되는 경우에 스왑거래에 따른 손익도 보정하여야 한다.
25. (스왑거래에 따른 손익의 회계처리) 동일한 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수입 또는 지급액은 정산차액만을 파생금융상품거래손(익)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6. (통화스왑거래의 정의 등)
- (1) ‘통화스왑거래’라 함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통화스왑거래는 양 통화의 당해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통화스왑계정으로 각주 표시한다.
 - (3) 헤지를 위한 통화스왑의 경우 동 계약과 관련된 기초거래는 ‘18.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7. (이자율스왑거래의 정의 등)
- (1) ‘이자율스왑거래’라 함은 서로 다른 이자지급조건의 동일통화표시 채권·채무를 계약 당사자간에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이자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이자율스왑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28. (주식관련스왑거래의 정의 등)
- (1) ‘주식관련스왑거래’라 함은 당사자의 한편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해당통화의 이자율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주식관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스왑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제 6 장 옵션거래

29. (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의 정의 등)
- (1) '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라 함은 통화 또는 통화선물을 계약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 (2) 통화 및 통화선물옵션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통화옵션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 (3) 상기 (1)항의 계약금액은 미달러화대 기타통화간 거래에 있어서는 기타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통화간 거래에 있어서는 만기에 수취될 것으로 예정된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
30. (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의 정의 등)
- (1) '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라 함은 이자율 또는 이자율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 (2) 이자율 및 이자율선물옵션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31. (주식관련옵션거래의 정의 등)
- (1) '주식관련옵션거래'라 함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주가지수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 (2) 주식관련옵션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계정으로 각주표시한다.

제 7 장 기타거래

32. (합성거래의 회계처리)
- (1) 합성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본 회계기준에서 정한 파생금융상

품별로 분해가 가능한 경우 분해된 각 상품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비중이 가장 큰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른다.

附錄 II : 派生金融商品의 會計處理 例示*

1. 선도거래 (Forward Transaction)

1.1.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통화선도거래)

1.1.1. 원화대 외화거래

1.1.1.1. 트레이딩거래

A은행이 향후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상을 예상하고, 아래의 조건으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9월 30일

- 계약금액 : US \$ 1,000,000

- 만기 : 6개월 (1995. 9. 30 ~ 1996. 3. 31)

- 계약조건 : US \$ 1,000,000를 ₩800,000,000(약정환율: ₩800/US \$)에 매입

- 현재가치할인율 : 8%로 가정

	일자	현물환율	선물환율
계약일	1995. 9. 30	780	6개월만기 800
결산 및 평가일	1995. 12. 31	790	3개월만기 810
만기일	1996. 3. 31	805	

트레이딩거래의 평가는 매월 이루어져야 하나 예시편의상 연말에만 평가

■ 회계처리

1995년 9월 30일

<각추>

매입선물환 800,000,000

(US \$ 1,000,000 × 800)

* 본 부록은 「부록 I : 금융기관 파생금융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된 회계처리 예시임.

1995년 12월 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9,802,341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9,802,341*

$$* \frac{(US \$ 1,000,000 \times (810 - 800))}{(1 + 0.08 \times 92/365)} = 9,802,341$$

<각주>

상동

1996년 3월 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9,802,341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9,802,341

외국환(US \$) 805,000,000 현금 800,000,000

(US \$ 1,000,000 × 805) 파생금융상품거래익 5,000,000

<각주>

삭제

1.1.1.2 헤지거래

A은행이 US \$ 1,000,000를 6개월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달러화 차입금을 원화로 바꾸어 원화대출금으로 운용하였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회계처리하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계약일 : 1995년 9월 30일

-계약금액 : US \$ 1,000,000

-만기 : 6개월(1995년 9월 30일~1996년 3월 31일)

-계약조건 : US \$ 1,000,000를 ₩800,000,000(약정환율: ₩800/US \$)에 매입

	일자	현물환율	선물환율
계약일	1995. 9. 30	780	6개월만기 800
결산일	1995. 12. 31	790	3개월만기 810
만기일	1996. 3. 31	805	

1.1.2. 외화대 외화거래

1.1.2.1. 트레이딩거래

A은행이 장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계약일 : 1995년 9월 30일

-계약금액 : DM 1,400,000/US \$ 1,000,000

-만기 : 6개월 (1995년 9월 30일~1996년 3월 31일)

-계약조건 : DM 1,400,000을 지급하고, US \$ 1,000,000을 매입
(약정환율 : DM/US \$ 1,400)

	일 자	현물 환율				선물 환율		
		₩/US\$	₩/DM	DM/US\$		₩/US\$	₩/DM	DM/US\$
계약일	1995. 9.30	775	500	1.5500	6개월만기	770	550	1.4000
결산일	1995.12.31	780	520	1.5000	3개월만기	756	546	1.3846
만기일	1996. 3.31	783	540	1.4500				

트레이딩거래의 평가는 매월 이루어져야 하나 예시편의상 연말에만 평가

■ 회계처리

1995년 9월 30일

<각주>

매입선물환 775,000,000 매도선물환 700,000,000

(US \$ 1,000,000×775)

(DM 1,400,000×500)

1996년 12월 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14,000,000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14,000,000

(US \$ 1,000,000×(756-770))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5,600,000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5,600,000

(DM 1,400,000×(550-546))

<각주>

상동

1996년 3월 31일

과생금융상품평가조정	8,400,000	과생금융상품평가손익	8,400,000
		(14,000,000 - 5,600,000)	
외국환	783,000,000	외국환	756,000,000
(US \$ 1,000,000 × 783)		(DM 1,400,000 × 540)	
		과생금융상품거래익	27,000,000

<각주>

삭제

1.1.2.2 헤지거래

A은행은 1995년 9월 30일 US \$ 1,000,000를 6개월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이를 DM으로 교환(US \$ 1,000,000 × DM/US \$ 1.5500 = DM 1,550,000)하여 대출금으로 운용하였다. 은행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외화간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9월 30일

- 계약금액 : US \$ 1,107,142.86 / DM 1,550,000

- 만기 : 6개월 (1995년 9월 30일 ~ 1996년 3월 31일)

- 계약조건 : DM 1,550,000를 지급하고, US \$ 1,107,142.86를 수취함.

(약정환율 : DM/US \$ 1,400)

	일자	현물 환율				선물 환율		
		₩/US\$	₩/DM	DM/US\$		₩/US\$	₩/DM	DM/US\$
계약일	1995. 9.30	775	500	1.5500	6개월만기	770	550	1.4000
결산일	1995.12.31	780	520	1.5000	3개월만기	756	546	1.3846
만기일	1996. 3.31	783	540	1.4500				

■ 회계처리

1995년 9월30일	외국환(US \$) 775,000,000	외화차입금 775,000,000
	(US \$ 1,000,000×775)	
	외국환(DM) 775,000,000	외국환(US \$) 775,000,000
	(DM 1,550,000×500)	(US \$ 1,000,000×775)
	외화대출금 858,035,714	외국환(DM) 775,000,000
	(DM 1,500,000/1.4×775)	선물환거래대 83,035,714

<각주>

매입선물환	858,035,716	매도선물환 775,000,000
(US \$ 1,107,142.86×775)		(DM 1,550,000×500)

1995년12월31일	선물환거래대 41,744,734	선물환거래대환입 41,744,730
	(83,035,714.86×92/183)	

<각주>

상동

1996년 3월31일	선물환거래대 41,290,984	선물환거래대환입 41,290,984
	(83,035,714.86×91/183)	
	외국환(DM) 858,035,714	외화대출금 858,035,714
	외국환(US \$) 858,035,714	외국환(DM) 858,035,714
	외화차입금(US \$) 775,000,000	외국환(US \$) 775,000,000
		(US \$ 1,000,000×775)

<각주>

삭제

1.2. 이자율선도거래(Forward Rate Agreement : FRA)

1.2.1. 트레이딩거래

A은행이 아래의 조건으로 FRA를 매입하였을 경우 회계처리하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계약일 : 1995년 7월 31일

-계약금액 : US \$ 1,000,000

-계약조건 : 계약이자율이 5.74%이며, 3개월 후 장래의 3개월간 (3×6 FRA) 계약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차액을 정산함.

	일자	FRA = 가격	LIBOR	환율
계약일	1995. 7.31	3×6 FRA=5.74%	-	798
평가일	1995. 8.31	2×5 FRA=5.79%	2개월 5.875%	800
평가일	1995. 9.30	1×4 FRA=5.81%	1개월 5.875%	805
정산일	1995.10.31	-	3개월 5.875%	810

■ 회계처리

1995년 7월 31일

<각주>

매입이자율선도(US \$) 798,000,000

(US \$ 1,000,000×798)

1995년 8월 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99,736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99,736

(US \$ 124.67*×800)

$$* \frac{1}{1+5.875\% \times 61/360} \times \frac{\text{US } \$ 1,000,000 \times (5.79 - 5.74)\%}{(1+5.79\% \times 92/360)} = \text{US } \$ 124.67$$

<각주>

매입이자율선도(US \$) 800,000,000

(US \$ 1,000,000×800)

1995년 9월 30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40,338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40,338
 (US \$ 50.11*×805)

$$* \frac{1}{1 - 5.875\% \times 92/360} \times \frac{\text{US } \$ 1,000,000 \times (5.81 - 5.79)\% \times 92/360}{(1 + 5.81\% \times 92/360)} = \text{US } \$ 50.11$$

<각주>

매입이자율선도 805,000,000
 (US \$ 1,000,000×805)

1995년 10월 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140,074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140,074
 (99,736+40,338)
 외국환(US \$) 275,319 파생금융상품거래익 275,319
 (US \$ 339.90*×810)

$$* \frac{\text{US } \$ 1,000,000 \times (5.875 - 5.74)\% \times 92/360}{(1 + 5.875\% \times 92/360)} = \text{US } \$ 339.90$$

<각주>

삭제

1.2.2. 헤지거래

A은행은 1995년 11월 1일 3개월 후 외화 US \$ 1,000,000를 3개월간 변동이자부(3개월 LIBOR)로 차입하기로 약정하고 동 이자율 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FRA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11월 1일

- 계약금액 : US \$ 1,000,000

- 만기 : 3개월 (1995년 11월 1일 ~ 1996년 1월 31일)

- 계약조건 : 계약이자율이 5.7%인 이자율선도거래(3×6 FRA)를 매입

	일자	LIBOR	환율
계약일	1995.11. 1	5.5%	790
결산일	1995.12.31	6.0%	795
만기일(이자정산)	1996. 1.31	6.5%	800
기존거래만기일	1996. 4.30	6.7%	810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는 예시 편의상 생략함.

■ 회계처리

1995년 11월 1일

<각주>

매입이자율선도(US \$) 790,000,000

(US \$ 1,000,000×790)

1995년 12월 31일

매입이자율선도 795,000,000

(US \$ 1,000,000×795)

1996년 1월 31일 외국환(US \$) 800,000,000 외화차입금 800,000,000

(US \$ 1,000,000×800

=800,000,000)

외국환(US \$) 1,574,416 파생금융상품거래익

(US \$ 1,968.02*×800)

1,574,416

$$* \frac{\text{US \$ } 1,000,000 \times (6.5 - 5.7)\% \times 90/360}{1 + (6.5\% \times 90/360)} = \text{US \$ } 1,968.02$$

<각주>

삭제

1996년 4월 31일 외화차입금 810,000,000 외국환(US \$) 810,000,000
(US \$ 1,000,000 × 810)

지급이자 13,162,500 외국환(US \$) 13,162,500
(US \$ 16,250* × 810)

* US \$ 1,000,000 × 6.5% × 90/360 = US \$ 16,250

2. 선물거래(Future Transaction)

2.1. 이자율선물거래(Interest Rate Futures)

2.1.1. 트레이딩거래

A은행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하여 개설증거금으로 US \$ 1,000를 입금하고 아래의 조건으로 이자율선물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11월 1일

- 계약금액 : US \$ 1,000,000

- 계약조건 : 1995년 12월 만기 유로달러선물 1계약(US \$ 1,000,000)을 94.43에 매입

	일자	가격	환율
계 약 일	1995.11. 1	94.43(5.57%)	800
평 가 일	1995.11.30	94.51(5.49%)	810
청 산 일	1995.12. 8	94.46(5.60%)	805

(Euro Dollar 1 rick = 0.01 tick value = US \$ 25)

외화 기타 예치금의 평가는 예시 편의상 생략함.

■ 회계처리

1995년11월1일 외화기타예치금 800,000 외국환(US \$) 800,000
(US \$ 1,000×800)

지급수수료 12,000 외화기타예치금 12,000
(US \$ 15×800)

<각주>

매입이자율선물(US \$) 800,000,000
(US \$ 1,000,000×800)

1995년11월30일 외화기타예치금 162,000 파생금융상품거래익 162,000
(((94.51 - 94.43) × 100) tick × US \$ 25 × 810)

〈각주〉

매입이자율선물 810,000,000

(US \$ 1,000,000×810)

1995년 12월 8일

파생금융상품거래손 100,625 외화기타예치금 100,625

$((94.46 - 94.51) \times 100) \text{tick} \times \text{US } \$ 25 \times 805$

지급수수료 12,075 외화기타예치금 12,075

(US \$ 15×805)

〈각주〉

삭제

2.1.2. 헤지거래

A은행은 1995년 9월 15일 6개월간 US \$ 1,000,000을 매 3개월마다 Libor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유로달러이자율선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거래소에 계약을 개설한 후 개설증거금으로 US \$ 1,000를 입금하였다. 1995년 12월 11일 동 선물거래를 청산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9월 15일

- 계약금액 : US \$ 1,000,000

- 계약조건 : 1995년 12월 만기 유로달러선물 1계약 (=US \$ 1,000,000)을 94.43에 매도

	일자	가격	환율
계 약 일	1995. 9.15	94.43(5.57%)	800
평 가 일	1995. 9.30	94.51(5.49%)	810
평 가 일	1995.10.31	94.49(5.51%)	805
평 가 일	1995.11.30	94.50(5.50%)	795
청 산 일	1995.12.11	94.46(5.54%)	790

(Euro Dollar 1 rick = 0.01 tick value = US \$ 25)

□ 외화기타예치금의 평가는 예시 편의상 생략함.

■ 회계처리

1995년 9월 15일	외국환	800,000,000	외화차입금	800,000,000
				(US \$ 1,000,000×800)
	외화기타예치금	800,000	외국환(US \$)	800,000
		(US \$ 1,000,000×800)		
	지급수수료	12,000	외화기타예치금	12,000
				(US \$ 15×800)

<각주>

매도이자율선물 800,000,000

(US \$ 1,000,000×800)

1995년 9월 30일

<각주>

매도이자율선물 810,000,000
(US \$ 1,000,000×810)

1995년 10월 31일

<각주>

매도이자율선물 805,000,000
(US \$ 1,000,000×805)

1995년 11월 30일

<각주>

매도이자율선물 795,000,000
(US \$ 1,000,000×795)

1995년 12월 11일 파생금융상품거래손 59,250 기타외화예치금 59,250
(US \$ 75*×790)

* ((94.46-94.43)×100)tick×US \$ 25 = US \$ 75)

<각주>

삭제

<참고> : 결산시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손익보정

1995년 12월 31일 선급비용 48,832 파생금융상품거래손 48,832
(59,250×75/91=48,832)

총기간 = 91일(1995.12.15~1996.3.15) = 기초거래의
계약기간

선급기간 = 75일(1996.1.1~1996.3.15) = 잔여기간

2.2. 통화선물거래(Currency Futures)

A은행은 장래에 DM선물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개설증거금으로 US \$ 1,000를 입금하고 아래의 조건으로 통화선물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5월 1일

- 계약금액 : DM 125,000/US \$ 89,250

- 계약조건 : 1995년 12월 만기 DM 통화선물 1계약

(=DM 125,000)을 US \$ 89,250(Price=0.7140)에 매입

1995년 6월 7일 동 선물을 매각하고 중개수수료로 US \$ 15를 지급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일자	가격	현물	환율
			₩/US \$	₩/DM
계약일	1995. 5. 1	0.7140	800	530
평가일	1995. 5.31	0.7120	810	525
매도일	1995. 6. 7	0.7090	805	520

(tick size = 0.0001, tick value = US \$ 12.5)

외화기타예치금의 평가는 예시 편의상 생략함.

■ 회계처리

1995년 5월 1일 외화기타예치금 800,000 외국환(US \$) 800,000
(US \$ 1,000×800)

<각주>

매입통화선물 66,250,000 매도통화선물 71,400,000
(DM 125,000×530) (US \$ 89,250×800)

1995년 5월31일 파생금융상품거래손 202,500 외화기타예치금 202,500
(((.7120 - .7140) × 10,000) tick × US \$ 12.5 × 810)

<각주>

상동

1995년 6월 7일 파생금융상품거래손 301,875 외화기타예치금 301,875
 (((.7090-.7120)×10,000)tick×US \$12.5×805)
 지급수수료 12,075 외화기타예치금 12,075
 (US \$15×805)

<각주>

삭제

2.3. 주가지수선물거래(Stock Index Futures)

A은행은 주가지수선물의 가격변동을 예측한 뒤 US \$ 11,250를 증거금으로
 예치하고, 1995년 6월말기 S&P 500 주가지수선물을 아래의 조건으로 매입
 하였다. 동 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US \$ 20를 청산시점에 지급하였다고 할 경
 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계약일 : 1995년 3월 1일

-계약금액 : US \$ 240,000

-계약조건 : 1계약(US \$ 500×480=US \$ 240,000)을 6월에 매입

	일자	가격	환율
계약일	1995. 3. 1	480	760
평가일	1995. 3.31	481	761
평가일	1995. 4.30	478	763
청산일	1995. 5.15	482	762

외화기타예치금의 평가는 예시 편의상 생략함.

■ 회계처리

1995년 3월 1일 외화기타예치금 8,550,000 외국환(US \$) 8,550,000
 (US \$ 11,250×760)

<각주>

매입주식관련선물 182,400,000
 (US \$ 240,000×760)

1995년 3월31일 외화기타예치금 380,500 파생금융상품거래익 380,500
 (US \$ 500 × (481 - 480) × 761)

<각주>

매입주식관련선물 182,640,000

(US \$ 240,000 × 761)

1995년 4월30일 파생금융상품거래손 1,144,500 외화기타예치금 1,144,500
 (US \$ 500 × (478 - 481) × 763)

<각주>

매입주식관련선물 183,120,000

(US \$ 240,000 × 763)

1995년 5월15일 기타외화예치금 1,524,000 파생금융상품거래익 1,524,000
 (US \$ (482 - 487) × 500 × 762)

지급수수료 15,240 외화기타예치금 15,240

(US \$ 20 × 762)

<각주>

삭제

3. 스왑거래 (Swap Transaction)

3.1. 이자율스왑거래(Interest Rate Swaps)

3.1.1. 트레이딩거래

A은행은 장기적으로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1995년 7월 31일 2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회계처리하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7월 31일

- 계약금액 : US \$ 1,000,000

- 만기 : 2년(1995.7.31 ~ 1997.7.31)

- 계약조건 : 6개월마다 6.5%의 고정이자율 수취 및 LIBOR의 변동금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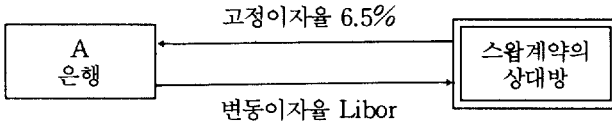
- 스왑수수료 : US \$ 5,000 지급

	일자	6개월 LIBOR*	스왑가치**	환율
계약일	1995. 7.31	6,000%	-	780
평가일	1995. 8.31	5,900%	US \$ 5,541	770
	-중략-			
정산일	1996. 1.31	5,800%	US \$ 7,360	760
	-중략-			
만기일	1997. 7.31	5,625%	0	762

* 1997년 1월 31일 시점에서의 6개월 LIBOR임.

** 스왑가치는 당초 약정한 스왑의 고정금리와 평가시점에서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스왑이자율간의 차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가격결정모델에 의하여 산출됨.

〈참고〉 이자율스왑거래의 자금흐름



■ 회계처리

1995년 7월31일 파생금융상품거래손 3,900,000 외국환(US \$) 3,900,000
(US \$ 5,000×780)

〈각주〉

매입이자율스왑	780,000,000	매도이자율스왑	780,000,000
(US \$ 1,000,000×780)		(US \$ 1,000,000×780)	

1995년 8월 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4,266,570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4,266,570
(US \$ 5,541×770)			

〈각주〉

매입이자율스왑	770,000,000	매도이자율스왑	770,000,000
(US \$ 1,000,000×770)		(US \$ 1,000,000×770)	

..... 중략

1996년 1월 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1,327,030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1,327,030
(US \$ 7,360×760 - 4,266,570)			

외국환(US \$)	1,942,222*	파생금융상품거래익	1,942,222
(25,248,888 - 23,306,666)			

* 스왑관련 수입이자 = (US \$ 1,000,000×6.5%×184/360)×760=25,248,888

스왑관련 지급이자 = (US \$ 1,000,000×6.0%×184/360)×760=23,306,666

1,942,222

<각주>

매입이자율스왑 760,000,000 매도이자율스왑 760,000,000
 (US \$ 1,000,000×760)

..... 중략

1997년 7월 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3,336,000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3,336,000*
 외국환(US \$) 3,352,271 파생금융상품거래익 3,352,271**
 (24,902,583-21,550,312)

* 1997년 6월 30일 현재 파생금융상품 평가조정누계 잔액이 차변 3,336,000으로 가정함.

* 스왑관련 수입이자=(US \$ 1,000,000×6.5%×181/360)×762=24,902,583

스왑관련 지급이자=(US \$ 1,000,000×5.625%×181/360)×762=21,550,312
 3,352,271

<각주>

삭제

3.1.2. 헤지거래

A은행은 1995년 7월 31일 2년을 만기로 US \$ 1,000,000를 이자율 6.5%로 차입하여 이를 6개월 Libor+1%의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이자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회계처리하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계약일 : 1995년 7월 31일

-계약금액 : US \$ 1,000,000

-만기 : 2년(1995년 7월 31일~1997년 7월 31일)

-계약조건 : 6개월마다 6.5%의 고정이자를 수취하고, 6개월 LIBOR의 변동이자를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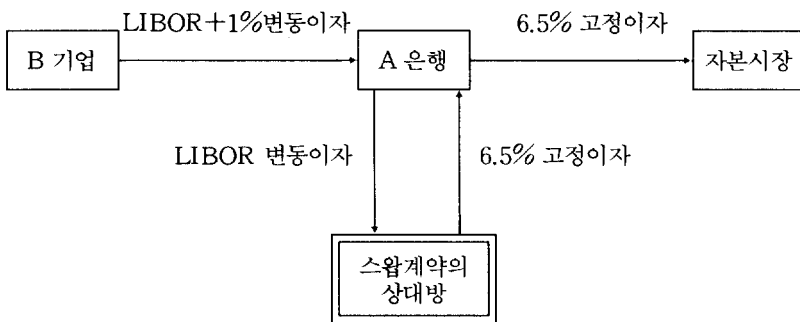
-스왑수수료 : US \$ 5,000 지급

	일자	6개월 LIBOR	환율
계약일	1995. 7.31	6,000%	780
결산일	1995.12.31	6,000%	770
	- 중략 -	- 중략 -	- 중략 -
정산일	1996. 1.31	6,000%	760
	- 중략 -	- 중략 -	- 중략 -
만기일	1997. 7.31	5,600%	762

* 1997년 1월 31일 시점에서의 6개월 LIBOR임.

□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는 예시 편의상 생략함.

〈참고〉 이자율스왑거래의 이자흐름



■ 회계처리

1995년 7월31일	외국환(US \$)	780,000,000	외화차입금	780,000,000
	외화대출금	780,000,000	외국환(US \$)	780,000,000
	선급비용	3,900,000	외국환(US \$)	3,900,000
			(US \$ 5,000×780)	

<각주>

매입이자율스왑	780,000,000	매도이자율스왑	780,000,000
(US \$ 1,000,000×780)		(US \$ 1,000,000×780)	

1995년12월31일	파생금융상품거래손	821,614	선급비용	821,614
		(3,900,000×154/731)		
	외화차입금이자	21,410,277*	미지급비용	21,410,277
		(US \$ 1,000,000×0.065×154/360×770)		
	미수수익	23,057,222	외화대출금이자	23,057,222
		(US \$ 1,000,000×0.070×154/360×770)		
	미수수익	1,646,944*	파생금융상품거래익	1,646,944
		(21,410,277-19,763,333)		

* 스왑관련 수입이자=(US \$ 1,000,000×0.065%×154/360)×770=21,410,277
 스왑관련 지급이자=(US \$ 1,000,000×0.060%×154/360)×770=19,763,333
 1,646,944

<각주>

매입이자율스왑	770,000,000	매도이자율스왑	770,000,000
(US \$ 1,000,000×770)		(US \$ 1,000,000×770)	

..... 중략

1996년 1월31일	외화차입금이자	25,248,888	외국환(US \$)	25,248,888
		(US \$ 1,000,000×0.065×184/360×760)		
	외국환(US \$)	27,191,111	외화대출금이자	27,191,111
		(US \$ 1,000,000×0.070×184/360×760)		
	외국환(US \$)	1,942,222*	파생금융상품거래익	1,942,222
		(25,248,888-23,306,666)		

* 스왑관련 수입이자=(US \$ 1,000,000×0.065%×184/360)×760=25,248,888

스왑관련 지급이자=(US \$ 1,000,000×0.060%×184/360)×760=23,306,666

1,942,222

<각주>

매입이자율스왑 760,000,000 매도이자율스왑 760,000,000

(US \$ 1,000,000×760)

중략

1997년 7월31일 파생금융상품거래손* 1,125,718 선급비용 1,125,718

(3,900,000×211/731)

외화차입금 762,000,000 외국환(US \$) 762,000,000

외국환(US \$) 762,000,000 외화대출금 762,000,000

외화차입금이자 24,902,583 외국환(US \$) 24,902,583

(US \$ 1,000,000×0.065×181/360×762)

외국환(US \$) 25,285,699 외화대출금이자 25,285,699

(US \$ 1,000,000×0.066×181/360×762)

외국환(US \$) 3,448,050 파생금융상품거래익 3,448,050**

(24,902,583-21,454,533)

* 1996년 12월 31일 결산 후 잔여 7개월분 비용인식

** 1997년 1월 31일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아래에서와 같이 6개월분에 대

하여 이자인식

스왑관련 수입이자=(US \$ 1,000,000×0.065×181/360)×762=24,902,583

스왑관련 지급이자=(US \$ 1,000,000×0.056×181/360)×762=21,454,533

3,448,050

<각주>

삭제

3.3.2. 통화스왑거래(Currency Swaps)

3.3.2.1. 트레이딩거래

A은행은 미달러화와 엔화의 환율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1995년 8월 31일 US \$/₩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8월 31일

- 계약금액 : ₩ 98,000,000/US \$ 1,000,000

- 만기 : 2년(1995.8.31~1997.8.31)

- 계약조건 : 만기일에 ₩ 98,000,000 수취 및 US \$ 1,000,000 지급(각각의 계약금액에 대해 6개월마다 엔이자 1.5% 수취 및 달러이자 6.4% 지급)

- 스왑수수료 : US \$ 5,000

	일자	스왑가치 (Swap Value)	환 율		
			₩/US \$	₩/¥	¥/US \$
계약일	1995. 8.31	-	780	7.9592	98
평가일	1995. 9.30	US \$ 5,541	778	8.1895	95
	-중략-	-중략-		-중략-	
정산일	1996. 2.29	US \$ 7,360	780	8.1250	96
	-중략-	-중략-		-중략-	
만기일	1997. 8.31	0	770	7.7778	99

□ 스왑가치는 당초 약정한 스왑의 고정금리와 평가시점에서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스왑금리간의 차이 및 환율차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구체적으 로는 가격 결정모델에 의하여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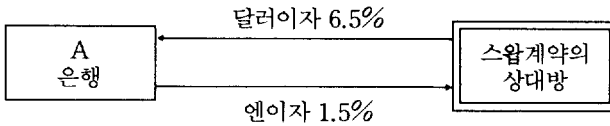
□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는 예시 편의상 생략함.

〈참고〉 통화스왑거래의 자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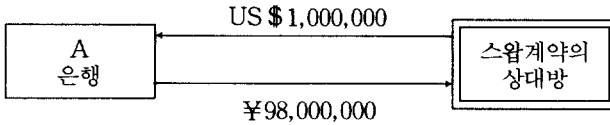
① 계약시 원금 수수관계

없음

② 매기간별 이자수수관계



③ 만기시 원금수수관계



■ 회계처리

1995년 8월31일 파생금융상품거래손 3,900,000 외국환(US \$) 3,900,000
 (US \$ 5,000 × 780)

<각주>

매입통화스왑(₩) 2780,001,600 매도통화스왑(US \$) 780,000,000
 (₩98,000,000 × 7.9592) (US \$ 1,000,000 × 780)

1995년 9월30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4,310,898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4,310,898
 (US \$ 5,541 × 778)

<각주>

상동

..... 중략

1996년 2월29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1,429,902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1,429,902
 (US \$ 7,360 × 780 - 4,310,898 = 1,429,902)

파생금융상품거래손 25,237,333 외국환(US \$)* 25,237,333
 (US \$ 1,000,000 × 0.064 × 182/360 × 780)

3.3.2. 헤지거래

A은행은 1995년 8월 31일 2년간 ₩ 98,000,000을 차입(이자율 1.5%)하고 2년간 US \$ 1,000,000의 외화대출금(이자율 7%)을 운용하기로 하였는데, 엔화 및 달러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US \$/₩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8월 31일

- 계약금액 : ₩ 98,000,000/US \$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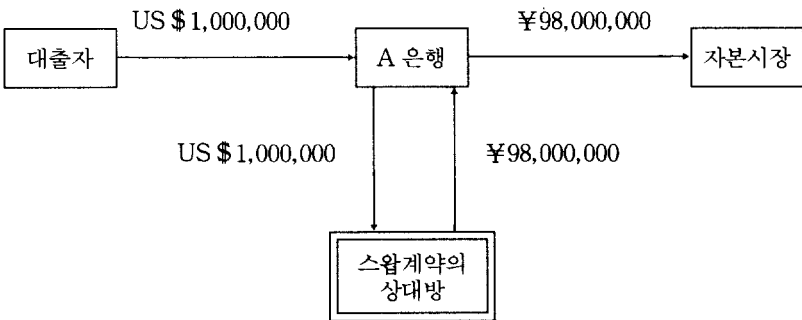
- 만기 : 2년(1995.8.31~1997.8.31)

- 계약조건 : 계약당일자로 ₩ 98,000,000을 지급하고 및 US \$ 1,000,000 수취(원금에 대해 6개월마다 엔이자 1.5% 수취 및 달러이자 6.4% 지급) 만기시점에서 동 금액들의 수수가 역으로 이루어짐.

	일자	6개월 LIBOR	환율		
			₩/US\$	₩/₩	₩/US\$
계약일	1995. 8.31	6,000%	780	7.9592	98
결산일	1995.12.31	6,000%	778	8.1895	95
	- 중략 -	- 중략 -	-	- 중략 -	-
정산일	1996. 2.29	6,000%	780	8.1250	96
	- 중략 -	- 중략 -	-	- 중략 -	-
만기일	1997. 8.31	5,625%	770	7.7778	99

<참고> 통화스왑거래의 자금흐름

① 최초 원금 수수관계



1995년12월31일 외화차입금이자	4,079,735	미지급비용	4,079,735
	(₩98,000,000×0.015×122/360×₩/¥8.1895)		
미수수익	18,455,884	외화대출금이자	18,455,884
	(US \$ 1,000,000×0.07×122/360×778)		
파생금융상품거래손	16,837,955	미지급비용	16,837,955
	(US \$ 1,000,000×0.64×122/360×778)		
미수수익	4,079,735	파생금융상품거래익	4,079,735
	(₩98,000,000×0.015×122/360×₩/¥8.1895)		

<각주>

상동

1996년 2월29일 외화차입금이자	6,038,229	외국환(¥)	6,038,229
	(₩98,000,000×0.015×182/360×₩/¥8.1250)		
외국환(US \$)	27,603,334	외화대출금이자	27,603,334
	(US \$ 1,000,000×0.07×182/360×780)		
파생금융상품거래손	25,237,333	외국환(US \$)	25,237,333
	(US \$ 1,000,000×0.064×182/360×780)		
외국환(¥)*	6,038,229	파생금융상품거래익	6,038,229
	(₩98,000,000×0.015×182/360×₩/¥8.1250)		

* 정산일에는 통화스왑거래에 대한 이자가 수수되며, 정산차액만을 순액으로 하여 한쪽으로 표시할 수 있음.

예) 파생금융상품거래손	19,119,107	외국환(US \$)	25,237,336
외국환(¥)	6,038,229		

<각주>

상동

1997년 8월31일 외화차입금이자	5,843,720	외국환(₩)	5,843,720
	(₩98,000,000×0.015×184/360×₩/₩7.7778)		
외국환(US \$)	27,548,889	외화대출금이자	27,548,889
	(US \$ 1,000,000×0.07×184/360×770)		
파생금융상품거래손	25,187,556	외국환(US \$)	25,187,556
	(US \$ 1,000,000×0.064×184/360×770)		
외국환(₩)	5,843,720	파생금융상품거래익	5,843,720
	(₩98,000,000×0.015×184/360×₩/₩7.7778)		
외국환(US \$)	780,000,000	외화대출금(US \$)	780,000,000
외국환(₩)	780,000,000	외국환(US \$)	780,000,000
외화차입금(₩)	780,001,600	외국환(₩)	780,001,600

<각주>

삭제

4. 옵션거래 (Option Transaction)

4.1. 이자율옵션거래 (Interest Rate Options)

A은행은 1995년 7월 31일 미달러화 3개월 LIBOR에 대한 이자율상한계약 (CAP)을 체결하였다. 동 옵션계약이 (1) 1995년 11월 15일 중도에 청산되는 경우와 (2) 만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7월 31일

- 계약금액 : US \$ 1,000,000

- 만기 : 3년간 (1995.7.31~1998.7.31)

- 계약조건 : 계약이자율(상한이자율) 7%로 3개월 LIBOR와 비교
해 3개월마다 이자정산

- 옵션프리미엄 : US \$ 20,000 지급

	일자	CAP가격	현행환율
계약일	1995. 7.31	20,000	800
평가일	1995. 8.31	19,000	810
평가일	1995. 9.30	21,000	820
중간정산일	1995.10.31	18,000	825*
(중도청산일)	1995.11.15	19,000	830
	- 중략 -	- 중략 -	- 중략 -
만기일	1998. 7.31	0	830**

* 1995. 7. 31 3개월 LIBOR 8%

** 1998. 4. 30 3개월 LIBOR 8.5%

□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는 예시 편의상 생략함.

■ 회계처리

1995년 7월31일 옵션지급프리미엄 16,000,000 외국환(US \$) 16,000,000
(US \$ 20,000 × 800)

<각주>

매입이자율옵션(US \$) 800,000,000

(US \$ 1,000,000 × 800)

1995년 8월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810,000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810,000
 (US \$ (19,000 - 20,000) × 810)

<각주>

매입이자율옵션(US \$) 810,000,000
 (US \$ 1,000,000 × 810)

1995년 9월30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1,640,000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1,640,000
 (US \$ (21,000 - 19,000) × 820)

<각주>

매입이자율옵션(US \$) 820,000,000
 (US \$ 1,000,000 × 820)

1995년10월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2,475,000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2,475,000
 (US \$ (18,000 - 21,000) × 825)

외국환(US \$) 2,108,333 파생금융상품거래익* 2,108,333
 (US \$ 1,000,000 × (8 - 7)% × 92/360) × 825

*1995년 7월 31일 현재 3개월 LIBOR 8%가 상한이자율인 7% 초과분(정산수입금액)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함.

<각주>

매입이자율옵션 825,000,000
 (US \$ 1,000,000 × 825)

(1) 중간(1995년 11월 15일)에 청산할 경우

1995년 11월 15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1,645,000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1,645,000
외국환(US \$)	15,770,000	옵션지급프리미엄	16,600,000
(US \$ 19,000 × 830)		(US \$ 20,000 × 830)	
파생금융상품거래손	830,000		

〈각주〉

삭제

(2) 동 거래가 만기까지 지속하는 경우

1998년 7월 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13,000,000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13,000,000*
파생금융상품거래손	16,600,000	옵션지급프리미엄	16,600,000
현금	3,181,667	파생금융상품거래익**	3,181,667
(US \$ 1,000,000 × (8.5 - 7) % × 92 / 360) × 830)			

* 시장이자율 8.5% 및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대변잔액 13,000,000으로 가정.

** 1998년 4월 30일 현재 3개월 LIBOR 8.5%가 상한이자율인 7% 초과분(정산수입금액)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함.

〈각주〉

삭제

4.2. 통화옵션거래(Currency Options)

A은행은 1995년 7월 31일 앞으로 미달러화가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아래의 조건으로 통화옵션계약을 매입하였다.

- 계약내용 - 계약일 : 1995년 7월 31일
- 계약금액 : ₩92,000,000/US \$ 1,000,000
- 만기 : 3개월 (1995.7.31 ~ 1998.10.31)
- 계약조건 : 3개월 후 ₩92,000,000을 지급하고 US \$ 1,000,000를 수취(call)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옵션프리미엄 : US \$ 20,000 지급

동 옵션계약을 (1) 1995년 9월 15일 중도에 청산한 경우와 (2) 만기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	옵션가격	현행환율		
			₩/US \$	₩/¥	¥/US \$
계약일	1995. 7.31	20,000	800	8.6957	92.0
평가일	1995. 8.31	19,000	810	8.8235	91.8
중도청산일	1995. 9.15	21,000	820	8.8172	93.0
평가일	1995. 9.30	19,000	820	8.8172	93.0
만기일	1995.10.31	-	825	8.8710	93.0

□ 옵션프리미엄의 평가는 예시 편의상 생략함.

■ 회계처리

1995년 7월31일 옵션지급프리미엄 16,000,000 외국환(US \$) 16,000,000
 (US \$ 20,000 × 800)

<각주>

매입통화옵션 800,044,000

(₩92,000,000 × 8.6957)

1995년 8월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810,000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810,000

(US \$ 19,000 - 20,000) × 810)

<각주>

매입통화옵션 811,762,000

($\text{₩}92,000,000 \times 8.8235$)

(1) 증도(1995년 9월 15일)에 청산할 경우

1995년 9월15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810,000

외국환(US \$) 17,220,000

(US \$ 21,000 × 820)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810,000

옵션지급프리미엄 16,400,000

(US \$ 20,000 × 820)

파생금융상품거래익 820,000

<각주>

삭제

(2) 만기(1995년 10월 31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1995년 9월 30일

<각주>

매입통화옵션 811,182,400

($\text{₩}92,000,000 \times 8.8172$)

1995년10월31일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810,000

파생금융상품거래손 16,500,000

외국환(US \$) 825,000,000

(US \$ 1,000,000 × 825)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810,000

옵션지급프리미엄 16,500,000

외국환(₩) 816,132,000

($\text{₩}92,000,000 \times 8.8710$)

파생금융상품거래익 8,868,000

<각주>

삭제

附錄 III : 證券會社 會計處理 規程

〈改正 內容 (1996년 3월 18일)〉

증권회사 회계처리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증권회사의 주가지수선물거래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에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서 인식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중 ‘나. 고객계좌원장’을 ‘나. 유가증권고객계좌원장 및 선물거래 고객계좌원장’으로, ‘라. 종목별 상품유가증권원장’을 ‘라. 종목별 상품유가증권원장 및 종목별 선물자기계약원장’으로 하고,

‘자. 위탁자 선물계약대장’, ‘차. 선물거래 일일정산대장’ 및 ‘카. 선물 매매증거금대장’을 신설하고 종전의 ‘자’ 내지 ‘타’ 내지 ‘머’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자’ 내지 ‘너’는 ‘타’ 내지 ‘머’로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영업기간중 거래한 다음 각호의 거래대금 합계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을 ‘당해 영업기간중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이상을’로 하고,

제1호 중 ‘유가증권 위탁매매 거래대금’을 ‘유가증권 위탁매매 거래대금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호 중 ‘매매거래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매매거래대금을 차감한 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가지수 선물 위탁거래금액의 10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중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유가증권 평가익’을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유가증권 평가익 및 주가지수 선물거래이익 중 정산차금 해당액’으로 하고,

제2호 중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유가증권 평가손’을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유가증권 평가손 및 주가지수 선물거래손실 중 정산차금 해당액’으로 한다.

株價指數先物 會計處理 例示(會員社用)

<위탁거래>

회계사건	회 계 처 리	비 고
1. 계좌개설	1) 예수금 ① 선물거래예수금으로 계상하고 고객자금의 분리보관방법에 따라 보관 현금 500 선물거래예수금 500 선물거래 500 현금 500 특별예치금 2) 예수대용유가증권 ① 고객계정에 기록만 하고 회계처리는 없음.	위탁자 A가 500원의 현금을 예약했다고 가정 A가 1,000원 상당의 대용유가증권을 예약했다고 가정
2. 신규매매 거래체결 당일	1) 매매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없음 2) 고객계좌 기록사항 ① 매매거래 내역 ◦종목, 매매구분, 수량 약정가격 ② 위탁증거금 표시 ◦예수금과 예수대용유가증권 중 위탁증거금 해당분을 지정·구분표시 •인출가능 현금 및 대용유가증권을 구분 표시	
3. 일일정산 당일	1) 일일정산에 관한 회계처리 없음 2) 일출가능 현금 및 대용유가증권을 수정	
4. 신규매매 거래분 결제일	1) 거래소에 매매증거금 납부 ① 고객예탁 대용유가증권 납부분 ◦회계처리 없이 고객계좌에 소재만 표시(전질 등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표시) ② 증권회사상품유가증권 대납분 ◦회계처리 없이 관련 장부에 위탁자를 위한 매매증거금으로 납부되었음을 표시 ③ 선물거래특별예치금 중 납부분 선물위탁 500 선물거래 500 매매증거금 특별예치금 2) 위탁수수료 징수 현금 10 선물거래 10 수탁수수료 선물거래 10 선물거래 10 예수금 특별예치금 또는 미수수료 10 선물거래 10 수탁수수료	

A의 신규매매분에 대한 매매증거금 500원을 A가 예약한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가정
 A의 위탁수수료 10원 가정

회계사건	회 계 처 리	비 고
5. 일일정산분 결제일	1) 위탁자 일일정산의 손실 발생 경우 선물위탁거래 100 선물거래특별 정산차금 예치금 100 2) 일일정산 손실분 중 미수금 처리 ◦ 당해 위탁자분 일일정산차손이 당해 위탁자 분 선물거래특별예치금을 초과하여 증권회 사가 대납한 금액을 처리 선물위탁거래 550 [현금 50 정산차금 선물거래 500 특별예치금 선물거래 50 선물거래 50 미수금 예수금 3) 위탁자 일반정산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선물거래특별 100 선물위탁거래 100 예치금 정산차금	A의 일일정산차손이 100원인 경우 가정 A의 일일정산차손이 550원에 달해 A의 선 물 거래 특별예치금 500원 외에 증권회사 자기자금을 50원 대 납했다고 가정 A의 일일정산차익 100원 가정
6. 반대매매 당일	1) 반대매매에 관한 회계처리 없음 2) 고객계좌에 종목, 전·환매 구분, 수량, 결 제가격 등을 표시 3) 인출가능현금, 인출가능 대용유가증권을 수정 * 어느 특정선물종목에 대한 반대매매 당일의 일일정산차손이 100원(선물거래특별예치금 부족으로 50원을 증권회사가 대납) 발생하고 그 결과 당해 선물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소 '선물거래손실'은 200원에 달한 경우를 가정 (거래소 납부 매매증거금 현금 100원) 1) 반대매매 당일분의 일일정산차손액 발생 (100원 중 50원 대납) 선물위탁거래 100 [현금 50 정산차금 선물거래특별 50 예치금 선물거래미수금 50 선물거래 50 예수금 2) 증권거래소에 납부한 선물위탁매매증거금 환수 [현금 50 선물위탁매매 100 증거금 선물거래 50 특별예치금 선물거래 50 선물거래 50 예수금 미수금	

회계사건	회 계 처 리	비 고												
	<p>① 결산시 선물거래(조정)이익인 경우 B/S</p> <h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80%;">선물거래예수금</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td> </tr> <tr> <td>선물위탁거래</td> <td style="text-align: right;">××× ×××</td> </tr> <tr> <td>정산차금</td> <td></td> </tr> </table> <p>① 결산시 선물거래(조정)손실인 경우 B/S</p> <h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80%;">선물거래예수금</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td> </tr> <tr> <td>(선물위탁거래</td> <td style="text-align: right;">(×××) ×××</td> </tr> <tr> <td>정산차금)</td> <td></td> </tr> </table>	선물거래예수금	×××	선물위탁거래	××× ×××	정산차금		선물거래예수금	×××	(선물위탁거래	(×××) ×××	정산차금)		
선물거래예수금	×××													
선물위탁거래	××× ×××													
정산차금														
선물거래예수금	×××													
(선물위탁거래	(×××) ×××													
정산차금)														

<자기거래>

회계사건	회 계 처 리	비 고
1. 신규매매 거래체결 당일	1) 신규매매거래에 관한 분개 없음 2) 종목, 매수·도 구분, 수량, 약정가격 등을 관련장부에 비망처리	
2. 일일정산 당일	1) 일일정산에 관한 분개 없음 2) 일일정산손익을 비망처리	
3. 신규매매 거래분 결제일	1) 매매증거금 납입 ① 현금 선물자기매매 100 현금 100 증거금 ② 대용유가증권 ◦분개처리 없이 관련 장부에 비망처리	거래소에 납부 증거금 100원 가정
4. 일일정산분 결제일	1) 일일정산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금 500 선물자기거래 500 정산차금 2) 일일정산차손이 발생한 경우 선물자기거래 500 현금 500 정산차금	일일정산차익 500원 가정 일일정산차손 500원 가정
5. 반대매매 당일	1) 반대매매에 관한 분개 없음 2) 반대매매 내용, 손익 등을 비망처리	
6. 반대매매 결제일	1) 반대매매 당일분의 일일정산 손익처리 ① 일일정산차익의 경우 현금 100 선물자기거래 100 정산차금 ② 일일정산 차손의 경우 선물자기거래 100 현금 100 정산차금 2) 매매증거금 환수 ① 현금 현금 100 선물자기매매 100 증거금 ② 대용유가증권의 경우 ◦분개없이 관련 장부의 비망기록을 정리 3) 신규취득에서 반대매매까지 일련의 거래가 종결되었으므로 선물자기거래정산차금계정을 마감하면서 선물거래손익으로 계상 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선물자기거래 500 선물거래이익 500 정산차금 ②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선물거래손실 500 선물자기거래 500 정산차금	일일정산차익 100원 가정 일일정산차익 100원 가정 거래소에 납부 증거 금 100원 가정 선물거래이익 500원 가정 선물거래 손실 500원 가정

株價指數先物 會計處理 例示(非會員社用)

<위탁거래>

회계사건	회 계 처 리	비 고
1. 계좌개설	1) 예수금 ① 선물거래예수금으로 계상하고 고객자금의 분리보관방법에 따라 보관 현금 500 선물거래예수금 500 선물거래 500 현금 500 특별예치금 2) 예수대용유가증권 ① 고객계정에 기록만 하고 회계처리는 없음.	위탁자 A가 500원의 현금을 예탁했다고 가정 A가 1,000원 상당의 대용 유가증권을 예탁했다고 가정
2. 신규매매 거래체결 당일	1) 위탁증거금을 회원사에 예치 ① 당해 위탁증거금의 예치에 관한 회계처리 선물위탁거래 100 선물거래 100 예치금 특별예치금 ② 회원사에 예수대용유가증권을 위탁증거금용으로 예치 ◦ 고객계정에 기록만 하고 회계처리는 없음 2) 체결된 매매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는 없으며 고객계좌에 필요사항을 기록 [고객계좌 기록사항] ① 매매거래 내역 ◦ 종목, 매매구분, 수량, 약정가격 ② 위탁증거금 표시 ◦ 예수금과 예수대용유가증권 중 위탁증거금으로 회원사 예치분을 지정·구분 표시 • 인출가능현금 및 대용유가증권을 구분 표시	비회원사의 고객 A의 위탁증거금 100원을 회원사에 예치했다고 가정
3. 일일정산 당일	1) 일일정산에 관한 회계처리 없음 2) 인출가능 현금 및 대용유가증권을 수정	
4. 신규매매 거래분 결제일	1) 위탁수수료 징수 현금 10 선물거래수탁 10 선물거래 10 선물거래특별 10 예수금 예치금 선물거래 5 현금 5 지급수수료	A의 위탁수수료 10원을 징수하고 그 중 5원은 회원사에 지급수수료로 납부 가정
5. 일일정산분 결제일	1) 위탁자 일일정산 차손이 발생한 경우 선물위탁거래 100 선물위탁거래 100 정산차금 예치금	A의 일일정산차손이 100원 발생하여 동 금액을 회원사 예치금에서 차감했다고 가정

회계사건	회 계 처 리	비 고
	3) 선물거래 위탁수수료 징수 현금 10 선물거래수탁 수수료 10 선물거래예수금 10 선물거래특별 예치금 10 선물거래지급 5 현금 5 수수료	A의 위탁수수료 10 원 징수하고 이 중 5 원은 회원사에 지급 수수료로 납부 가정
8. 예수금 인출당일	4) 선물위탁증거금 대용유가증권 등에 대한 구분 표시 해제 ① 회원사 예치 선물거래 위탁증거금 대용 유가증권의 구분표시 해제 ② 인출가능 현금 및 대용유가증권을 수정 선물거래 100 선물거래특별 예치금 100	A가 예수금 100원을 인출했다고 가정
9. 대용유가 증권교체	1) 회원사에 예치하는 선물거래위탁증거금 대용 유가증권을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체하는 경우 ① 분개처리 없음. 단, 고객계좌상 대용유 가증권에 관한 구분표시 등을 수정	
	2) 회원사에 예치하는 선물거래위탁증거금 중 일부를 대용유가증권으로 교체하고 초과분 100원을 인출하는 경우 ① 대용유가증권 추가 예탁분은 분개처리 없음. 단, 고객계좌상 선물거래위탁증 거금 대용 유가증권의 증가에 대한 기록을 구분 표시 ② 현금 인출분 선물거래 100 선물위탁거래 예수금 예치금 100	
10. 결산	1) 따로 결산과 관련한 분개처리 없음 ○ 단, 재무제표 공시시 선물위탁거래정산차금 계정을 선물거래예수금의 조정계정으로 사용하여 표시 ① 결산시 선물거래(조정)이익인 경우 B/S <hr/> 선물거래예수금 ××× 선물위탁거래 ××× ××× 정산차금	

회계사건	회 계 처 리	비 고
	② 결산시 선물거래(조정)손실인 경우 B/S <hr/> 선물거래예수금 ××× (선물위탁거래 (×××) ××× 정산차금)	

<자기거래>

회계사건	회 계 처 리	비 고
1. 계좌개설	1) 위탁증거금을 회원사에 예치 ① 위탁증거금의 회원사 예치 선물자기거래 100 현금 100 예치금 ② 대용유가증권의 회원사 예치 • 상품유가증권대장에 비망처리하고 분개는 하지 아니함	위탁증거금용으로 100원을 회원사에 예치했다고 가정
2. 신규매매 거래체결 당일	1) 신규매매거래에 관한 분개는 하지 아니함 2) 종목, 매수·도 구분, 수량, 약정가격 등을 관련장부에 비망처리	
3. 일일정산 당일	1) 일일정산에 관한 분개는 하지 아니함 2) 일일정산손익을 비망처리	
4. 신규매매 거래분 결제일	1) 회원사에 선물거래위탁수수료 지급 선물거래 10 선물자기거래 10 지급수수료 예치금	회원사에 위탁수수료 10원을 예치금에서 차감지급했다고 가정
5. 일일정산분 결제일	1) 일일정산차익이 발생한 경우 선물자기거래 500 선물자기거래 500 예치금 정산차금 2) 일일정산차손이 발생한 경우 선물자기거래 500 선물자기거래 500 정산차금 예치금 3) 일일정산차손 1,000원 발생으로 선물자기거래 예치금(500원)을 초과함에 따라 회원사에 600원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선물자기거래 1,000 [현금 600 정산차금 선물자기거래 400 예치금	
6. 반대매매 당일	1) 반대매매에 관한 분개는 하지 아니함 2) 반대매매 내용, 손익 등을 비망처리	
7. 반대매매 결제일	1) 반대매매당일분의 일일정산 손익처리 ① 일일정산차익의 경우 선물자기거래 100 선물자기거래 100 예치금 정산차금 ② 일일정산차손의 경우 선물자기거래 100 선물자기거래 100 정산차금 예치금 2) 신규취득에서 반대매매까지 일련의 거래가 종결되었으므로 선물자기거래정산차금계정을 마감하면서 선물거래손익으로 계상	일일정산차익 100원 가정 일일정산차손 100원 가정

